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5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거나 만기 출소한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관이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도록 되어있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적인 사후지도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소년원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소년원의 사후관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원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숙식제공, 여비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어 일부 퇴원생에 국한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에 의한 사후관리는 퇴원생 스스로가 보호관찰원의 지나친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히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명예나 기타 허울쫄은 감독으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고, 실제 보호학생을 위한 선도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퇴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및 관리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원생을 전담하여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점차 다양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행 전력이 있는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여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다 향상되고 다원화된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간의 소년원 수용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이 불가피했고, 생활방식에 있어서도 강제적으로

따라가던 형태였던 것에서 곧바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본인의 자립의지와 능력 혹은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력 없을 경우, 또다시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결국 기존의 소속 또래집단에 연루되어 재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이미 취업에 성공하였거나 혹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력취득에 대한 열의가 높아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으나, 가정의 불화로 인해 혹은 마땅히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사회복귀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차원의 시설인 “중간보호시설” 혹은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퇴원에 임박한 청소년 혹은 퇴원 후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는 청소년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중간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사로부터 개별적 차원의 감독, 지도를 받으며 사회적응력 혹은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운 다음 사회로 복귀된다면, 원생들의 사회복귀는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재비행의 위험이 한층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법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시설 수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한 비행 및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출소시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하고 재적응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재활시설에서의 재적응 훈련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사후 정착을 위한 자립·자활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비행청소년의 안정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향후 도입될 중간처우시설 시범사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교정복지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원생들이 퇴원한 후,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 원만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시설 및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상태에서 사회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중간처우의 개념은 무엇이며, 소년범죄자를 위한 중간처우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둘째, 현행 비행 및 범죄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 시설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주요 외국의 대표적 중간처우 시설 유형과 운영 사례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도입 가능성은 어떠한가?

넷째, 비행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의 개념 및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상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중간처우의 개념을 규정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중간처우의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중간처우제도의 형태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제도와 출소 전 사회재적응을 위한 개방처우, 귀휴제도, 외부통근 및 통학, 주말구금제 등 중간처우제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중간처

우시설의 유형을 시설규모와 시설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자를 위한 중간처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소년범죄자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기존에 수행된 중간처우시설과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를 설정한다.

2) 현행의 유사 중간처우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현재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소(halfway house)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현행의 소년범죄자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은 법무부가 서울소년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퇴원생을 위한 자립관(일명:정명제)와 갯생보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자청소년 전용 시설 두 곳(딸부자집, 삼미생활관)과 남자청소년 전용 시설 한 곳(청소년의 집)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 외 유사한 성격으로 문화관광부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여성부가 지원하여 민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형태의 자활시설 및 정부의 지원없이 순수하게 민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시설과 그룹홈 등이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여성부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써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 시설로써의 기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제적으로 출소한 청소년의 사후 정착을 위한 시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간처우 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간처우 시설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주요 외국의 중간처우시설 유형 및 프로그램 사례조사

주요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고, 중간처우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간처우시설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지역사회내 주거식 처우시설과 비주거식 처우시설 및 종합적 처우시설이 있다. 각 시설 유형별로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및 일본의 중간처우제도 및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토대를 형성한다.

4)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및 대상자 수요도 조사

소년 범죄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및 대상자 수요도 조사를 실시한다.

소년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주체, 시설설비 일반, 시설 종사자 처우 및 채용방법, 운영비 등 효율적인 중간처우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향후 중간처우시설을 이용할 대상자의 수요도 조사를 전국 소년원 수감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이와 같은 질적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소년 범죄자의 안전한 사후관

리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중간처우시설 운영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 개발

소년 범죄자 및 중간처우 제도와 시설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및 대상자 수요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효율적인 중간처우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이 최대한 집중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연구,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와 대상자 면접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수행된 연구를 고찰하고 분석하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중간처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중간처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중간처우 시설의 모델 개발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마련한다.

한편,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와 대상자 면접조사를 통해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중간처우 시설을 이용하게 될 대상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다.

1) 문헌연구

- 중간처우의 개념과 중간처우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2) 사례연구

- 국내외 중간처우 시설 사례조사
- 국내외 중간처우 형태의 프로그램 사례조사

3)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직중인 현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시스템 및 효율적인 중간처우 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중간처우 시설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

4) 면접조사를 통한 수요도 조사

- 조사대상 : 소년원을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무의탁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수요도 조사
- 조사내용 : 시설 위치 및 구조, 인력, 희망 지원사항, 운영 형태 등 중간처우 시설 운영에 관한 청소년 수요도 조사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및 절차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중간처우의 개념적 논의 및 중간처우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문헌연구 : 중간처우의 개념 고찰 범죄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제도 및 중간처우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현행의 유사 중간처우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자료분석 : 중간처우시설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 유형 및 프로그램 사례조사	○사례연구 : 주요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 및 프로그램 사례 조사
○중간처우 시설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및 수요도 조사	○조사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재직 현장전문가 20명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재직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중간처우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 중간처우시설 거주경험이 있는 소년원 퇴원생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수요도 조사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 개발	○자문회의 : 현황 및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의견조사 및 수요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위한 중간처우 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II. 중간처우의 개념 및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중간처우의 개념 및 범위
2. 중간처우제도 및 시설의 유형
3. 중간처우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4. 선행연구 고찰

II. 중간처우의 개념 및 중간처우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대상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중간처우의 개념을 규정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중간처우의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중간처우제도의 형태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제도와 출소 전 사회재적응을 위한 개방처우, 귀휴제도, 외부통근 및 통학, 주말구금제 등 중간처우제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중간처우시설의 유형을 시설규모와 시설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자를 위한 중간처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소년범죄자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기존에 수행된 중간처우시설과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를 설정한다.

1. 중간처우의 개념 및 범위

일반적으로 중간처우의 개념을 두 가지로 유형화 할 때,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분류한다. 시설내의 중간처우는 시설내 처우에 의한 격리보안의 요소를 축소하고, 시설내에서의 생활을 일반사회와 가깝게 하는 것으로 개방처우제도, 귀휴제도, 외부통근 및 통학제도, 야간·휴일·주말구금제도, 반구금제도, 반자유제도 등이 이에 속하며, 사회내의 중간처우는 사회내 처우를 원칙으로 하여 교도소와는 다른 폭넓은 자유를 갖고 중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프로베이션 홈(probation home), 프로베이션 호스텔(probation hostel), 중간처우소

(halfway house), 석방전 지도센터, 사회내 처우센터 등이 이에 속한다(최순, 1998:71). 특히, 사회내 처우는 범죄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개별화된 교정 처우를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자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기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Dölling은 사회내 처우는 범죄인의 재범방지라는 측면에서 시설내 처우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일반예방의 효과도 시설내 처우에 비해 낮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내 처우는 경미하거나 중간정도의 범죄를 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예방적 한계내에서 사회내 처우를 운용하기 때문이다(Dölling, 1992:266).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4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년수탁시설 수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년을 가정외부의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사회내 수용처우의 형태이다. Fragen도 최소한의 감시를 받는 교정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재통합 전략이 교정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비행률과 재범률을 감소시켰음을 밝히고 있다(Fragen, 1990:233-263).

또 다른 사회내 처우의 유형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내 비수용처우를 들 수 있는데, 가출소, 가퇴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사회내 처우라 함은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정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는 제도로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뒤따르는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시설내 처우보다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교정시설의 과수용을 피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통제를 면함으로써 인도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조성희, 1997:128).

그러나 사회내 처우가 구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지닌 경우는 범죄인의 교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

건인 범죄자의 자발성과 모순되므로 실패되어질 수도 있다(이수성, 1990:19). 그러므로 범죄자의 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종교단체 혹은 사회사업단체 등 지역사회가 교화의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교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 및 범죄방지대책이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해 대체되기보다는 강제성을 띤 국가주도 처우의 한계를 민간과 지역사회 참여로 확대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시설 내 혹은 사회 내 중간처우는 발전 형태를 비롯하여 행정상의 조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교정참여와 교정의 개방화는 중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교정의 주체가 사법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분야로 이동해 갈수록 효과적일수 있는데, 이는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의 사법기관이 개입할수록 그 만큼 부정적 낙인의 정도와 그 영향이 심화되어 사회복지와 재활 및 사회재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처우의 용어를 정의할 때 “중간”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 중간이라는 개념이 범죄자에 대한 처우행위가 정규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소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규시설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사회내 자유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의 보다 완화된 통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간처우의 개념은 두 가지 핵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는 처우의 장소를 교정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전환한다는 점이고 둘째, 범죄자의 원만한 사회복지를 위해 재소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자율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즉, 중간처우의 의의는 일정한 감독과 관리 하에 범죄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형기 만료 후 실제 출소시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하고 재적응력을 양성하는데 있다(이백철, 1995:51).

이처럼, 중간처우의 범위는 출소가 예정된 범죄자의 형기 만료 시점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형기 만료 시점까지의 처우는 물론, 출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처우까지를 중간처우의 범위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소년 범죄자들이 전문적인 범죄자의 길로 빠지지 않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심리적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출소 후 중간처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중간처우 제도 및 시설의 유형

1)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중간처우제도 및 시설은 지역사회교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교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광의로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정활동 전체와 협의로는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광범위하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거나 범죄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정도가 최소한에 그칠 경우 혹은 교정프로그램의 운영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부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역사회교정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이윤호, 2002:48-49). 지역사회교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의미있는 유대관계의 중요성인데, 결국 범죄자와 직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빈도(frequency), 기간(duration) 및 질(quality)이 지역사회교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더 깊게 참여한 프로그램일수록 그만큼 더 지역사회에 기초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Ohlin 외,

1977:25).

Smykla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역사회교정은 전환(diversion), 옹호(advocacy), 재통합(reintegration)의 형태로 시행 중이다(Smykla, 1981:14-17). “전환”은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나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지역사회교정은 최소한 이러한 전환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공식 절차에 의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시설에 수용하고서는 제대로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옹호”는 범죄자의 변화보다는 사회의 변화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존의 자원에 범죄자를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필요한 자원이 부적절하다면 그 자원을 개발하고 기존자원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이용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범죄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나 무료법률부조활동 및 법률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재통합”은 범죄자와 사회의 공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자신의 가정, 학교 또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었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 취업, 상담 등 범죄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자원을 범죄자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통합적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 예로는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와 집단가정(group home)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의 처리과정을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우회하여 낙인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장치로

써 중간처우제도나 중간처우시설은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범죄자의 완전한 사회재통합을 위한 국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노력에서 지역사회교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중간처우 제도의 형태

최근 청소년 교정복지의 목적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토록 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원조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교정의 중심이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이행되고 있으며, 시설수용자가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되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비행 및 범죄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능한 일반사회와 유사하게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한 중간처우제도(Halfway System)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간처우제도, 즉 사회적 처우제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소 제도

중간처우소(halfway house)는 출소 후 출소자들이 겪게될 혼란과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중간처우소의 기원은 1817년 메사추세츠주 정부가 출소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처우센터를 설립한 이래, 1864년에 여성출소자를 위한 임시보호소가 창설되었고, 1896년에는 Maud Booth에 의해 중간처우소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96년 현재, 약 800여개의 중간처우소와 평균 29명 정도의 수용자가 있으며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다(최순, 1998:79).

이처럼 중간처우소는 출소자들을 위한 원만한 사회복귀의 기능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한 역할(Halfway-in House)도 하고 있고, 형사사법적 측면에서 판사의 대안적 선고로서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즉,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관찰 명령의 조건 하에 일정 기간동안의 프로그램을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처벌 대안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출소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갇혀보호제도가 있다. 갇혀보호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출소자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는 활동으로,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6-9개월의 숙식제공, 취업교육 및 알선 등이 이에 속한다.

(2) 출소 전 사회재적응을 위한 중간처우제도

출소가 임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원만한 사회재적응을 위해 시설내에서의 생활을 일반사회와 가깝게 하는 것으로 개방처우제도, 귀휴제도, 외부통근 및 통학제도, 야간·휴일·주말구금제도 등이 있다.

개방처우(open treatment)는 수용생활을 사회생활에 접근시킴으로써 폐쇄적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부통근제, 귀휴제, 부부접견제, 주말구금제 및 중간처우소(halfway house)까지도 넓은 의미의 개방처우제도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외벽, 쇠창살, 자물쇠 등 물리적 시설을 완화하고 시설구조를 기숙사 형태로 개선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방법을 개방처우로 보고 있다.

귀휴제도(furlough system)는 출소 후를 대비하여 생활계획을 세우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가사를 돌보게 하여 가족관계회복을 장려하는 허가제도로써 외출 내지 외박을 허가하는 반자유처우의 한 형태

이다.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적응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외부통근 및 통학(works and study release)은 자유형 집행의 한 방법이다. 외부통근은 수형자가 일반 사회의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단 야간 및 휴일에는 시설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소자의 긍정적인 태도변화와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외부통학은 소년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소년원생이 학교에 복학 또는 입학하게 될 때, 소년원에서 그 원생을 해당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말구금제(emprisonnement of weekend)란 단기 자유형의 분할집행방법으로 경범수형자로 하여금 가정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을 통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이 있다해도 타인에게는 수형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과 소년이 교육상 또는 고용관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중간처우시설의 유형

중간처우시설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본 절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와 시설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설규모에 따른 구분

중간처우시설을 시설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 소규모 시설과 중간규모 시설 및 대규모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수용인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소규모시설은 10~40명 이내, 중간규모 시설은 100명 정도의 집단기숙사이고, 대규모 시설은 150명 이상의 집단기숙사로 분류된다.

소규모시설에는 4-5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독립적 단독가정 형태를 띠고 있는 그룹홈과 4-5명 정도의 인원수로 구성된 소집단 몇 개가 있는 소숙사(small cottage) 형태가 있다. 소숙사에서는 몇 개의 독립된 가정이 생활 및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은 함께 취사는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중간규모 시설은 100명 정도의 인원이 집단으로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생활과 취사를 공동으로 하며, 대규모 시설은 150명 정도의 인원이 공동으로 생활 및 취사를 하며 집단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표II-1> 중간처우시설 규모에 따른 구분

시설형태	규모 및 형태
소규모 시설 그룹홈	독립적 단독가정형태
소규모 시설 소숙사 (small cottage)	시설 내 몇개의 가정형태 (생활·취사 분리 혹은 생활·취사 공동)
중간규모시설	100명 정도 집단기숙사 (공동생활, 공동취사)
대규모시설	150명 이상 집단기숙사 (공동생활, 공동취사)

(2) 시설운영 방식에 따른 구분

중간처우시설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지역사회교정센터(communitary correctional center), 숙박위주 교정시설(residential housing unit)로 구분할 수 있다(이백철, 1995:52-55).

중간처우소는 가장 보편적인 시설형태로 종교인 등 소수 민간관리자가 소규모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한다. 20여명 정도의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자율을 최대한 반영하며, 동료간 감독과 같은 비공식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향이며, 내부규칙 또한 간단하고 수용자간의 호혜적인 상호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상호 인관관계 구축에 중점을 둔 비공식적 통제형태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표II-2> 중간처우시설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

-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시설	가장 보편적인 시설 형태 20여명 정도 수용. 소규모건물 임대/기부 사용
운영	종교인 등 소수 민간관리자에 의해 운영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감독	동료간 감독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 내부규칙 또한 간단하고 수용자간의 호혜적인 상호관계유지에 중점
프로그램	수용자와 수용자, 수용자와 관리자간의 상호인간관계의 구축에 중점을 둔 비공식적 통제형태와 프로그램을 활용
- 지역사회교정센터(communitary correctional center)	
시설	다목적빌딩형태, 흔히 구치소를 개조한 형태 조기출소자, 경범자, 미결수, 구치소에 감금될 재소자 등 다양한 성분의 범죄자를 수용
운영	정부보호기관 또는 민간관리자
감독	큰 규모로 보안이 고려된 건물구조 일반교정시설과 유사한 내부규율, 24시간 감독
프로그램	다양하고 보다 정형화된 형태를 취함, 수용자의 행위결과에 따라 책임과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결정됨.
- 숙박위주교정시설(residential housing unit)	
시설	보통 100여명을 수용 외부통근 작업자, 가석방자들에게 기거시설을 제공하는 시설, 구호텔, 아파트, 교회 등을 이용 조기출소지도센터(prerelease guidance center) 지역사회처우센터(communitary treatment center)
운영	연방정부가 보조
감독	감시체계는 최소한
프로그램	비공식적 인간적 분위기 조성, 최소한의 서비스(기거, 취업알선, 상담 등)를 제공.

지역사회교정센터는 다목적 빌딩형태로 흔히 구치소를 개조하여 조기출소자, 경범자, 미결수, 구치소에 감금될 재소자 등 다양한 범죄자를 수용한다. 비교적 큰 규모로 보안이 고려된 건물구조이며, 일반

교정시설과 유사한 내부규율과 24시간 감독체제를 갖는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정형화된 형태를 취하며, 수용자의 행위결과에 따라 책임과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결정된다. 운영은 정부보조기관 또는 민간관리자가 하고 있다.

숙박위주교정시설은 보통 100여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호텔이나 아파트, 교회 등을 활용하여 쓰며, 외부통근 작업자와 가석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감시체계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인간적 분위기를 조성과 의식주, 취업알선 및 상담 등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은 연방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진다.

3. 중간처우 제도 도입의 필요성

2000년도 1년간 소년원을 퇴소한 소년 범죄자는 4,61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는 날로 흉포화, 저연령화 하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소년원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는데 실패, 또다시 재범의 길로 빠져들어 전문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간처우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표II-3> 소년원 보호 소년 입·출원 현황 (2000년)

구분	성별	계	남	녀	구분	성별	계	남	녀
입원	계	6,828	6,438	390	퇴원	계	4,619	4,357	262
	이월인원	2,220	2,104	116		퇴원	656	589	67
	소계	4,546	4,281	265		가퇴원	2,261	2,165	96
	송치	2,969	2,734	235		처분변경	7	4	3
	전원	1,577	1,547	30		처분취소	31	29	2
	가퇴원취소	60	52	8		이송	1,651	1,558	93
원	이탈자복원	2	1	1	원	기타	13	12	1

자료출처 : 법무부 미공개 통계자료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공통적으로 16~17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14~15세, 18~19세, 14세 미만의 순이다. 1999년도의 경우에도 16~17세가 38.3%, 14~15세(27.5%), 18~19세(18.1%), 14세 미만(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소년보호사건의 죄명별 접수인원을 보면, 총 36,757명 중 절도가 13,115명(35.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11,475명(31.2%)으로 두 죄명만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표II-4> 보호소년의 연령층별 인원 (1990~1999)

연령 연도	계 (%)	14세 미만 (%)	14~15세 (%)	16~17세 (%)	18~19세 (%)
1995	28,641 (100)	4,831 (16.9)	9,048 (31.6)	9,511 (33.2)	5,251 (18.3)
1996	30,992 (100)	5,605 (18.1)	10,136 (32.7)	10,381 (33.5)	4,870 (15.7)
1997	37,559 (100)	6,729 (17.9)	11,838 (31.5)	13,534 (36.1)	5,458 (14.5)
1998	37,081 (100)	6,264 (16.9)	12,158 (32.8)	12,867 (34.7)	5,792 (15.6)
1999	32,348 (100)	5,222 (16.1)	8,886 (27.5)	12,386 (38.3)	5,854 (18.1)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46 참조

주 : 연령은 범죄행위시의 연령

<표II-5>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1999년)

위반죄명	인원	위반죄명	인원
상해	601	교통사고특례법	688
폭행	847	도로교통법	1,129
강간	5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130
주거침입	621	특가법	1,853
절도	13,115	폭력행위처벌법	11,475
강도	1,328	기타	2,462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도표 II-16 참조

소년원에 신 수용된 소년의 비행내용도 마찬가지로, 1998년과 1999년의 경우 절도가 가장 많고, 상해·폭행, 강도, 약물사용, 음란(강도, 강간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고, 18세 이상 20세 미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I-6> 소년원생의 학력별 인원 (1995-1999)

구분 연도	계	불취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1995	2,718 (100)	5 (0.2)	260 (9.6)	1,776 (65.3)	676 (24.9)	1 (0.0)
1996	3,660 (100)	9 (0.2)	324 (8.9)	2,358 (64.4)	965 (26.4)	4 (0.1)
1997	4,185 (100)	21 (0.5)	480 (11.5)	2,573 (61.5)	1,110 (26.5)	1 (0.0)
1998	3,520 (100)	4 (0.1)	150 (4.3)	2,196 (62.4)	1,166 (33.1)	4 (0.1)
1999	3,108 (100)	2 (0.1)	146 (4.7)	1,867 (60.0)	1,082 (34.8)	11 (0.4)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70 참조

<표II-7> 소년원생의 직업별 인원 (1995-1999)

구분 연도	계 (%)	학생 (%)	농업 (%)	상업 (%)	직공 (%)	노동 (%)	무직 (%)	기타 (%)
1995	2,718 (100)	372 (13.7)	8 (0.3)	115 (4.2)	248 (9.1)	74 (2.7)	1,630 (60.0)	271 (10.0)
1996	3,660 (100)	397 (10.8)	21 (0.6)	193 (5.3)	204 (5.6)	85 (2.3)	2,311 (63.1)	449 (12.3)
1997	4,185 (100)	589 (14.0)	20 (0.5)	252 (6.0)	280 (6.7)	141 (3.4)	2,327 (55.6)	576 (13.7)
1998	3,520 (100)	482 (13.7)	7 (0.1)	256 (7.3)	171 (4.9)	101 (2.9)	2,124 (60.3)	379 (10.8)
1999	3,108 (100)	480 (15.4)	9 (0.3)	149 (4.8)	86 (2.8)	41 (1.3)	2,079 (66.9)	264 (8.5)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71 참조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학력은 전체의 60%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력 이하의 분포가 감소하는 추세는 전체적으로 진학

률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압도적으로 많아 1999년에는 66.9%까지 달하고 있으며 학생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볼 때, 소년원생의 대다수는 16-17세의 무직상태의 중졸이하 학력이며, 비행전력에 있어서 절도가 가장 많고, 폭력, 약물사용, 음란물 등의 경험을 갖고 있어 안전한 사회복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범의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이 낮은 저학력자의 범죄 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간처우 제도 도입과 시설 운영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의 비행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그 간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지만, 비행청소년, 좀더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원생을 위한 교정복지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 및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유사한 연구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소년보호관찰제도, 소년수탁시설, 중간처우제도,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 외국의 소년범 처우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복지수용시설과 사회복지수용시설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1) 중간처우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세 수행한 「중간처우에 관한 연구」(1995, 이백철)는 1960년대 이후의 급속히 발전한 중간처벌 및 중간처우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재를 영미국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교정계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중간처우제도를 지역사회교정으로 보고 지역사회교정의 확대실시와 교정업무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및 점진적 민영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갇혀있는 교정부문이나 소년범 교정부문 및 경찰부문 등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중간처우시설 대책의 초기단계는 공신력이 확실한 종교단체나 법인체에 의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설의 수용규모는 20~30명 정도의 소규모로, 시설의 운영은 전문화된 치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되, 각 범죄유형이나 특수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교정학, 상담, 치료 및 사회사업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한 유사한 연구인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김준호, 1994)는 소년법상의 제4호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수탁시설, 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탁시설의 소년처우(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특성을 파악하여 수탁시설의 처우실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소년수탁시설은 소년교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둔 시설이지만, 수탁시설에서의 소년 처우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고, 활용

정도와 수탁시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탁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재욱(1990)은 「소년원 직원훈련 이수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교정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소년원 퇴원자의 재범방지과 인권, 복지증진, 직장 적응 등을 위한 사회사업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중간처우시설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많은 소년원생들은 소년원 퇴원 후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고, 직장생활에 있어서 각종 생활방식과 기능 및 지식의 차이로 인해 직장이탈 비율이 높았음을 실증적 조사결과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사업가 혹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지역사회내에서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퇴원자들이 정상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숙식제공, 직업훈련, 학교교육, 취업 알선, 상담치료 등 전문사회사업가의 보호·감독·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2)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소년수형자에 대한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에서의 효율적인 교정 처우를 연구한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이훈규, 1996)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교화 활동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년수형자 교정처우 개선방안 으로는 수용환경의 개선(정서적 환경), 수용구분상의 개선(학력과 잔형 기에 따라 분류 필요), 단위사동관리제도(單位舍棟管理制度, unit management system)의 도입검토 등 소년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집중 관리의 필요성과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및 세분화 등 수용상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교정처우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교도작업시설의 현대화와 직업훈련

의 내실화 방안이,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소년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외부통근작업과 귀휴, 가석방 등의 확대 실시, 사회성 개발촉진을 위한 소년단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처우로서 소년보호관찰은 또 다른 형태의 중간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법의 제정에 따라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보호관찰관)의 감독·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인을 개선·교육하는 제도이다.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부터 정식 도입되어 시행하게 된 보호관찰제도는 단기간 내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장 중요한 처우방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매년 20%이상의 규모로 보호관찰 신규이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한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최인섭, 1993)은 소년들의 재범율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효과적인 사회내 처우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과 보호위원의 양적 증가(당시 보호관찰관 1인당 600명)와 물적 측면에서 현재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의 실비 증액을 제언하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호관찰 제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호관찰제도가 각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혁무(2000)는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에서 지역사회교정이 갖고 있는 의의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의 사례로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중간처우소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고찰을 처우대상자 선정, 위치선정, 인력과 훈련, 처우서비스 및 시설보안과 지역사회보호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자는 거주지역과 연령, 성격 등을 고려하여 알코올 및 약물중독 경험 여부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위치는 지역사회의 성격, 관계, 건물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유용한 자원, 예를 들어 공공교통,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문인력과 학생, 인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근직원, 행정요원, 처우 및 치료요원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시설보안과 지역사회 보호에 있어서는 외부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체제를 유지하되 시설 내 통금규칙, 야간경비, 범죄유발적 환경 차단 등 기본적인 통제는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성호(2000)는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에서 최근 형사사범분야에서 새로운 조류로 떠오르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중의 하나인 ‘가족집단회합’ 또는 ‘가족회합’을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가족회합제도에서는 소년법을 처벌하고 낙인찍어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벌과 함께 사회에 재통합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회합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다. 뉴질랜드는 1989년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에 관한 법”에 따라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심각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자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해자, 피해자, 가족공동체, 그리고 이 갈등해소과정에서 국가의 대리인(경찰)이 중재 및 조정자(police coordinator)로 참여한다. 호주의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은 크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가족회합모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가족회합’,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가족회의’로 나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법원 재판에 회부된 소년범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40% 정도), 범죄자가 회합에서 동의한 결과를 이행하는 비율은 90%를 상회했고, 특히 피해자의 참여와 만족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재범율이 35%정도로 감소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회합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서 경찰을 중심으로 시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소년, 그 가족, 그리고 피해자로 구성된 가족회합, 학교폭력에 가족회합의 원리를 도입해 경찰 대신 학교(교사)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가족회합 등에 도입가능할 것임을 제언했다.

이외에 보호관찰제도 및 갇생보호 등 지역사회교정과 사회내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이재상·안경옥:1995, 조성희:1997, 노승월:2000, 임종진:2001)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교정행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내 처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과 내용으로 효율적인 교정복지의 실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원생 혹은 보호처분을 받아 수탁 시설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청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재범방지와 사회재통합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많은 운영상의 문제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체제 속에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축적된 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퇴원한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내 처우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Ⅲ. 현행 유사 중간처우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Ⅲ

1. 소년범죄자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의 종류
2. 중간처우시설 운영실태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현행 유사 중간처우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현행의 유사 중간처우시설은 법무부가 2001년 서울소년원에 위탁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 퇴원생을 위한 자립관(일명:정명제)이 있고, 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간처우시설(딸부자집, 청소년의 집, 삼미생활관 등)과 민간 종교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직업보도시설과 그룹홈, 그 외 유사한 성격으로 문화관광부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여성부가 지원하여 민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형태의 자활시설(방학동나눔터) 등이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여성부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시설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출소한 청소년의 사후 정착을 위한 시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간처우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간처우시설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소년 범죄자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의 종류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에 해당하는 중간처우시설은 현재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과 비행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처우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 청소년쉼터 혹은 소년수탁시설 및 선도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갱생보호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은 서울지부 송파출장소 “딸부자집”과 서울지부 은평출장소 “청소년의 집”, 그리고 수원지부 “삼미생활관”등 세 곳으로 청소년 전용 갱생보호시설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 가퇴원자를 중심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을 일정기간 수용보호하며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곳이나,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 모두가 소년원 수용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비행청소년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송파출장소 딸부자집과 수원지부 삼미생활관은 여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은평출장소 청소년의 집은 남자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갱생보호시설이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내 처우시설인 그룹홈과 청소년쉼터는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재정지원을 얻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여성부의 재정지원을 얻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형태의 청소년쉼터는 수십 개에 달하고, 문화관광부가 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도 각 지방광역시에 한 개 시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얻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도 서울에 4개 시설이 있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은 주로 윤락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을 강제 수용하는 시설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여자 비행청소년이 일정기간 체류하며 자립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정부의 전액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

호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일정기간 체류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거나 시설보호가 더 필요한 여자청소년이 자유의사 결정에 의해 선도보호 시설에 의뢰되기도 하며, 윤락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여자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되기도 한다.

2. 중간처우시설 운영 실태 분석

본 절에서는 소년범죄자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시설에 해당하는 갱생보호시설, 그룹홈 및 청소년쉼터, 중간처우의 형태를 일부 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선도보호시설과 소년수탁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갱생보호시설은 현재 청소년 전용 시설로 여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딸부자집과 삼미생활관과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의 집을 개별 시설사례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룹홈은 정부 지원부처도 다르고 운영 종교단체도 다양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그룹홈이 존재하지만, 범죄의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이 기거하고 있는 시설인 방학동 나눔터를 사례 분석한다. 한편, 청소년쉼터와 선도보호시설 및 소년수탁시설을 총괄적으로 개관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중간처우 현황을 파악한다.

1) 갱생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원 가퇴원자나 출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기간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시설운영 현황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은 여자청소년 전용 시설인 딸부자집과 삼미생활관, 남자청소년 전용 시설인 청소년의 집이 있다.

딸부자집은 2000년 5월에 개소한 시설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하고 있다. 형사처분 혹은 보호처분을 받은 20세 미만의 여자 범죄 청소년과 결손가정 혹은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비행과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확보는 소년원에 재원하고 있는 가퇴원 대상의 무의탁 청소년 혹은 퇴원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받으며, 가정법원의 보호위탁과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보호의뢰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설은 대지 62평 규모의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으로 공부방 1실, 거실 2개, 방문가족 생활실 1실을 포함하여 침실 5실, 식당 1실, 관리실 1개 및 기타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은 소장 1명과 생활지도 담당 1명 및 취사를 담당하는 일용직 1명 등 3명이며, 이들 직원이 10명 정도의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및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시설의 운영방침은 가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제공되는 지원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대상자의 사후정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미생활관은 1991년 3월 갱생보호회 수원지부 삼미생활관으로 개관하여 1995년 6월 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삼미출장소로 개칭한 시설로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 소재하고 있다. 시설 이용 대상자와 대상자 확보는 딸부자집과 동일한 형태이며, 시설 규모는 사무실 및 생활관 120평과 직업보도장 80평 정도이다. 직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용직이 별도로 있었고, 2002년 8월 현재 이곳 생활관에 있는 청소년은 13명이었다.

청소년의 집은 남자 청소년 전용 시설로 1995년 10월 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은평출장소로 개소하였다.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혹은 소년법 제 33조의 처분을 받은 만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가퇴원 후 복귀할 가정이 없거나 가정문제로 방황하는 청소년 등이다.

시설은 대지 75평 규모의 지상 2층 주택으로 1층에는 생활실, 사무실, 조리실, 식당, 독서 및 시청각실이 있고, 2층에는 생활실 2실이 있다. 직원은 소장 1명과 생활지도 담당 1명 및 취사를 담당하는 일용직 1명 등 3명이며, 이들 직원이 13명 정도의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및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하여 후원 및 결연사업을 유도하여 재원생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및 사업실적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3개 시설 모두 거의 흡사하며,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딸부자집에서는 9개월까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외부학원에 위탁하여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또한,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며, 이전 학교에 복학을 시키기도 한다. 한편, 자원봉사자와 갱생보호사업 후원회원을 통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며,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해결을 위한 상담 및 면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 결과, 2001년 연간 사업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숙식제공 45명, 직업훈련 15명, 취업알선 15명, 재사회화 교육 52명, 사전면담 7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연고자 결연(14명), 주민등록 민원해결(9명), 의료시혜(11명), 생계보조(1명), 여비지급(2명) 등 기타 자립지원 실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 딸부자집 연간 사업실적 현황

구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재사회 교육	사전 상담	기 타 자 립 지 원							
						계	무연 고자 결연	주 민 등 민 원 해 결	의 료 시 혜	의 탁 알 선	생 계 보 조	여 비 지 급	기타
2001	46	15	15	52	7	52	14	9	11	1	1	2	14
2002 5월	35	7	8	27	9	13		2	3	3		1	4

자료 : 한국강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송파출장소 내부 자료

삼미생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도 딸부자집과 유사한데, 직업보도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변 미용실의 후원을 얻어 미용강좌 및 미용봉사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주 1회 가사실습을 실시하여 요리, 가정제품 사용법, 가정 경제관리 등 가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합동 생일잔치를 후원을 통해 실시하여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02년 8월 현재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숙식제공 65명, 직업훈련 6명, 취업상담 87명, 취업알선 34명 등이며, 무연고자 결연(7명), 무호적자 취적(13명), 의료시혜(2명), 생계보조(10명) 등 기타 자립지원 실적 인원도 32명에 달한다.

<표 III-2> 삼미생활관 연간 사업실적 현황(2002년)

구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상담	기 타 자 립 지 원					
					계	무연 고자 결연	무 호 적 자 취 적	의 료 시 혜	생 계 보 조	기타
2002 8월	65	6	34	87	32	7	13	2	10	4

자료 : 한국강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삼미출장소 내부 자료

청소년의 집은 남자청소년 전용 갱생보호시설로써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영방침은 여자청소년 전용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6-9개월간의 무료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지원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재원생의 자립능력 신장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거나 소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대상자에게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및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 범죄예방협의회, 서부소년선도재단 및 여러 지역사회 단체의 결연 및 후원사업을 유도하여, 학원수강료, 무료 학원수강, 컴퓨터를 비롯한 시설장비, 취업교통비 등을 지원 받아 재원생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III-3> 소년의 집 연간 사업실적 현황(2002년)

구분	숙식 제공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재사 회화 교육	사전 면담	기 타 자 립 지 원							
						계	무 연 자 결 연	주 민 등 민 원 해	의 료 시 혜	의 탁 알 선	생 계 보 조	여 비 지 급	기타
2002 7월	48	16	9	32	70	56	9	5	24		11		7

자료 :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은평출장소 내부 자료

이상에서 살펴 본 청소년 전용 갱생보호시설, 3개 시설의 운영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갯생보호시설-딸부자집 운영 현황

명칭	'딸부자집'(여성청소년생활관) (한국갯생보호공단서울지부 송파출장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이용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20세 이하 여자 비행청소년 -환경개선이 필요한 청소년 -가정형편의 문제로 학업과 직업교육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해 재비행이 우려되는 청소년	
대상자 확보	-무연고 재원생과 결연 -퇴원전 사전면담(사회복귀상담) -가정법원의 보호위탁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보호의뢰	
운영주체 (지원단체)	한국갯생보호공단서울지부 송파출장소	
연혁	2000. 5. 12	한국갯생보호공단서울지부 송파출장소 (서울여성청소년생활관) 개소
	2001. 1. 2	송파출장소 어머니후원회 구성
	2002. 4. 15	송파출장소 대학생후원회 구성
직원현황	-3명 (일용직 취사부 1명)	
수용현황	-여자 청소년 10명	
시설현황	-지상 2층, 지하1층 (대지 203.30㎡(62평), 건평 256.44㎡(78평)) -공부방1, 거실2, 침실5, 식당1, 관리실1, 기타 부대시설	
업무목표	-완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재비행 방지에 목표 -내집처럼 느끼는 가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종류가정 이상의 문화적인 생활습관을 통해 자신감 회복 -일정기간 숙식제공 및 학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소부터 퇴소까지 무한책임시스템 운영	
업무내용	-무료 숙식제공(9개월까지) 실시 -직업훈련(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외부학원에 위탁교육) -학교복학(중고등학교 복학 주선) -검정교육(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탁교육 실시) -취업알선(자립기반을 위해 안정된 직장으로 알선) -결연사업(자원봉사자, 갯생보호사업 후원회원 등) -재사회화교육(건전한 심성유지, 기초소양교육실시) -사전면담(건전한 사회 적응 위해 퇴원전 사회복귀상담 실시) -무연고자면담(무연고 재원생에 대한 면회실시) -기타자립지원(애로 및 고충사항의 해결, 안정된 생활 유도)	

<표 III-5> 갱생보호시설-삼미생활관 운영 현황

명칭	한국갱생보호공단수원지부 삼미출장소 삼미생활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이용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20세 이하 여자 비행청소년 (자립갱생을 위한 갱생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대상자 확보	-무연고 재원생과 결연 -퇴원전 사전면담(사회복귀상담) -가정법원의 보호위탁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보호의뢰
운영주체 (지원단체)	한국갱생보호공단수원지부 삼미출장소
연혁	1991. 3 갱생보호회 수원지부 삼미생활관 개관 1995. 6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삼미출장소 개칭
직원현황	-3명 (일용잡급 취사부 1명)
수용현황	-여자 청소년 13명
시설현황	-사무실 및 생활관 120.39㎡, 직업보도장 78.41㎡ -공부방1, 거실2, 침실5, 식당1, 관리실 1, 기타 부대시설
업무목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
업무내용	-숙식제공(생계보조 및 기타) -취업상담실 운영(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기타 자립지원과 부수한 선행지도 등 -무연고자 결연, 부호적자 취적 등 -의료시혜, 의탁알선 등 -미용강좌 및 미용봉사 등 -종교교화 활동 -가사실습 -합동생일잔치

<표 III-6> 갱생보호시설-청소년의 집 운영 현황

명칭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은평출장소 ' 청소년의 집'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이용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년법 제32조의 처분을 받은 만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퇴원 후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정문제로 방황하는 청소년
대상자 확보	-무연고 재원생과 결연 -퇴원전 사전면담(사회복지상담) -가정법원의 보호위탁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보호의뢰
운영주체 (지원단체)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은평출장소
연혁	1994. 12 사무실 및 생활관 건물 매입 1995. 10 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지부 은평출장소 개소
직원현황	-정원 3명, 현원 3명(일용잡급 취사부 1명)
수용현황	-남자 청소년 13명
시설현황	-대지 247.6㎡, 건물 172.2㎡ -1층 : 사무실, 생활실, 조리실, 식당, 시청각실, 2층 생활실
업무목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내용	-숙식제공 (자율적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는 현대식 공동주거(group home)로 6~9개월간 숙식제공과 각종 생활지도 및 교육) -직업훈련 (직접전문학교 및 일반학원 등 지원, 기술교육지원 및 알선) -취업알선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상담지원 (쉼터제공, 자매결연, 호적취적, 의탁알선 등 출소 후 사회부적응 비행청소년 상담)

2) 그룹홈

장기 그룹홈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 및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가정과 똑같은 형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본 절에

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학동 나눔터의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중간처우시설의 또 다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시설운영 방식

방학동 나눔터는 1998년 6월 비행청소년들 쉼터 “나눔터”로 개소한 시설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소재하고 있다. 12-20세의 서울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정심여중) 퇴원자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가정과 같은 생활을 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확보는 정심여자정보산업중학교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퇴소시기를 앞둔 청소년과 상담 및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확립하며, 그 후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경제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시설 입소를 결정한다.

입소 후 3개월까지는 탐색기로써 정서적인 안정이 1차적인 목표이며, 의식주를 제공하고 개별상담을 실시하며 가족관계의 개선을 시도한다. 다음단계인 3-6개월은 조정기로써 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집단 및 개별심리검사와 각종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며 독서 및 취미교실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6개월 이후는 안정기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업과 취업으로 분류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목표와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데, 학교복학, 검정고시준비, 취업교육 및 알선 등 개인이 정한 진로에 따라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

퇴소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과의 재결합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퇴소이후에도 주말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교류관계를 유지한다.

시설은 일반 아파트를 임대하여 수녀 1인이 상주하며, 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와 진학 및 취업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비상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설 운영의 기본목표

는 재비행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정 및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며, 직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지원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대상자의 사후정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나눔터는 청소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또는 필요한 때, 분류심사원과 정심여중을 방문하여 원생 및 교사와 상담 후 나눔터의 입소를 결정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며,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학교부적응청소년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나눔터 생활을 적응해 가는 과정을 알기 위해 개별상담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이접기, 꽃 만들기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한편, 자립능력의 신장을 위해 학력취득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는데, 학업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복학을 주선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며, 학습미진아를 자원봉사자 혹은 야학에 의뢰하여 학습도움을 받도록 한다. 직업훈련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컴퓨터, 미용, 피부미용 등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며,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가족과의 만남 주선도 나눔터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대상자의 부모를 나눔터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III-7> 그룹홈-나눔터 사업개요

항 목	개요 및 현황
시 설 명	방학동 나눔터
운영주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지원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직원현황	상주 1인
이용대상	12-20세의 비행청소년(서울분류심사원, 정심여중 퇴원자)
이용기간	장 기
기관연혁	1998년 6월 비행청소년들쉼터 '나눔터'(부천시 오정동) 개원 1998년 8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리로 이전 2000년 9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3동으로 이전
사업의 목표	<1차적 프로그램>
	①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 ② 이를 통한 가정복귀 ③ 학교복귀 ④ 직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 하며 자립을 도운다.
	<2차적 프로그램>
사업의 목표	① 개별상담실시 및 심리상담 의뢰 ② 취미교실운영: 종이접기, 꽃만들기, 뜨개질, 퀼트, 장구 등 ③ 독서, 비디오를 통한 정서교육 ④ 성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함 ⑤ 문화행사 및 봉사활동 (놀이문화, 유적답사 및 시설봉사활동) ⑥ 생활교육 - 사회교육, 인성교육 ⑦ 기술교육 및 취업교육의 유도 (타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실시) ⑧ 검정고시교육 - 타 교육기관에 의뢰실시

<표 III-8> 나눔터의 그룹홈 운영방식

입 소 과 정	①정심여자정보산업중학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을 방문, ②종교집회·상담활동을 통해 퇴소 시기를 앞둔 청소년과 상담 및 교류 ③청소년과 유대관계 확립 시기(3개월~1년 정도)를 거쳐, ④대상 청소년의 가족관계,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설 입소 결정
------------------	--

↓ ↓ ↓

수 용 과 정	①입소~3개월 탐색기	정서 안정	-1차의식주 해결 -개별상담 (개별적 지지와 격려 등) -가족관계개선 (만남주선, 나눔터 방문 등)
	②3~6개월, 조정기	적성검사, 프로그램 시작	-집단 및 개별 심리검사, 성격유형검사, MMPI, MBTI 등 실시 -각종문화프로그램 실시 (비디오, 독서, 취미교실 등)
	③6개월 이후, 안정기	학업과 취업으로 나뉘, 각 청소년들에게 맞는 목표와 진로를 택함	-학교 재입학 (학교장학금 알선 등) -검정고시 준비 (자원봉사, 야학, 복지관 등) -취업교육 및 알선 (관련교육기관 알선 등)

↓ ↓ ↓

퇴 소 과 정	①가족(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과의 재결합을 유도 ②경제적 자립(취업알선, 자립적금통장, 거주지 연결 등)을 원조 ③담당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스스로 퇴소 시기를 결정하도록 유도 ④퇴소 이후, 주말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실질적 교류
------------------	--

<표 III-9> 나눔터 사업내용

사업명	비행청소년 보호 및 재비행 방지 선도사업
사업목표	1. 가정적이고 따스한 분위기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제공 2.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학교복학 시도에 따른 노력과 가정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재비행을 방지하는데 있다. 3. 상담을 통한 자아인식과 자기성찰, 긍정적 정체성 확립 -개별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치유와 안정에 도움을 준다.
사업내용	1. 1차적 서비스인 의식주 해결 -비행청소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2. 타기관에로의 의뢰와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기관에 의뢰하여 학교복학 및 검정고시, 학력인증 대안학교 등을 보낸다. -대상자의 부모를 나눔터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한다. 3.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효과 -집단 및 개별상담 그리고 심리검사, 성격유형검사, MMPI, MBTI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서상태를 파악하여 입소자에게 필요한 욕구와 문제드러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관계의 결속력과 신뢰감, 그리고 사회화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기대효과	1. 비행청소년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의 쉼터에서 자신들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느끼며 여럿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서로에 대한 배려, 양보, 극기, 협력 등을 배운다. 2. 개인의 고유함을 존중해주며 재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쁘게 노력하며 자립하려는 의지와 함께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3.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치유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사회자원을 잘 활용하여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욕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III-10> 나눔터 프로그램

사업명	목 표	사업진행내용
홍보활동	퇴원후 거처를 제공하여 재비행을 방지	매주 토요일, 또는 필요한 때, 심사와원·정심여중을 방문하여 생활관 선생님과 상의 후 나눔터와 연계 결정.
타기관의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의료, 문화, 교육, 정신건강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기관에 의뢰 및 연계해 주어 그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함.
프 로 그 램 실 시 현 황	개별상담 및 생활상담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와 안정, 그리고 사회화로 의 적응을 갖게 함.
	검정고시 및 기술교육 수강	학업의 기회를 놓쳐버린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컴퓨터, 머리, 피부 미용 등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원조하며, 자립의지를 키워준다.
	취미교실 운영	종이접기, 꽃만들기, 퀼트, 장구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배우고 끝까지 한 작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도록 한다.
	성교육	비디오를 보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느낀 점을 발표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올바르게 갖도록 지도한다.
	문화행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정으로써 입소자들의 발랄함과 열정적인 감성들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비디오여행	비디오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간의 사랑 등을 느끼며, 또 시청후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입소자 자신들도 영화의 주인공에 투사되어 자신의 마음상태를 돌아보기도 한다.
	독서하기	독서를 통해 사고하는 습관과 느낌, 소감 등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바라보도록 한다.
	학습지도 및 자원봉사활동	검정고시 준비자에게 학습도움을 주게 하고, 학습미진아를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하게 하여 부족한 과목을 보충학습시키며 학습능력을 길러나가게 한다(자원봉사자활동/인근 복지관, 야학 의뢰).

3) 청소년쉼터¹⁾

(1) 사업개요

청소년쉼터는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를 이미 중도 탈락하였거나 무단 결석한 상태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숙식제공, 상담활동, 각종 교육활동 및 여가활동의 제공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처우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일시보호 :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방지하고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며, 가출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담활동 :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이성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그들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와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건전한 성장을 유도한다.

○ 교육활동 : 집단상담프로그램, 약물 및 성교육, 대인관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정서함양프로그램 (영상, 미술, 음악, 문학 활동 등), 진로교육 (직업상담, 취업정보자료제공, 학습지도, 검정고시 준비 등), 스포츠프로그램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마사지, 등산 등), 봉사활동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체험활동), 전문기관 위탁 교육실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청소년문제예방활동 : 조사연구, 세미나, 소식지 발간,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욕구와 청소년 문제의 흐름을 파악한다.

1) 본 절은 연구자가 수행한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박창남 외, 2001)에서 발췌·수록하였다.

○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① 청소년쉼터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2000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재정 지원한 청소년쉼터는 전국 7대광역시 별 1개 쉼터로 총 2억 4천 8백만원 정도이며, 20001년도에는 추가로 서울구로쉼터에 지원하고 있어 총 8개 청소년쉼터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서울 신림쉼터를 비롯하여 6개 쉼터가 있어 전국의 총 14개 쉼터가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총 14개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181명으로 수 만명에 달하는 가출청소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구성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6-7명 정도의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으나 소장 및 관장 등 비상근인력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상근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2-3명 혹은 3-4명 정도에 불과해 상담, 프로그램, 생활지도, 취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쉼터의 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특성상,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을 신속히 찾아내어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거리지도 혹은 현장파견(outreach program)지도가 필요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유동인원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인력 및 야간지도 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급기야는 소명의식을 저버린채 이직하는 등 인력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심리검사를 비롯하여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각종 상담활동, 집단심성훈련, 봉사활동, 취

업교육 혹은 영화감상, 체육활동, 미술활동을 비롯한 각종 문화활동과 정서함양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 머물며, 매우 유동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 공간 부족 및 재원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제고되어야 한다(전경숙, 1999:49-50).

<표III-11> 정부지원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및 예산현황

	쉼터명	수용자				시설 규모 (평)	개설일	예산 (2000)	예산 (2001)	지원처
		입소자 정원	성별	나이	이용 기간					
1	서울YMCA청소년쉼터	12	여	13-18	1개월	70	92.10.	80,665천원	80,000천원	문화 관광부
2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15	남	13-19	3-6개월	57	2001.3	60,000천원 (30,000천원)	60,000천원 (30,000천원)	문광부 인천시
3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8	여	9-24	2-4주	46	98.6	99,000천원 (26,977천원)	129,000천원 (30,000천원)	문광부 대전시
4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10	남,여	9-20	7-30일	50	98.7	53,954천원 (26,977천원)	60,000천원 (30,000천원)	문광부 대구시
5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	15	여	9-24	10일	70	98.7	53,954천원 (26,977천원)	60,000천원 (30,000천원)	문광부 광주시
6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15	여	9-24	6개월	30	98.7	71,000천원 (29,500천원)	110,000천원 (30,000천원)	문광부 부산시
7	울산광역시 청소년쉼터	10	여	9-24	2주~6 개월	45	99.5.	53,956천원 (26,978천원)	60,000천원 (30,000천원)	문광부 울산시
8	구로 청소년쉼터	20	여	12-20	3개월	162	98.5.	446,350천원 (-)	446,350천원 (30,000천원)	서울시
9	신림 청소년쉼터	20	남	12-18	1개월	150	98.5		413,650천원	서울시
10	강남구 청소년쉼터	15	남	10-18	6개월	164	98.1		200,000천원	강남구
11	노원구 청소년쉼터	6	여	9-24	6개월	30	98.7		60,000천원	노원구
12	수원시 청소년쉼터	15	남,여	9-24	2년	72	20.5.		100,000천원	수원시
13	달서구 청소년쉼터	10	남	9-20	3개월	156	99.12.		80,000천원	대구시 달서구
14	모퉁이쉼터 (부천시)	10	여	12-19	1-3개월	161	99.9.4		102,829천원	부천시

출처 :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자료제공

* () 예산은 문화관광부 지원 예산

② 사업실적

청소년쉼터의 대표적 기능은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수용보호와 가출청소년 및 가출위험 청소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 및 집단상담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도 1년간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10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총 30,624명이다. 이 중 14-16세의 청소년이 14,078명으로 쉼터에 입소한 전체 가출청소년의 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가출이 중학교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세 미만의 가출청소년도 3,861명으로 기록되고 있어 가출청소년의 저연령화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10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실 인원 중 가정 및 학교에 복귀되거나 보호기관 의뢰, 취업알선 및 대안학교 입학 등 사후관리 된 인원은 2,153명으로 7%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쉼터를 거쳐간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다시 재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Ⅲ-12> 2000년도 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 (해당분기/누계)

총계 (연인원)	연령대 (연인원)				총계 (연인원)	보호기간			
	13세 미만	14-16 세	17-19 세	20세 이상		15일 미만	16-30일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30,624	3,861	14,078	11,266	1,419	30,624	11,628	10,028	6,097	2,871

출처 :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자료제공

* 10개 쉼터: 서울YMCA,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서울시립 구로, 신림쉼터, 강남구, 노원구 청소년쉼터

<표Ⅲ-13> 가출청소년의 사후관리 현황

월별	소계 (실인원)	가정 및 학교복귀	보호기관 의뢰	취업알선	대안학교 입학	기타	비고
총계	2,153	999	176	57	15	906	

출처 :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자료제공

4) 선도보호시설²⁾

(1) 사업개요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가출·유혹·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며 각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회재적응을 돕고 있다.

수용대상은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부 판사가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입소조치(보호처분)하는 경우이나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청소년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은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청소년쉼터에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 의뢰한 경우도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 숙식제공, 인성변화교육 및 생활지도, 진학·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교육 실시, 의료보호(1종) 수혜,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와 상담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1999:4). 1996년도에는 17개소 선도보호시설에서 487명이 교육받아 이 중 98명이 취직, 14.4%의 취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이래로 선도보호시설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가출소년들이 선도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가출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도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선도보호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료 숙식제공 : 일정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며 기본적인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성변화 교육 및 생활지도 : 전문상담, 정신심리개발, 임상치료

2) 본 절은 연구자가 수행한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박창남 외, 2001)에서 발췌·수록하였다.

등의 전문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정기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입소자의 문화 및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진학과정 운영 : 개개인의 진학 및 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직업교육 실시 : 직업훈련은 취업이 용이한 과목을 시설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설내 적당한 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훈련과목이 부적절하거나 성과가 미진한 과목은 폐지·조정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재·실습재료·교사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의료보호 적용 :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를 적용하고 있다.

○ 건강진단 실시 : 입소자들에게 의료보호자격을 부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도보호시설은 갱생보호시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강제적 성격을 띤 시설내 처우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생활지도나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좀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내에서 무상으로 직업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각종 의료혜택과 건강진단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원생들을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2001년 6월 현재 전국의 선도보호시설은 23개이며, 이 가운데 6개월이상 1년까지 수용 보호하는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은 서울의 은성원과 한국여성의 집을 비롯하여 전국에 10개 시설이 있다.

<표III-14> 선도보호시설 일반현황 (2001. 6월 현재)

지역	시설별	상반기 입소자	연령별		입소경위별					종사자		입소자		비 고
			19세 미만	19세	20세 이상	보호 처분	경찰, 행정	자원 입소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서울	은성원	27	18	-	9	-	-	10	17	10	7	35	21	중장기
(8)	한국여성의집	25	9	4	12	-	10	11	4	10	6	30	19	중장기
	씨튼해바라기집	26	16	-	10	-	10	16	-	4	3	10	6	일시
	나자렛쉼자리	57	56	-	1	3	14	23	17	4	4	10	15	"
	성심어머니의집	48	12	16	20	3	1	43	1	4	3	10	15	"
	새날-청소녀쉼터	64	54	2	8	-	5	53	6	4	3	10	12	"
	우리들쉼자리	24	18	-	6	1	-	21	2	4	3	10	8	"
	평화의샘	24	12	3	9	-	14	4	6	4	3	10	8	"
부산	부산부녀복지관	66	47	11	8	14	-	45	7	14	13	70	65	중장기
(3)	구세군 신애관	40	28	3	9	-	16	10	14	11	7	50	37	중장기
	여성복지관	33	11	10	12	-	14	5	14	3	3	100	25	일시
대구	카톨릭여자기술원	26	16	2	8	-	-	26	-	12	9	50	38	중장기
(2)	수지의집**	31	26	1	4	-	2	23	6	4	3	10	3	일시
대전	대전여성직업보도원	26	10	1	15	-	-	26	-	13	7	55	34	중장기
(2)	우리청소녀쉼자리	45	32	13	-	-	5	5	35	7	3	30	22	일시
경기	모퉁이쉼터	45	36	3	6	-	2	21	22	4	4	15	13	"
강원	루치아쉼터**	13	7	-	6	-	-	1	12	4	3	12	9	"
충남	충남여성직업보도원	25	8	6	11	-	1	24	-	14	9	50	27	중장기
전남	여수사랑의집	67	54	4	9	-	29	38	-	10	4	50	35	중장기
경북	희망의샘	18	18	-	-	1	-	16	1	4	3	10	11	일시
경남	창원여성의집	17	13	3	1	-	-	8	9	8	7	20	20	중장기
(3)	젊음쉼자리	13	13	-	-	-	3	1	9	4	3	12	9	중장기
	해바라기쉼자리	216	205	-	11	-	25	190	1	4	4	14	14	일시
	계(23개시설)	976	719	82	175	22	151	620	183	160	114	673	466	

출처 : 여성부 권익기획과 자료제공

* 보호처분 : 제1-3호처분(보호관찰), 제4호처분(시설위탁)

소년심판규칙제23조에 의한 법원지정수탁기관 : 2곳(부산부녀복지관, 대구카톨릭기술원)

** 2001년 상반기 신고시설 :예산지원은 2002년부터

13개의 일시 선도보호시설은 청소년의 성매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기존의 비법인 사회복지 시설이 법인화시설로 편입된 시설들로 대부분 2001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다. 총 23개 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673명으로 전국의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현재 수용된 인원은 466명으로 정원의 7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시설의 효과적 운영문제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1년 상반기 전체 입소자 976명 가운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719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자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11개 선도보호시설에 재정 지원된 총 예산은 15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운영비가 12억 3백만원으로 77.5%에 해당하고,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구입 등 기능보강비는 3억4천9백만원으로 2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대한 재정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예산은 총 20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약 30% 증가하였으나, 재정 지원되는 시설은 총 11개 시설에서 21개 시설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5> 선도보호시설 국고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운영비	기능보강비	비 고
2000	1,552	1,203	349	11개시설지원
2001	2,015	1,652	363	21개시설지원

출처 : 여성부 권익기획과 자료제공

※ 운영비 : 인건비, 프로그램운영 등 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 시설개보수, 기자재구입

※ 2000년은 보건복지부 예산집행

선도보호시설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 전국 21개 선도보호시설에 1,411명이 입소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시설 및 입소자 수가 거의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도 1년간 퇴소자는 837명이며, 이 가운데 귀가가 66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단퇴소 등의 기타사유가 122명이며, 취업으로 인한 퇴소는 47명으로 전체 퇴소자의 5.6%에 불과하다. 특히, 가출소녀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향락산업과 지속적인 가출상황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립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III-16> 선도보호시설 입·퇴소자 관련 현황 ('99-2001. 6)

년도	시설수	입소자	연령별			입소절차별				퇴소자	퇴소사유별			
			19세 미만	19세	20세 이상	보호 처분	경찰 행정 기관	자원 입소	기타		결혼	취업	귀가	기타
1999	11개	721	418	72	231	23	96	470	132	504	3	38	280	183
2000	21개	1,411	966	136	309	18	217	903	273	837	8	47	660	122
2001 1-6월	23개	976	719	82	175	22	151	620	183	637	18	24	434	161

출처 : 여성부 권익기획과 자료제공

※ 연령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적용대상인 19세미만과 청소년을 제외한 미성년(19세), 성년(20세이상)으로 구분

※ 입소절차의 기타사유 : 타시설에서의 전원, 보호자의뢰 등

※ 퇴소사유의 기타사유 : 무단퇴소 등

<표III-17> 선도보호시설 교육 및 취업현황 ('99-2001. 6)

(단위 : 명)

연도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자	진학 교육
	소계	미용	양재	PC관련	기타			
1999	865	316	191	272	86	66	73	161
2000	751	284	141	234	92	56	62	115
2001 (1-6월)	493	183	87	160	63	27	20	125

출처 : 여성부 권익기획과 자료제공

5) 소년수탁시설

(1) 시설 현황

소년수탁시설은 현재 소년법에 따라 4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중간처우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제적 성격을 띤 시설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3차 소년법 개정되면서 위탁 처분제도는 기존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던 것을 아동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등록하여 소년보호위탁의 기능이 가능해진 것이다.

<표Ⅲ-18> 소년수탁시설 현황 (2002년 5월 현재)

시설명(정원)	지역	위탁시설 지정년도	법원	신고여부*	시설분류**
효광교호직업보도원 (150)	대전	1984년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신 고	아동복지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50)	경기도 광주	1988년	서울, 인천	미신고	소년보호시설
아들의 집	경기도 파주	1989년	서울, 인천, 수원	미신고	소년보호시설
살레시오 근로청소년 회관(80)	서울	1990년	서울, 인천	신 고	아동복지시설
심산소녀학교(12)	원주	1997년	서울, 수원	미신고	소년보호시설
로댐 청소년학교(25)	제천	1994년	서울, 청주	미신고	소년보호시설
해뜨는 청소년센터	경기도 포천	1995년	서울, 수원	미신고	소년보호시설
카톨릭여자기술원	대구	1996년	대구	미신고	소년보호시설
신양원(163)	김해	1989년	부산, 창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푸른 동산(100)	영광	1989년	광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소청원(100)	고창	1990년	전주, 광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출처 : 김지선, 2002:45와 71에서 재구성

* 신고여부: 해당시설이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시설로 신고를 하고 신고허가증을 받았는가의 여부.

**시설분류: 근거법령과 주무부처에 따라 구분됨(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보건복지부, 소년보호시설: 소년법 제32조 4항, 법원 소년부).

<표III-19>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비교 현황

구분내용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법원소년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6조	소년법 제32조 4항
관리감독	엄한 감독과 규정들	1-2회방문/1년, 시설운영의 보고서작성/1달
재정현황	- '효광원'의 사례 정부보조금(국고보조(76.9%)+지방비(11.01%)) +법원지원금(1.3%) +기관/단체 후원금(1.7%) +개인후원금(0.3%) +자체조달금(4.8%) +기타(4.0%)로 구성됨	- '나사로 청소년의 집'의 사례 법원지원금(1.2%) +기관/단체 후원금(39.1%) +개인후원금(43.5%) +기타(16.2%)로 구성됨
지출목록구성	인건비>의식주>시설운영관리 등	의식주>인건비>시설운영관리 등
규정사항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보호의 신청, 입회조치의뢰, 귀가지도, 사후지도, 시설보호기간현장, 안전기준,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소년법(조사방법, 보고, 집행상황 등) - 소년심판규칙(시설지정, 취소 등) - 소년부판사의 4호처분시설의 제한규정
처우방법규정	구체적인 처우방법 규정은 없음	구체적인 처우방법 규정은 없음
시설	대규모/비교적 좋음	소규모/비교적 낙후
직원1인당 위탁소년 비율	9.1명	3.1명
사회복지자 격증	보유직원 전체의 반절 정도	보유직원의 비율이 매우 낮음
재교육 정도	유급위주이나, 교정관련 인력이 부족함	무급위주의 전문인력비율 낮음
교육 프로그램	종교심성훈련>운동심성훈련>생활지도 및 도덕>학과교육>직업/취미활동	
자격증취득 관련	자동차정비사보>전기용접기능사보>컴퓨터워드>샤사정비기능사보>제빵기능사>제과기능사>자동차정비	
무단이탈의 문제	이탈유혹정도(위탁생>소년원생)	

법정 정족수가 있는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보호시설 간에는 차이가 크다. 아동보호시설은 시설규모가 크고 시설환경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소년보호시설은 소규모의 낙후된 시설로 가정집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시설마다 입소정원이 다르며, 재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은 90% 가까이 정부보조금과 지방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년보호시설의 경우는 법원지원금이 1.2% 있을 뿐, 80%이상이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 1인당 위탁소년의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명, 소년보호시설 3.1명으로 아동복지시설이 3배 가량 많다. 그러나 4호처분 시설은 인력구성면에서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2002년 현재 각 급 법원으로부터 4호처분 시설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개로 소년원 수와 비슷하지만 실제 수용가능한 인원수가 소년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으며, 수용대상인원도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그리고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 등 수용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수탁시설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편중성의 문제를 갖고 있어 4호처분에 적절한 소년이 있더라도 보낼 시설이 없어 대신에 6호나 7호처분을 하거나 3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시설 수 부족, 윤락행위등방지법 상의 선도보호시설로 중복지정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운영 특성

먼저, 4호처분을 받고 수탁시설에 위탁되는 소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95.9%로 4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대다수가 남자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죄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지만, 여자청소년을 위한 수탁시설의 부족과 선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가장 많은데, 특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많다. 17세 이상의 경우 4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직업별 특성에 있어서는 학생이 아니면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으로 전체 처분 중 학력이 가장 낮다.

가정환경적 특성도 고아의 비율이 높고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비율 높아 4호처분이 불우아동시설화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다른 처분에 비해 하층이 가장 많고, 가정환경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부와 모의 기능적 결손정도가 가장 높다.

수탁시설은 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별로 큰 격차가 있어 일률적인 특징 파악은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남자(40.7%)의 비율보다는 여자(59.3%)가 높고 30대 여성이 자원봉사자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주로 물품제공, 이·미용분야, 취미활동분야, 상담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견인, 결연 및 직업알선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는 미비한 수준이다. 외부교사(각 교과목 및 취미활동교사 등)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자원활용 하는 수탁시설도 있다. 협력기관과의 연대체계 형성에 있어서는 병원이나 의원 혹은 행정기관의 협조를 부분적으로 받고 있으나 활성화된 수준은 아니며,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행정절차의 융통성부족, 관련기관의 낮은 인지도와 이해도, 비정기적인 협조로 관계지속의 어려움, 정보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의 위치 면에서 살펴보면, 대다수의 수탁시설은 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곳에 위치하여 4호 처분의 의의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근접성이 매우 낮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탁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곳에 위치한 이유는 도심지의 높은 지가, 무단이탈의 문제, 영농도작 교육 등 심성순화교육을 위한 장소 등을 들 수 있다.

시설 분류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근거법령과 주무부처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보건복지부)과 소년보호시설(소년법 제32조 4항, 법원소년부)로 분류된다.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엄한 감독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은 소년법 내에 근거규정조차 없고, 법원장의 지정이후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갱생보호시설, 그룹홈,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및 소년수탁시설이 있다. 이 중 갱생보호시설과 그룹홈 및 청소년쉼터는 사회내 처우 형태로 입·퇴소를 비롯하여 생활규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선도보호시설과 소년수탁시설은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에 대한 강제적 수용 조치로 그들의 사후정착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쉼터는 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 범죄소년의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중간처우의 기능을 가진 시설은 갱생보호시설과 그룹홈이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원 가퇴원자나 출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기간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시설은 현재 여자청소년 전용시설 두 곳과 남자청소년 전용시설 한 곳을 합하여 3곳뿐이며, 이들 3개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연간 소년원에 입소하는 범죄소년이 6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퇴원하는 소년은 4천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갱생보호

시설은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남자청소년 전용 갱생보호시설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

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인 서비스의 향상도 병행되어야 한다. 갱생보호시설의 기능은 수용자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자립능력을 길러주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재정지원인데,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등 각자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여 준비시키는 데는 학원수강료, 교통비 및 잡비 등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갱생보호시설에서는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학원수강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은 학원수강료만이 배정되어 있고, 학원수강을 위한 교통비 및 잡비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산이 현실적으로 책정되고,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갱생보호시설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룹홈의 경우는 가정적인 따뜻한 분위기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룹홈은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인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년원 수용 경험이 있는 범죄소년을 위한 그룹홈의 수는 매우 적으므로, 그룹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쉼터와 선도보호시설은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 소년원 수용 경험이 있는 범죄소년에 대한 중간처우의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은 향후 일정한 체계를 갖고 운영되어야 효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소년수탁시설은 현재 4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위한 시설내 처우

로써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전액 재정지원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 설비 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소년보호시설의 경우는 법무부의 일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 인력이나 시설환경에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취약하여 6호나 7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소년과 비교할 때, 학력취득과 자격증 취득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6호나 7호처분을 받은 소년보다 경미한 죄를 범해 4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오히려 교정처우의 면에서는 낙후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4호 처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4호처분 수탁시설을 중간처우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4호처분 수탁시설 중 소년보호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을 좀더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들을 위한 중간처우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현재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중간처우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IV. 외국의 중간처우시설 유형 및 프로그램

IV

1. Halfway house의 목표
2. 미국의 halfway house
3. 호주의 사회내 처우
4. 이스라엘의 사회내 처우
5. 일본의 사회내 처우와 갱생보호시설
운영현황
6.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IV.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 유형 및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고, 중간처우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간처우시설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지역사회내 주거식 처우시설과 비주거식 처우시설 및 종합적 처우시설이 있다. 각 시설 유형별로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halfway house로 불리기도 하는 지역사회내 거주식 교정(residential community correction)은 출소자가 수감생활로부터 지역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돕거나, 지역사회내 거주 환경에서 범법자에게 감독과 구조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출소자나 범법자에게 음식과 잠자리 같은 기본적 필수품과 취업지원, 교육, 상담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재통합의 교정목표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halfway house에는 매우 다양한 처우 시설들이 존재한다.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모든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참가한 출소자에게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형기의 남은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조기출소자(prereleasee)나 가석방자(parolee)를 halfway house의 대상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환처우, 판결전 석방, 보호관찰을 받은 피고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보호관찰이 파기되었을 때 구금대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halfway house는 교정기관이 운영을 하면서 범법자만을 거주자로 수용하고, 다른 곳 특히 정신질환자, 약물 남용자, 알콜중독자 등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범법자 이외에도 사회복지 기관이 의뢰하거나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을 수용한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중간처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대상 특성별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외국의 중간처우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토대를 형성한다.

1. Halfway house의 목표

halfway house의 목표는 두 가지로 지역사회 보호와 재통합이다.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목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첫째, 수용된 범법자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준법시민의 삶을 살도록 돕게 된다. 둘째, 출소자를 도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서 이들의 재통합을 돕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halfway house는 출소자에게 음식과 잠자리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재통합의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용된 거주자들의 문제해결을 도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이들의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돕는 것은 범법자와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1) 범법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출소자에게 음식, 의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출소하는 재소자에게 돈을 주어 사회정착을 돕는다.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일해 번 돈을 저금했다가 출소할 때 받는 경우도 많다. 가석방자가 석방되기 전에 주거와 취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 계획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주거계획의

경우 가족들의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가족 구성원들과의 문제로 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석방 대기자들은 출소를 하기 위해 어떤 직업이라도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의 직장은 임금이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halfway house는 이러한 출소자들에게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잠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다.

halfway house는 범법자들이 재적응의 압력과 요구를 잘 처리하도록 정서적 지원도 제공한다. 비공식적 상담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개인적 문제에 귀기울인다. 더욱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비슷한 경험과 처지의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에 있게 된다. 보다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다 구조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에의 혜택

halfway house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 시설 거주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범법자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우면 재범이 낮아진다. 범법자들이 자립하고, 일상적인 어려움과 유혹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석방된 이후의 범죄행위가 감소한다.

3) 사법체계에의 혜택

halfway house는 위험하지 않은 범법자를 교도소에 수감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 과밀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도소에 halfway house는 합리적이고 비용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2. 미국의 halfway house

미국의 교정기관에 대한 전국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는 900개 이상의 halfway house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사설기관이지만 이들 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전국적인 수용인원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평균 수용인원은 25명이고 기관에 따른 차이가 커서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평균 거주기간은 8주에서 16주 사이로 나타난다.

1995년 현재 31,000명 이상이 halfway house에 거주하고 있다. Halfway house는 위험성이 낮은 재소자를 위해 최소의 구금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 중 구금시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을 감독하게 된다. 1995년 현재 최소 구금 시설을 짓는데 침상 하나 당 평균 \$32,000이 들고, 重구금 시설을 짓는데는 \$80,000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Carthy, McCarthy, Leone, 2001).

1) 역사

미국에서 halfway house가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1817년이다. 그 전해에 Pennsylvania교도소에서 발생했던 폭동사건을 계기로 하여 입법자들은 교도소 문제를 연구하고 개혁을 입안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의 보고내용 가운데 한가지가 출소자의 복지에 대한 우려였다. 이 때 제안된 halfway house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전염을 우려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전과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질병이 퍼져 나가듯이 그들이 범죄성을 퍼뜨릴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다. 범죄성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소자를 halfway house 안에 독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유인

이 된 출소자가 그러한 생활조건을 수용할 것 같지 않아 이 제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halfway house에 대한 반대는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미국의 출소자들에게 halfway house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845년에 Quaker교도들은 Isaac T. Hopper Home을 New York시에 설립하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Boston의 개혁적인 집단이 Massachusetts주의 여성 출소자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만들었다.

1889년에는 Philadelphia House of Industry가 만들어 졌다. 그 뒤로 Maud Booth와 그 남편이 Manhattan 지역에 출소자를 위해 Hope Hall을 설립하였다. 경찰의 반대와 반복적인 위협을 이겨내고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California, Florida, Illinois, Iowa, Louisiana, Ohio, Texas주에 설립되었다. 가석방자들은 규정상 전과자들과 교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들은 가석방 당국자들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그 이후로 반세기 동안 halfway house는 별 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구세군이나 미국 자원봉사협회가 집 없는 사람들을 돌보듯 출소자들에게 숙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였다. 천주교회에 의해 설립된 St. Leonard와 Dismas House, 그리고 시민들이 다른 시설들을 설립하면서 halfway house는 1950년대에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높은 재범율과 출소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문제들을 인식하게되면서 halfway house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1961년에 당시 법무장관이던 Kennedy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조기출소자 지도 센터의 설립 자금을 의회가 제공하였다. 실험적인 센터의 운영이 성공하면서 1965년의 연방 교도소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져 성인 범법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과 함께 halfway house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halfway house의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구금 전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반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half-in으로 전환처우, 판결전 석방, 보호관찰 대상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halfway house는 구금후 조기출소자와 가석방자들에게 상담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반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half-out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64년에 형성된 International Halfway House Association(IHHA)의 영향을 크게 받아 halfway house 프로그램은 성장하였다. IHHA는 halfway house를 설립했고, 그 운용과 관리에서 높은 기준을 개발했으며,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적인 공개 토론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 때 이후로 halfway house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최근에는 점차 복잡 다양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출소자 혹은 출소예정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2) 프로그램 사례

(1) Massachusetts주의 Prerelease Center

Massachusetts주는 출소자에게 지역사회내 거주식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이다. 1972년에 교정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사회내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개혁법에 따라 재소자는 가석방 자격을 취득하기 18개월 이전에 조기출소 시설로의 이전이 허가된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달쯤 후에 지역 병원부지의 빈 건물에 조기 출소반이 설치되었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가석방 자격 취득 8개월 전에 조기 출소 프로그램으로 옮겨졌다. 취직을 위해 이들에게 2주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수입 정도에 따라서 숙식 요금을 州에 지불했다. 재소

자는 5단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새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재소자가 얼마나 적절한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었고, 각 단계로 발전할수록 더 많은 귀휴(furlough)를 허가하여 1단계에서는 일주일에 10시간, 5단계에서는 48시간이 주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재소자들은 대부분 교도소에서 3-4년을 복역한 나이 든 범법자들이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이 구한 일은 단순하고 수입이 적기는 했지만, 직장을 얻는 데는 대체로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취업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 75번이나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취업에서 범법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Massachusetts법에 위반되지만 적지 않은 고용주들은 조기 출소된 재소자들을 고용하려 들지 않았다.

(2) Minnesota주의 PORT Programs

Minnesota주의 Probational Offenders Rehabilitation and Training(PORT) 프로그램은 Minnesota주의 Rochester에 있는 3개 군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법원이 의뢰한 남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범위는 무단결석에서 무장 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자발적이다. 참가 희망자는 PORT시설에 3주간 입주하여 평가를 받게된다. 이 기간 중에 참가 희망자와 선발 위원회는 PORT가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선발 위원회는 정신과 의사, 보호관찰관, 지역 주민, 실무 책임자, 거주자 대표와 상담집단 대표자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위원들에게 왜 PORT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것은 참가자가 PORT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키려는 의도이다.

여기에서는 집단치료와 행동조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PORT의 거주자들은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프로그램 책임자와 함께 집

단으로 만난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 진행을 통해서 집단 치료, 솔직성, 정직성, 신뢰, 배려, 현실인식에 대한 검증, 의사결정을 다룬다. PORT 훈련의 질은 이 단계 프로그램의 성공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먼저 1년간 집단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 행동조절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집단 회의가 개인의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수용할 만한 수준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일치, 신참자의 외부집단과의 교제 등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한 주간의 학교, 직장 성적, 건물 청소, 예산관리, 사회활동의 계획과 이행 등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성적을 측정하여 점수에 따라 시설 내에서 주어지는 자유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하는 점수제를 사용하였다. 신참자는 최소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1단계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내 동년배들이 누리는 자유와 같은 정도가 부여되는 5단계까지 서서히 발전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결정은 점수제와 집단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집단에게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여주고 점수 획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주자는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동년배들 수준의 자유와 책임을 획득해간다.

(3) Federal Bureau of Prisons Overview

Bureau of Prisons의 임무는 범법자들을 교도소나 사회내 시설같이 통제된 환경에 구금하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때 구금 시설은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일거리와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법자들이 준법시민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연방 재소자는 일을 해야하고, 그 대가로 작은 임금이 주어진다. 일부 재소자는 Inmate Financial Responsibility Program을 통해 수입 중 일부를 피해자 배상에 사용한다. 재소자 중 약 1/4은 사무가구에서 전선조립에 이르는 상품을 만들어 연방정부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정부기업인 Federal Prison Industries Inc.에 고용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재소자가 교도소에 더 잘 적응하고, 출소한 뒤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범죄를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재소자는 그들의 수감기간 중 마지막 몇 달은 사회내 교정 센터 혹은 halfway house에서 지내면서 출소를 준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직장을 얻어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halfway house는 Federal Bureau of Prison과의 계약 및 감독하에 사설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다.

3) 프로그램 평가

1982년에 Latessa와 Allen은 10개의 halfway house를 골라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그 이전에 시행된 halfway house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평가는 National Evaluation Program(NEP)이 시행한바 있다.

NEP는 halfway house에 대한 이전의 조사연구들을 모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977년에 발표하였다. 모두 55개의 평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조사의 방법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가운데 2/3 정도가 halfway house 거주자의 재범을 측정하였다. 거주자가 출소한 이후의 행동은 대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추적조사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둘로 나뉘어진다. Halfway house 거주자들의 재범율이 교도소 가석방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절반정도 되고,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가 절반정도 되었다.

4) 미국내 비행청소년 대상의 지역사회내 구금 대안 프로그램

미국에서 지역사회내 교정 프로그램은 성인보다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성인과 청소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결속의 정도가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쉽게 강화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남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믿음이 폭 넓게 퍼져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사용이 용이하다.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프로그램은 이후에 성인 초범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범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도 구금을 대신하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범법자는 구금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판결을 기다린다. 구금이 요구되는 범법자라도 반드시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구금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러한 대안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 구금대안 프로그램은 거주식과 비거주식이 있다.

(1) Home Detention Programs

종종 home detention으로 불리는 비거주식 프로그램은 성인대상의 공판전 석방-감독(supervised pretrial release)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청소년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소년법원 상담자가 이들을 감독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년법원의 소환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담당 상담자는 청소년, 부모, 교사, 교용주를 매일 접촉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직장에 출석하고, 통행금지를 준수하고, 자신의 소재에 대해 부모나 상담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을 받는 기간 중에 마약과 좋지 못한 사람과 장소는 피하도록 요구

된다. 추가적인 규칙은 house detention 계약서에 명문화된다.

Home detention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 프로그램은 일년에 평균 200-300명의 청소년을 사업 대상으로 삼는다. 청소년 가운데 2-13% 정도가 도주하거나 감독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체포된다. 낙오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판결이 지체되거나,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잠재력을 검사하기 위해 home detention을 사용할 때 주로 생겨난다.

San Diego County Home Supervision 프로그램은 home detention을 잘 예시해 준다. 상담자는 담당 청소년을 매일 아침, 점심, 오후, 저녁에 일주일 내내 점검한다. 사전 통보 없이 또한 정해진 일정 없이 매일 접촉한다.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은 하루에 4번까지도 접촉하게 된다. 감독사항을 위반한 청소년은 구류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처음 2년간 거의 2,500명의 소년들이 감독을 받았고, 이들 중 20% 정도가 위반을 했지만 새로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은 33명뿐이었다. The Home Supervision 프로그램에 든 비용은 청소년 구치소에서 드는 비용의 1/3 이하였다.

오늘날 유명한 home detention 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에 최초로 설립된 Missouri주의 St. Louis, Kentucky주의 Louisville, Ohio주의 Cleveland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한 감독자가 10건 정도의 적은 사례만을 다루고, 청소년과 매일 접촉을 한다는 면에서 매우 집중적이고 강도가 높다. 근무자들은 하루 24시간 위기 개입과 부모, 학교, 기타 기관들과 자주 접촉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5-10% 정도가 중도 탈락하고, 대략 그 두배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추가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2) Detention Aftercare

New York시에서 개발된 구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구금시설을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갱생지도(aftercare)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이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범죄와 추가적인 교도소 수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New York시와 소년사법체계의 비용을 모두 감소시켰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게 되어 대중의 안전이 신장되었다.

5)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식 프로그램

(1) Foster Care

Foster Care는 청소년을 대안가정에 배치하여 그 가정의 성인이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부모는 한정된 기간(짧게는 몇 일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동안 맡은 청소년을 돌본다. 체류기간은 그 청소년의 법적 지위, 가정 환경, 대리부모와 청소년의 화합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Foster care는 가정 밖의 배치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Foster care를 선택할 때 주요한 관심거리는 해당 청소년이 의존 욕구를 갖고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가이다. 부모의 권위로부터 도망치고 독립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foster care는 적절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foster home에 배치된 청소년은 개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애정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대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전과도 많지 않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foster care를 체계적으로 사용한 것은 1866년에 Massachusetts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New England주의 양부모는 청소년들을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는 대가로 청소년의 식비를 받았다. Foster care는 소년 법원의 변화와 더불어 성장했다.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문제가정의 문제청소년을 개선된 가정환경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가능하다면 청소년을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입장 때문에 foster care의 해

결책이 약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견해로 남아 있다. 청소년 보호관찰과 갱생지도 기관은 가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foster care를 사용한다. 일부 사법관할구역에서는 전환처우와 임시구급의 대안으로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foster care를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하다. 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춘 특별 foster care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정노력의 일부분이다. Foster care는 그 본래적인 혜택과 가정밖에 배치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매력적인 교정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좋은 foster home이 부족하다. 점차 많은 교정 당국자들이 청소년들을 기꺼이 foster home에 배치하려 하고,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양부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foster care는 어렵고, 큰 노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좋은 foster home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Foster home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친부모와 이전의 대리모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졌던 경험을 대개 가지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한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옮겨다니기를 종종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집으로 빨리 옮기게 되는지를 터득하게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에서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자라면서 애정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애정을 주거나 받을 능력이 없다. 이들은 새로운 양부모를 만날 때마다 새 양부모가 부적절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이들을 시험하곤 한다. 매우 성실하고 헌신된 양부모조차도 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다. Foster care에 투자하는 시간과 감정이 워낙 크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미미해서 좋은 양부모를 확보하고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양부모를 훈련시키고, 양부모에게 일에 부합하고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수양 자녀의 친부모 등 가족들이 상담에 참석하도록 하고, 수양 자녀로

갈 청소년을 선별하여 위험하고 어려운 배치를 피해야 한다. 양부모들에게도 비행 청소년들을 창고처럼 단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부모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

(2) Group Home

Group Home은 group center, 집단 거주, 집단 양부모 가정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을 위한 halfway house와 같이 group home은 지역사회 생활환경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시설에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후원한다.

The National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NAJC)는 group home과 여기에 사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group home은 11명의 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백인이다. 이 청소년들 가운데 3/4 정도가 16-18세이다.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2/3 정도는 그들 아버지의 직업으로 판단했을 때 중류 혹은 상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을 조사해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중 57%는 지위비행, 20%는 재산범죄, 7%만이 대인범죄였다. 지위 비행 가운데 많은 경우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여서 가정밖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 청소년을 group home에 할당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group home 거주자는 소년법원을 거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평균 6번 체포되었고 과거에 시설에 수용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The NAJC는 group home 운영자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목표 3가지는 대인관계의 개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개발, 청소년의 자아개념 증진이다. 이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개

의 프로그램 중 8개는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혹은 둘 다를 사용하였다. 적어도 절반 정도의 프로그램이 현실요법, 행동조절, 가족치료를 사용하였다. 교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얻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group home 모형 가운데 하나가 1962년에 개발된 teaching-family 모형이다. Kansas주의 Lawrence에 있는 the Achievement Place group home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접근법이 이제는 12개 이상의 주의 40개 이상의 group home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든 group home 프로그램에서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훈련과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① Youth Homes Inc.

North Carolina주의 Charlotte에 있는 Youth Homes Inc.는 teaching-family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 지위비행 청소년, 우범소년, 기관이 위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결혼한 부부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이들에게 배려, 감독, 교육을 제공한다. 이 부부는 청소년들의 부모, 대리모, 교사, 청소년들을 맡은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담당할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문제해결, 사교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공식적, 비공식적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더욱이 자치제와 토큰 경제를 적용하여 인생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체류하는 기간이 끝나가면서 이들은 자신의 친부모 가정이나 양부모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종결된 뒤에도 여기서 가르치던 부모역할자의

방문과 지원은 가능하다.

평가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이다. 지역사회의 전문가, 부모, group home 거주자들은 주기적으로 Group Home Inc.를 평가한다. 가르치는 부모역할자는 일년단위로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group home을 나간 뒤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를 통해서 얻게된다.

(3) 독립적인 거주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s)

청소년 교정에서 가장 지속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관에 수용될 필요도 없고, group home 배치도 필요하지 않은 나이 든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양부모의 통제를 받기에는 너무 독립적인 경우이다. 이 자주적인 미성년자들은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만 재정관리 능력이 없어서 약간의 지도와 후원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독립적인 거주 프로그램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

독립적인 거주에 배치된 청소년은 아파트, YMCA, YWCA, 혹은 다른 집단 거주지에 살게된다. 감독 기관은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동안 이들의 방 값, 식비와 기타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공한다. 독립적인 거주 프로그램은 개별화되어 있고 융통성을 갖는다. 이 청소년들이 자족을 향해 진전해 나감에 따라 그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감독을 하게된다.

Twelve Inc.는 Ohio주에서 11명의 남자 청소년을 돕고 있는 독립적인 거주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가 많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가까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참가자에게 일정관리, 식

료품 사기, 빨래하기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술과 취업, 학교 졸업, 직업훈련과정 등록 등을 돕는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운영자들의 청소년접촉은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다.

6) 미국의 청소년 갱생지도

가석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는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갱생지도의 운영과 조직에서의 변화 탓도 있겠지만 가석방된 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부재가 주요한 요인이다. 프로그램의 부재는 간단히 설명된다. 지역사회의 자원은 사회복지의 잠재성이 큰 청소년(즉 보호관찰대상자)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분되는 경향이 있고, 치료 프로그램에서 번번이 실패하여 결국 기관에 수용되었다가 지역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잊혀진 존재이다. 이 청소년들은 기껏해야 이미 업무무담이 과중한 상담가로부터 제한된 감독만을 받는다.

가석방된 청소년들은 group home과 같은 청소년을 위한 비전문화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소년을 위한 재진입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소년사범체계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성인 가석방자들이 사회로 돌아올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다 청소년의 특별한 문제들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기관수용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진다. 그러나 필요한 관심과 지원이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

청소년 갱생지도의 미래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심각하고 만성적인 범법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한 정부주도의 노력으로 청소년

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구금에서 벗어난 청소년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모형의 개발과 연구가 촉진되고 있다.

(1) Delaware County의 Intensive Supervision Aftercare Program

Ohio주의 Delaware county의 프로그램은 구금에서 풀려나 지역사회로 돌아온 심각한 범법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잘 예시해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또한 청소년 교정을 위해서 광범한 가정 서비스가 연루되어 있다. Delaware county는 1985년에 모든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중적인 갱생보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활용한다.

- 전문적으로 훈련된 가족 중재자가 가정 내에서 가족사업을 수행하는 일
- 지역사회가 감독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일
- 4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자유와 융통성
- 위반에 대한 즉각적이고 점진적인 문책
- 지역사회 기관의 집중적인 사용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사례 관리자 한명, 가족 중재자 두명, 감독자 세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첫해에 14명만을 대상으로 삼아 강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였다. 두명의 가족 중재자는 각각이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의 가정방문을 하였다. 중재자들은 청소년과 가족 대상의 사업경험과 대인관계 기술에 근거해서 선발되었다.

갱생보호를 위한 계획은 청소년이 석방되기 30일 전부터 시작된다. 수감형이 종결됨에 따라 지역의 갱생보호 프로그램은 계획을 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년법원을 통해 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많은 자료

를 받게된다. 청소년은 석방되자마자 판사, 집중적인 감독 상담자, 부모 혹은 보호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서명한다. 청소년의 진척에 따라서 청소년은 이 프로그램을 4-6개월에 걸쳐 마칠 수 있다.

(2) 심각하고 만성적인 비행청소년을 갱생지도

청소년 범법자 작은 무리가 많은 심각한 청소년 비행의 원천임과 청소년 폭력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가 심각하고, 폭력적인, 만성 청소년 범법자를 다룰 종합전략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전략 가운데 특별히 심각하고 만성적인 비행청소년을 위한 갱생지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갱생지도를 통해서 행동감독과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지역사회내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개별 및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의 집중적인 감독 등이 있다.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적인 재복귀가 용이하다. 지역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청소년은 직업훈련 학교, 캠프, 목장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기술개발, 직업 혹은 취업훈련에 초점을 맞춰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에 배치할 수 있다.

OJJDP는 위험한 청소년 가석방자들을 위해 다음의 5가지 프로그램 원리를 구체화한 집중 갱생지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1.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유와 책임을 키워가도록 준비시킨다.
2. 청소년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시킨다.
3. 건설적인 상호작용과 점진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범법자와 지역사회 지원체제 모두를 다룬다.
4. 필요한 자원과 사회의 지원을 만들어 낸다.
5.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통합되도록 감독한다.

이 모형은 몇가지 비행이론의 통합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OJJDP가 의도하는 바는 소년사법체계의 책임과 청소년의 책임을 늘리고, 청소년 교정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범죄를 줄이려는 것이다.

7) 미국의 지역사회내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의 문제와 논쟁점

(1) 치료 대 통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소년사법체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소년법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소년법원의 개입이 치료 혹은 통제 중 어느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소년법원은 소홀한 부모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숙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부는 소년사법체계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비판가들은 심각한 범법자를 다룰 때 지역사회의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소년법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루어야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 지위를 면하고 성인법원에 세우는 경우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소년법원에 보내지는 청소년들이 말을 듣지 않는 무단결석자에서부터 만성적인 심각한 범법자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정도의 치료와 통제가 필요하다. 소년법원의 치료적 사명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지위비행에 대해 수감과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법원의 진정한 목적에 의구심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적인 폭력범

혹은 재산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를 또한 주장할 것이다.

치료 대 통제에 대한 논의는 논의자들의 이념적 입장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논의에 대한 혼란은 문제의 유형과 소년사법체계의 개입이 갖는 적합한 일반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청소년 교정의 탈시설화

비록 적절한 소년사법체계의 역할에 대한 합의는 부족하지만 소년 교정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활동은 많이 있어왔다. 1970년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탈시설화의 시도였다. 탈시설화의 주창자들은 심각한 범법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법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도소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대 초반에 Massachusetts주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주의 청소년 부서 책임자였던 Jerome Miller는 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요원을 훈련시켜서 기존의 소년원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존의 소년원을 폐쇄하고, 원생들을 새롭게 개발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에 할당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역사회 내 체제로 바꾸는 일은 어려웠다. Massachusetts주의 개혁이 시작되고 처음 몇 년 동안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청소년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다. 이런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판결전의 범법자를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감시설에 보내졌고, 이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범법자들을 위해서 단계별 제재와 구금 이외의 대안적 처벌을 만드는 것은 성인들의 경우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계약에 의해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설기관

들을 이용해서 탈시설화를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상적으로는 이 사설기관들이 청소년 범법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州의 관료제보다 더 창의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사설기관들은 행정사무의 요구사항과 관료적 형식주의를 회피함으로써 필요한 새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과성이 입증되기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州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설 기관들은 대상 지역을 확장하기도 하고, 그들의 조직을 중앙집권화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긴 작은 관료제들은 그들만의 형식주의를 만들어내고 지역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할 수 있다. 사설기관들이 한 주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작은 프로그램들을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주 청소년기관들은 많은 소형 프로젝트들을 감독하고 평가할 인원이나 전문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효과적인 감독 없이는 프로그램의 품질관리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수감된 인원을 석방시키려면 각 주가 탈시설화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지역사회, 입법가, 경찰, 소년사범 당국자들을 설득시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년원에서 원생들을 풀어내거나 앞으로의 기관수감을 제한할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적절한 수감의 대안이 무엇인지 밝히고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절차, 대안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들을 실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다. 불행히도 많은 주들이 범죄통제와 지역사회 보호를 요구하는 일반대중에 밀려 높은 수감율을 유지하게 된다.

탈시설화의 노력은 심각한 범법자들을 위해서 비좁은 수감공간을 예비해 두는 최선의 전략이기도 하다. 너무도 많은 주들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다. 집합적인 구금으로 인

해 생긴 수감공간 부족때문에 혜택을 받는 쪽은 만성적인 범법자들인 경우가 많다.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당시에는 구금과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에 the National Evaluation Program(NEP)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정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내 프로그램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낸 바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세밀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시설 수용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국 NEP는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려면 지역사회 내 자원과 의미 있는 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 호주의 사회내 처우

1) 청소년을 위한 사회내 처우의 발전 배경

지난 15~20년 사이, 호주의 빅토리아지방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역체계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비시설화경향, 즉 지역사회교정방식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이다. 감금시설 내의 복지측면의 부정적 요인, 예를 들어 시설수용인원초과 및 비용의 문제 등도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입이 바로 지역사회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이다. 1970~1975년 사이 6개의 Youth Welfare Services(現 Youth Supervision Units)가 멜본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이

는 지역사회처우의 초석이 되었다.

호주의 비정부기구 인 **Youth Supervision Units**은 1975~80년, Grassmere(멜본지역 교외, Doveton)라는 이름의 첫번째 비정부기관 youth hostel을 시작하였다. 1980~1981년, 월급과 국가보조금을 받는 비정부기구 gazettal를 포함해 Youth Supervision Units이 설립되었고, Baltara, Turana, Winlaton과 같은 대도시의 시설 대신 소속지역의 후원/감독 개념이 강화되었다. 멜본에서 중앙 시설의 가족에 대한 긴장, 교화의 가능성 감소 등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혹은 정서적으로 모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Youth Supervision Units은 지역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많은 곤경에 빠진 젊은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Murphy & Lawrie, 1990) ..

그 후 **Barwon Association for Youth Support and Accomodation (BAYSA)**가 활약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시설 감금보다는 지역사회대안(후원, 수용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기관 내의 청소년들의 인성발달, 교육, 고용기회, 지역책임감, 오락기술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긴급상황을 포함해 단기, 장기 수용시설 제공을 청소년의 능력으로 지불가능한 범위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청소년의 욕구 평가와 새 복역모델발전 가능성 모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으며, 청소년권리 증진과 좀더 안전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후원 서비스를 위한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BAYSA의 성립과 함께 1981년~1990년에는 **Barwon Youth Support Unit**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텝 4명으로 시작해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복지사가 지역후원프로그램을 실시했고, Youth Support Unit와 협력해서 다른 3개의 프로그램,

the Youth Accommodation and Supervision Scheme(YASS), the Health Access Program(HAP), Youth Attendance Order Program(YAO) 등도 시작되었다. 청소년 수용 및 거주 프로그램은 주택 건설부에 소속되었고, 기타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다.

Barwon지역 내에서는 청소년범죄자 복역에 관한 서비스 및 어린이 법정 자문 서비스 등도 실시되었다. 구성은 보호관찰, 가석방 조정관, 법원절차를 훈련받은 명예보호관찰관 등이고, 이들은 복역서비스와 명부 관리 책임이 있다. 법원절차에 관한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들과 다른 사무변호사 사이를 연결해 준다. 부모와 청소년에게 법원에서의 일, 수반절차(보호관찰, 가석방)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모든 결과는 기록되어 조정관에 의해 관련 법기관(CSV: Community Services Victoria) 지역사무소로 보내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수록된다. 보호관찰, 가석방 조정관은 할당된 모든 보호관찰 명령과 Barwon Youth Support Unit에서 행해지는 모든 감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프로그램 사례

(1) Youth Training Centre System³⁾

① 개요

호주 빅토리아 내의 지역사회교정 청소년센터는 총 4 곳이 운영 중이며, 대상 나이는 15~21세의 남녀 청소년이다. ①Turana : 15~17세 남자 청소년(훈련센터), 15~17세 남자 청소년(구류센터), 17~21세

3) 이 프로그램은 Vaughan Duggan(1990) "Youth Training Centres in Victoria(1990)" in : Keeping People Out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에서 발췌·번역 하였다.

남자 청소년(분류센터), ②Winlaton : 15~17세 여자 청소년(훈련센터), 15~17세 여자 청소년(구류센터), 17~21세 여자 청소년(훈련센터), 10~17세(보호구류센터), ③Malmsbury : 17~21세 남자 청소년 훈련센터, ④Langi Kal Kal : 17~21세 남자 청소년 훈련센터이다. 15~17세 훈련센터는 어린이법정선고를 받은 청소년, 17~21세 훈련센터는 감옥의 대안으로 어른법정선고를 받은 청소년이다. 후자의 경우 이중코스 체계로 빅토리아만의 독특한 체계이다. 기본적으로 범죄청소년은 성인 법정보다는 어린이법정처분을 받게 된다. 17~21세 남자 청소년은 다른 시설보다는 Turana로 우선 분류된 후, 17세 이후에는 다른 시설로 이전된다.

원생들의 특징은 36%가 알콜상태에서 범죄, 40~50%가 알콜을 비롯한 약물을 얻기 위한 범죄, 50%가 범죄 당시 실업상태이다. 75%가 가족의 죽음, 격리, 이혼, 재혼 등을 경험, 75%가 교육년수 9년 이하, 40%가 8년 이하가 선고된 이들이다.

범죄청소년들은 Youth Training Centre에 의도적으로 일정기간 감금된다. 청소년들이 역기능에 대처하고, 사회와의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상적인 보호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감성적 발달과 사회복귀를 경험한다. 감금된 청소년들의 생활기회, 환경, 기술을 증진시키며, 복지, 청소년 재판, 교정체계로의 진입을 최소화한다. 가족을 포함한 사회 재통합에 청소년들의 기회를 최대화한다.

② 전략 및 프로그램

Youth Training Centre의 전략은 자아개념과 원생들의 자존감 향상, 퇴원 이후 생활에 대처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원생들의 외부환경 및 그에 대한 책임감의 변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남용을 감소시킨다. 자아개념과 자존감 발달은 Youth Training Centre의 중점 작업이며, 출소 이후 복귀에 적절히 대처하고, 약물 중독을 최소

화하며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인간관계, 여가시간, 고용에서 보다 성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Youth Training Centre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outward bound(암벽등반, 캠프, 트래킹 등 도전 활동), 인간관계활동(건강접근프로그램, 행동, 인성발달 프로그램 등), 집단카운셀링, 일시외출 프로그램참가(가족방문 이후 정시 귀가 등), 다양한 활동 참여(스포츠, 농장, 레저, 직업과 기술교육 등). 참고로 가장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은 향해 프로그램이었다. 적절한 외부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따라서 모든 원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의 접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성발달 프로그램도 중시 다루는 분야로 문제해결능력, 성역할, 의사소통, 자기주장훈련, 가치분류, 화/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

③ 퇴원 후 생활대처능력

청소년가석방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관련 사법기관인 Community Services Victoria는 원생들의 석방, 가석방보다는 '고용획득'에 우선권을 갖는다. 고용이 지닌 의미는 크기 때문에 모든 원생들에게 직업교육계획이 실시된다. 할당된 청소년 사무관과 직업접근 스텝이 함께 직업교육계획을 실시한다. 계획의 이상적인 방향은 퇴원 이후 바로 고용되는 것, 따라서 각종 직업훈련증명서, 주류교육, 경력계획, 직업석방 등을 이용한다. 교육부와 상호부서위원회(IDC), Community Services Victoria 모두가 교육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 판에 박힌 상업, 직업훈련, 교정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흥미있는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재범을 기회와 사법제도로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얻는 기회에 접근하도록 한다.

고용접근프로그램(EAP)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에 반해 EAP 기획자들은 원생들과 가석방 사무관과 연결한다. 원생들은 자리나 지키는 단순업무보다는 높은 질의 고용기회를 원한다. 고용성공

은 자존감과 법적자유로 이어지는데, 이는 고용은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Youth Training Centre 선고 이전의 삶과 분리된 원생들이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Youth Training Centre의 사무관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반면, 숙련된 고용전문가들은 후원, 네트워크, 교화 등 원생, 사무관들, 가석방사무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만남은 각각에게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켜준다. 이 전문가들은 고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건강, 숙박시설, 교육 등도 담당한다.

Youth Training Centre체계 내에 사법기관인 Community Services Victoria의 다른 초점은 건강문제이다. 약물중독, HIV감염, 성, 정신장애 등 모든 건강 관련 문제들은 원생들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강문제는 복잡성, 비용, 교묘함, 범위 등의 문제 때문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Community Services Victoria의 현재 건강관련활동은 다음과 같다: 모든 Youth Training Centre에서의 건강계획발전은 분석과 회계감사에 기초하고, 건강관련 사항은 빅토리아의 교정건강위원회 사무소에 따른다. Victoria Drug Research and Rehabilitation Fund의 기금을 받고 그 기관에서 주관한다. 건강관련서비스와 방향은 늘 향상시킨다. 건강문제는 청소년들이 범죄적인 삶을 살는지, 그 궤도를 꺾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들은 상대적인 긴 감금기간(6~12개월) 동안 건강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면, 성문제의 경우 피임법, 육아, 성폭력, 감염제한, 약물남용 등이다.

④ 원생의 환경 변화

환경변화는 개인의 행동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개인의 환경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복귀프로그램, 직업코스를 받은 원생이 다시 역기능적인 가족, 혹은 약물관련 법률위반친구들로 둘러

싸인 환경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 점은 출소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Youth Training Centre를 나와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일은 매우 많다. 15~17세의 경우 감옥보다는 Youth Training Centre로 우선 보내지지만, 만약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17~21세가 될 경우 3단계를 거쳐 감옥으로 가게 된다. 반면, 가석방사무관이 가석방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후원을 사용한다해도, 더 많은 원생의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석방과 Youth Training Centre는 좀더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수용 원생들이 돌아갈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자원(고용, 가족계획, 카운셀링, 숙박시설 등)에 친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시외출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 원생들은 각각 주말외출, 직업석방, 건강외출, 특별외출 등을 외출마다 계획과 모니터를 통해 실시한다. 사무관은 외출과 원생들의 외출보고를 정확히 체크한다. 외출은 원생들에게 과거에 긴장을 일으켰던 가족과 지역관계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경우에도 외출에 약물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 특정 친구들과 만나거나, 범죄희생자와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들을 꼭 함께 해야 한다. 외출프로그램은 원생들이 돌아가야 할 지역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시는 감금의 경험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⑤ YTC 인력

원생이 다시 사법체제로 재진입하는가에 대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스텝들’이다. 최근 모든 관련 연구와 현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이다. 재범율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보장은 바로 직원이다. 직접적인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은 원생들의 많은 시간 동안 부모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직원이 경험이 많고, 봉사적이고, 지식이 풍부하고, 이해심이 깊고, 헌신적이라면, 많은 목적

들이 실현되고 전략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인력의 문제는 일선 관리/감독, 모든 수준에서의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신입사원 충원방식은 훌륭한 인력 충원의 기회가 된다. 많은 인력의 풀 중에서 보다 정확한 선택, 분명한 정책과 실행 매뉴얼, 제재를 제외한 인력과 원생에 대한 훈육수준, 팀 작업과 사기, 안전·보호·직업건강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빅토리아 지역내의 지역사회교정 청소년센터(Youth Training Centre)의 방향은 올바른 것이지만, 재범률을 줄이는데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청소년 범죄행동과 그 결과 발생하는 많은 부수적인 일들(기소, 법원판결, 가해자반응, 희생자, 인력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인간적인 복역기간을 위해 경비원, 취조 등 공적 시설의 책임감 증가하고 있다. 공적 섹터의 예산 삭감도 중요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 증가(월급, 실행, 보조금)의 문제도 있다. 또한 노후 된 시설의 문제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The Uncle Project : the mentoring system⁴⁾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아버지 없는 소년들을 위한 결연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으로 '삼촌(uncle)', 후견인(mentor)같은 책임감있는 성인남성모델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버지 없는 소년들의 정서적 필요와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성인 남성의 만남으로 대상은 청소년 범죄, 약물중독 청소년(4세~15

4) 본 프로그램은 Light, M.(Co-ordinator, the Uncle Project)이 발표한 자료 "The Uncle Project : A Community Based Support Program For Young Boys", in : The Conference Crime in Rural Australia convened jointly by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Rural Development Center, University of New England, held in Armidale (1 March 1999)에서 발췌·번역하였다.

세)이며,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①청소년들을 정서적,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②청소년기 동안 삶을 안내하고 후원하고, ③장기적인 과제를 수행할 의지를 가진 훌륭한 남성들의 자발적, 지역적 특수 네트워크 형성, ④형사제도, 범죄행위와 같은 생활양식으로부터 보호, ⑤책임감있고, 관심을 가진 지역사회 내의 성인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프로그램의 과정은 엄마들의 신청 → 성인남성들과 만남, 할당 → 그들 중에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가족들에게 선택할 기회 부여함으로써 가족의 책임감을 고취하도록 하는데, 즉 최후 결정은 소년가족이 하게된다.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이 기간동안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1:1에 기초해 후원하는 후견인 관계로 성인남성으로 하여금 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정서적 성숙을 갖도록 한다. Uncle로 참가한 성인남성 참가자는 일체의 보수와 사례금을 받지 않으며, 코디네이터나 행정조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받기도 한다. 중요한 원리는 책임감있는 성인남성에 의해 소년들의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소년들의 나이에 따라 교육, 직업, 건강, 개인·관계의 문제 등에 조력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는 범죄행위와 연관되는 또 다른 요인이며, 학업발달에 무능력한 아이는 학교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은 가족기능장애, 가정폭력 및 학대, 부모와의 헤어짐으로 이어진다고 보아 '삼촌'이라는 인물과의 감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참가한 성인남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교육부분은 감정발달, 분노대처방법, 성취욕구조절, 남성사회화, 보호의무와 책임 등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모임은 정기적인 집단보고회, 동료평가, 훈련, 관련이슈교육, 정보교류, 활동계획 등이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남성배제적인 데에 비해 남성참여적이며,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모델링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Queensland's Halfway House Program⁵⁾

과거의 halfway house가 aftercare적인 의미였다면, 현재는 교도소 수용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써 Community corrections Boards(이전에 가석방위원회로 알려진)에 의해 복역하는 수감자들의 주택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중간처우시설은 선택프로그램, 지역사회 수감명령, 구류처분으로 전환전의 가장 낮은 단계이며, 재범율의 잠재적 예방, 교정업무에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으로 비용 효율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퀸스랜드의 "the Queens Corrective services Commission"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관리능력이 입증된 성인과 지난 12개월 동안 내부적 제재를 받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활동, 주택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hostel에서 교도소로부터 커뮤니티 생활로 전환되는 것에 지원, 법정 감옥기간 대신 대안적인 판결의 선택사항 제공 및 취사, 청소, 생계, 관련된 코스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교도소 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측면과 교정업무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측면이 발전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5) 이 프로그램은 Clive Begg(1990) "The Halfway House - A Program for Currently Serving Prisoners" in : Keeping People Out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에서 발췌·번역하였다.

4. 이스라엘의 사회내 처우

1) Israel의 Community Hostels

청소년 범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community hostel이 사용되고 있다. Community hostel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법적인 구속으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주식 배치로 지역사회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교정분야 전문가들은 소규모의 치료적 성격을 갖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community hostel이 발전해오고 있다. Hostel이라는 용어는 Halfway house, Group Home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주민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과 청소년 사회복귀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이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규범적인 영역에서 자리를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 Brosh 프로그램

1981년 9월에 처음으로 community hostel인 Brosh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인구 5만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4개의 community hostel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 범법자들을 사회복귀시키는 것이다. Brosh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방위군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 이후로는 직장을 찾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Wozner and Arad-Davidson, 1994).

(1) 시설

Brosh는 4층 짜리 주거용 건물에 위치해 있다. 3개 층에 아파트가 6채가 있고, 이중 2채에는 식당, 부엌, 거실이 있고, 1채에는 사무실이

있고, 거주자들은 나머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거주자는 사용하는 방의 안전과 청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곳의 분위기는 기관보다는 가정에 더 가깝다.

Brosh에는 5개의 전임자리에 1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책임자, 사회사업가, 기숙사 사감, 요리사, 청소원, 회계, 4명의 사례담당자, 사후 점검원). 3.2명의 거주자 당 전임자 1명인 셈이다. 많은 수의 직원이 시간제로 근무한다. 모든 직원은 거주자들과 긴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된다. 예를 들면, 회계는 자신의 정규임무 이외에 재정 상담가로 거주자들을 돕게된다.

(2) 대상자

경찰에 체포된 뒤 청소년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소년들은 Youth Protection Authority(YPA)에 의해 Brosh에 위탁된다. 위탁된 소년들의 연령범위는 14.5-16.5세로 정신장애나 정서장애가 없어야 수용된다. 보호관찰소와 책임자 사이의 사전 논의가 있는 뒤에 책임자, 사회사업가, 상담가로 구성된 Reception Committee가 후보자를 면접하게된다. 소년은 3달까지 시험적으로 수용된다. 시험기간이 지나면 책임자, 거주자, 사회 사업가, 지역 YPA 책임자와 소년의 부모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된다. Brosh는 거주자 1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들은 군입대 소집일이 가까워지면 대부분 이곳을 떠나게 된다.

Brosh가 설립된 이래 모두 68명의 소년이 이곳에 위탁되어 이중 10명의 후보자는 면접에서 거부되었다. 거부된 이유를 보면, 5명은 너무 어려서, 2명은 지진아, 2명은 반복적인 자살 기도자, 1명은 무연고자였다. 11명의 소년은 시험기간 중에 거부되었고, 시험기간이 끝난 뒤 4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수용된 43명은 1년에서 3년까지 체류하였다.

(3) 프로그램 일정

이곳에서의 일상은 매일 아침 6시 기상으로 시작하여 아침식사 후에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게 된다. 오후 프로그램에는 휴식시간, 독서 혹은 수학보충, 컴퓨터 학습과 최근 유행인 당구가 포함된다. 오후 7시에 저녁식사를 하며, 식사 메뉴는 거주자, 사감 등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 토론을 통해서 정한다. 부엌은 간식을 위해서 항상 개방되어 있다. 거주자들은 저녁시간에 혼자 혹은 사례 담당자와 함께 영화, 식당 등으로 외출할 수 있다.

매주 열리는 Reward Ceremony에서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소년과 가족들 사이의 연결을 권장한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말에 가정방문의 기회를 박탈한다.

(4) 치료 공동체

Brosh는 치료적 공동체로 모든 직원이 자신이 맡은 일 외에 개입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개입은 대화, 역할놀이, 타협과 문제해결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곳 삶의 긴밀성과 집중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직원과 거주자는 긴밀하게 접촉할 기회가 많다. Brosh의 목표는 이곳 거주자들이 자신의 준거집단을 비행집단에서 통상적인 집단으로 바꾸고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원과 다른 거주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정상적인 관계를 학습하고 발전시키며 유지하는 기회를 갖게된다.

이곳에서의 개입전략은 보상과 처벌의 방식을 사용한다. 보상은 바람직한 행동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처벌은 벌금이나 질책을 사용하고, 간간이 매우 엄하게 질책하기도 한다.

치료과정의 정점은 매주 열리는 Reward Ceremony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치료적인 충돌이다. 이 충돌을 통해서

거주자나 직원이나 모두 감정을 표현하고 차차 이것을 극복하게 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사용된다.

Reward Ceremony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진지한, 경우에 따라서는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의식을 주재하는 책임자는 거주자의 일주일간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참석자 모두와 공유한다. 거주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공개 토론을 더 선호한다. 이들은 공개토론을 하면 사실왜곡을 피하고 오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곧 배우게 된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공평한 조건으로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충안에 도달하기도 한다.

개입의 노력은 대부분 집단활동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각 거주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 개별적인 관심은 특히 거주자의 능력과 취업배치에서의 개인의 희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집단적으로 열리는 Reward ceremony에서는 각 소년 특유의 필요와 능력에 초점 맞추게된다. 개별학습을 통해서도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최근에 개발된 컴퓨터 학업과정을 사용해서 모든 거주자는 자기만의 진도로 읽기, 쓰기, 셈하기와 더불어 컴퓨터 사용기술을 익히게된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개인교습을 받았었다.

(5) 지역사회와의 관계

Brosh의 거주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게 되어 지역사회와 강한 연결을 경험하게 된다. 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의 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긍정적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일 수도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면은 긍정적이지만, 알고 지내던 비행청소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면은 부정적이다.

Brosh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교용주와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오고 있어서 이들과의 접촉이 거주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곳을 거쳐간 졸업생 가운데 63%가 취업이 되었고,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가 14%로 나타나서 Brosh에서 경험한 일과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졸업생들의 군복무를 살펴보면 이들의 사회적응이 이스라엘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5% 정도가 징병유예를 받았고, 16%는 면제를 받았으며, 21%는 징병되었다가 면제를 받았고, 5%정도는 의병 제대를 하였다. 군복무를 한 청년들 중 일부도 군에서 성취도가 낮은 특수 범주에 속해있어서 이스라엘에서 특히 강조되는 군 지위가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Community hostel은 거주자의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거주자와 그의 가족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관계유지가 용이한 편이다. 소년이 가족을 방문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족이 hostel로 소년을 찾아오기도 한다. 직원들도 소년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가족들이 거주자들에게 건설적인 근원이 되는 경향도 있지만, 거절과 좌절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Brosh의 직원들은 거주자의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고, 거주자들이 가족들과의 해롭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6) Brosh에서의 범위반과 대응

Brosh의 거주자 중에는 이곳에 사는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버릇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듯이 범죄도 이들의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거주자는 개별적인 기초위에서 다루게 된다. 범죄에 대해 일련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행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도 하고, 짧은 기간 기관에 수용하기도 하고, hostel에서 쫓아내기도 한다. 가끔은 거주자의 가족을 초대해서 개입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고용주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

3) 프로그램 평가

Community hostel은 거주자가 규범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노력이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과학적인 경험적 자료분석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일본의 사회내 처우와 갱생보호시설 운영현황

1)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제도의 역사

일본의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는 봉건영주가 빈곤자와 범법자를 위해 설립한 복지서비스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은 가족유대, 가장의 통제와 보호가 매우 강했다. 당시에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되면 방황생활과 범죄자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출소한 범죄자가 가족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있었다. 초범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있었지만, 만성적인 범법자들은 종종 가족들로부터 거부되었다.

1880년대에 출소한 한 범죄자가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메이젠 긴바라는 1888년에 시즈오카에서 돌아갈 곳이 없는 출소한 범법자들에게 숙박과 직장을 제공하고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사설 갱생보호시설 halfway house⁶⁾를 설립했다. 메이젠의 노력에 자극을 받아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hostel을 설립하게 되었다. 초기 설립자들

6) 일본에서는 Halfway house가 Rehabilitation Aid Hostel로 불린다

중에는 기독교와 불교 성직자들, 교도소 목사였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인도주의적 관심이 강했던 교도관, 지역 정치인, 사업가 등이 이 일에 앞장섰다.

1880년대의 형법은 형의 만기 이전에 조건부 석방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초기 hostel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만기출소한 범법자를 돕는 일에 국한되었다. 당시에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1912년과 1914년에 황실에 의한 대 사면이 있었다. 이 사면으로 36,731명의 범법자가 갑자기 석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민영부문으로 하여금 갇혀있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권하였다. 초기 프로그램은 출소한 범법자들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상담과 다른 지원 서비스도 제공했다.

기소유예 제도의 사용증가와 더불어 1905년에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halfway house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halfway house 운동이 활발해졌다. 1915년에는 세계 제1차 대전 때문에 보조금지급이 중단되었지만 미쓰시가 설립한 재단이 이 기간 중에 재정적 공백을 메웠다.

1900년에 26개의 hostel이 설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700개 이상의 보호단체가 운영되다가 패전이후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50년대에 171개의 갇혀있는 시설이 존재하였고, 2002년 현재 99개 갇혀있는 시설이 101개의 갇혀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太田達也, 2002).

일본에서 halfway house 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그 이후로 100여개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설의 총 수용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로 2,200여명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설에의 일일 평균 거주자수는 1971년 이후로 30여년간 1,400-1,500여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의 사용율은 1970년대 초반에 45%로 가장 낮았고, 그 이후로 약간의 등락을 경험하다가 1980년대 후반이후로 서서히 증가하여 2002년 현재 70%선

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갱생보호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석방된 사람들 중에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처럼 이들을 인수해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 갱생보호의 대상

일본에서 갱생보호는 개인적인 장애를 가진 만성적인 범법자의 필요와 관련이 있다. 나이 든 누범자가 석방되면 가족들이 피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경우에는 hostel에서 기숙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다.

일본에서 갱생보호는 좁은 의미로 갱생긴급보호를 의미한다. Halfway house의 대상이기도 한 갱생긴급보호 대상자는 1949년의 범죄자 예방갱생법 이후로 기존의 형집행 종료자, 형집행 면제자,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있는 자, 형집행 유예가 확정된 자 중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자, 기소 유예자, 부녀자 보도처분 종료자들이었다. 여기에다 2002년에 범죄자 예방갱생법이 개정되면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자, 노역장 출장자 혹은 가출장자, 소년원 퇴원자 혹은 가퇴원자 중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자가 추가되었다.

(3) 갱생보호시설 개요

1970년대까지 꾸준히 갱생보호 시설의 수가 줄어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1994년의 갱생보호시설 정비비 보조금 제도와 1996년의 갱생보호사업법 시행에 따라 보호법인이 세제상의 우대를 받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게 되면서 재정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1999년 통계를 보면, 갱생보호시설의 경상수입 구성이 정부보조금인 위탁금이 77%, 기부금 7%, 기타 보조금 5% 등으로 나타난다(更生保護法人 日本更生保護協會, 2001).

일본 hostel의 시설 규모는 작아서 70% 정도가 11-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hostel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1개의 시설 가운데 성인과 청소년 혼합시설이 74개이고, 성인전용시설이 22개, 청소년 전용시설이 5개이다. 청소년과 성인을 함께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78년에 만들어진 “장기형 가출옥자 중간처우 등 실시요령”에 따라서 1979년부터 재소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석방 이후 1개월간 갱생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훈련, 취업지도와 원조, 거주지와의 연락조정을 하고 있다. 현재 장기형 가출옥자의 90% 이상이 중간처우를 받고 있다. 2002년 현재 65개의 갱생보호시설이 중간처우시설로 지정되어 있다.(太田達也, 2002)

2000년 4월 현재 일본 갱생보호시설의 직원 총수는 526명이고, 이중 사무원과 조리사를 제외하고 주간, 보도주임, 보도원을 합한 보도직원수는 384명이다. 이것은 보호시설 1곳 당 평균 3-4명 정도의 직원만이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보도직원의 일이 많고 이들이 처우에 노력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나타낸다. 직원을 추가로 증원해야 할 형편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낮은 임금, 힘든 일 때문에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의 보도직원 대부분은 전직 교정직원, 보호관찰관, 교사인 사람이 많고 나이도 평균이 60세를 넘는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긴 근무시간에 비해 낮은 편이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곳이라 젊고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된 직원은 찾기 어렵다.

(4) 갱생보호에 대한 평가

Hostel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면, 체류기간, 저축액, 연령 등이 재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tel에 한달 미만으로 머물렀던 사람들 가운데 81%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8-9개월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 41%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과 재범사이의 관계는 전과 8범 이상의 범죄자 사이에서도 관찰되었다. Hostel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해 hostel 운영자와 상호 협의한 거주자는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더 잘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1986).

2) 소년 처우의 목적

소년원 재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 보호 하에 귀가조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경우라도 귀가조치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갱생보호시설로의 입소를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에게로 귀가조치 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갱생보호시설의 지위설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비행이 진행되지 않은 소년만을 선택해 보호한다면, 다수의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영면에서는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 본래 갱생보호시설로 수용될 필요가 있는 소년은 비행이 진행된 소년들이다. 즉 처우의 목적을 어디까지 설정하는가에 의해서 수용될 대상자도 필연적으로 변하게 된다.

더욱이 갱생보호시설의 목적은 단순히 갱생보호시설 내에서의 처우에만 국한하지 않고, 갱생보호시설의 처우를 보호관찰 중 어디에 위치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처우가 지역에서의 처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3) 소년 처우의 기본방향

소년의 처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한편 기간이 길어지면, 소년이 자립심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단순히 보호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년의 자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자립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행의 질적 변화와 함께 지도내용도 변화해야 한다. 생활원조를 실시한다면, 재비행에 빠지지 않게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히 의식주 원조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소년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과 아동자립지원시설, 양호시설에 입소했던 경험이 있는 소년은 성인 앞에서는 겉치레를 하는 경향이 있다. 소년들의 이러한 경향을 나쁜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소년들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때, 본래의 처우가 가능하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어렵다고 하지만, 소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약물대상자, 폭력단 관계자 등의 처우도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처우의 어려움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갱생보호시설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탁보호의 대상자이고 실제 보호관찰대상자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원래에는 이러한 종류의 시설은 임의보호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시설의 재정적 사정과 국가의 정책적인 상황으로부터 국가의 위탁을 받은 보호관찰을 행하는 처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전단계로서 거주 보호관찰 내지는 중간처우적 색채가 강하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고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면성을 볼 수 있다(守山正, 2001:30).

(1) 유권적 접근

보호관찰의 내용에서는 ‘지도감’으로 표현된다. 범죄자예방갱생법 및 일부 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에서는, ①본인과 적당하게 접촉을 가지고 있는 행동과 상황을 지켜보는 일, ②본인에 대한 일반 준수사항을 준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당한 지시를 주는 일, ③기타 본인이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를 얻는 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의 강제조치이고 보호관찰이 집행되는 때에 대상자가 범죄·비행 등의 불량한 행위를 행하는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접근이다. 즉 소년은 끝까지 ‘범죄·비행’을 행하는 재범가능성이 있는 자이고 감시의 대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갱생보호시설의 처우는 단순히 처우자와 피처우자인 양자관계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도 관계하는 삼자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2) 복지적 접근

보호관찰의 또 한가지 측면은 ‘보도원조’이다. 범죄자예방갱생법은, ①교양훈련의 수단을 돕는 것, ②의료 및 양호를 얻도록 돕는 것, ③숙소를 얻도록 돕는 것, ④직업을 보도하고 취직을 돕는 것, ⑤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정하는 것, ⑥갱생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귀가조치를 돕는 것, ⑦기타 본인의 갱생을 완성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같은 법에는 ‘응급의 구호’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대상자의 본래적인 자조의 책임을 확인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조하는 복지적인 접근이다. 여기서는 처우자와 피처우자는 양자관계를 구축한다.

유권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은 때로 모순대립한다. 즉, 소년은 통상의 소년과는 다른 비행소년이고, 또한 소년은 비행소년이기 전에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다. 여기에 갱생보호의 어려운 과제가 있다. 전자는 사회본위이고 내용적으로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요청이 간접적으

로 개입하고 있다. 후자는 개인본위이고 대상소년의 입장에 착목하는 그 사회복귀를 생각하면 좋은 일이다. 따라서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는 이 양자를 어떻게 균형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3) 대상소년의 인권

소년시설의 재회자는 소년이지만 책임주체이고 또한 자립주체인 그 인권에 대한 배려는 본질적으로 성인의 그것과 동질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의 건전육성’ 개념은 국친사상(國親思想)을 기반으로 소년에 대한 개입행위를 용인한다. 또한 갱생보호시설에서 행해지는 처우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강제조치로써의 법집행의 일면이 있다. 이것에는 당연한 준수사항이 수반되고 대상자에게는 그 준수가 의무지워져 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입행위가 허락될 것인가, 또한 허락되어서는 안되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곤란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소년개정법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보호수속의 측면에서도 소년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므로 갱생보호시설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을 위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라 해도 인권침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것에 대응해서 대상소년의 고통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정비 등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4) 갱생보호시설 현황 및 소년보호 현황

2001년 7월 13일 현재, 전국에 99개의 갱생보호법인과 101개의 갱생보호시설이 있다. 이 중에 남자시설 91개, 여자시설 7개, 남녀혼합시설 3개이다. 전국 갱생보호시설 총 수용정원은 2,268명이고, 남자성인은 1,802명, 남자청소년 318명, 여자성인은 98명, 여자청소년은 50명이

다(小林淳雄, 2002:85).

연령구분은 성인과 청소년의 혼합시설이 74시설, 나머지 중에 22시설이 성인시설, 청소년시설은 5개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 전용 갱생보호시설은 敬和園, 紫翠苑, 少年の家, 泉州寮, 立正園 등 5개소로 10-20명 정도의 정원과 泉州寮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5명이내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更生保護法人全国更生保護法人連盟, 2001:61-62).

<표 IV-1> 일본의 갱생보호시설 현황

(단위 : 명)

	청소년	성인	청소년·성인	합계
남자	4	21	66	91
여자	1	-	6	7
남자·여자	-	1	2	3
합계	5	22	74	101

<표 IV-2> 갱생보호시설 수용 인원

(단위 : 명)

	청소년	성인	합계
남자	318	1,802	2,120
여자	50	98	148
합계	367	1,897	2,268

갱생보호시설의 연간 청소년 보호실적은 301명이며, 이 중 1호 관찰자수 75명으로 전체의 24.9%이며, 2호 관찰자수가 226명으로 75.1%에 해당한다. 한 시설 당 연간 보호실적은 전체 평균 4명으로, 청소년 전문시설의 경우 12.4명이고, 성인·청소년 혼합시설의 경우는 3.4명으로 청소년 전용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수용소년의 평균연령은

18.4세이며, 청소년 전용시설의 경우 17.9세, 성인·청소년 혼합시설의 경우 18.5세로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9세가 전체의 2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세(21.3%), 18세(20.3%), 17세(1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보호일수는 75일인데, 청소년 전용시설이 95.5일로 성인·청소년 혼합시설의 69.7일에 비해 한달 정도 더 길다.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비행 유형은 절도가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로교통법(9.3%), 상해(8.6%), 공갈(8.4%), 주거침입(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更生保護法人全國更生保護法人連盟, 2002:61-62).

<표IV-3> 갱생보호시설 소년보호 현황(2000년)

(단위 : 명)

	청소년전용시설	성인·청소년혼합시설	전 체
보호실시시설수	5시설	70시설	75시설
년간보호실인원	62명	239명	301명
1호관찰자수	15명(24.2%)	60인(25.1%)	75명(24.9%)
2호관찰자수	47명(75.8%)	179명(74.9%)	226명(75.1%)
1시설당 년간보호실인원	12.4명	3.4명	4.0인
평균연령	17.9세	18.5세	18.4세
평균보호일수	95.5일	69.7일	75.0일

주) 1호관찰은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말하며, 2호관찰은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말한다.

<표 IV-4> 갱생보호시설 입소 소년의 연령구성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합계
5	27	59	61	75	64	9	1	301
1.7%	9.0%	19.6%	20.3%	24.9%	21.3%	3.0%	0.3%	평균 18.4세

<표 IV-5> 갱생보호시설 입소 소년의 비행명

비행명	인원(명)	비율(%)
주거침입	31	7.2
강제추행·동치사상	0	0.0
강도·동치사상	6	1.4
상해	37	8.6
업무상과실사상	2	0.5
절도	176	41.0
강도	5	1.2
강도치사상	6	1.4
공갈	36	8.4
폭력행위 등	2	0.5
각성제취체법	7	1.6
도로교통법	40	9.3
독물 및 극물취체법	14	3.3
우범	20	4.7
기타	47	11.0
합 계	429	100.0

5) 갱생보호시설 사례⁷⁾

(1) 경화원(敬和園)

경화원은 갱생보호법인 동경보호관찰협회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이다.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또는 소년원을 가퇴원한 소년, 소년형무소를 가출옥한 26세미만 청년, 형의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기 만료되어 출소한 26세미만 청년 중에서 적당한 귀가처가 없거나, 바람직한 거주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갱생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일정기간 수용보호한다.

7) 이 사례는 연구자가 일본 출장에서 직접 방문했던 시설로써 수집된 많은 정보와 자료 중 일부만 소개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각종 자료와 비디오 등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시설 관련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직원이 기거를 함께 하면서 자립을 목표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지도하고 원조하는 시설이다.

경화원은 1958년에 설립된 시설로 1982년부터 남자청소년 전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은 2층 철근 콘크리트로 실내면적은 539.83㎡이며, 1층엔 사무실, 서고, 상담실, 회의실, 오락실, 식당, 조리실, 욕실, 창고,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엔 침실(개인 8실, 2인실 5실), 숙치실, 세면소, 화장실, 세탁실, 창고 등이 있다. 직원은 간사 겸 보도주임 1명, 보도원 1명, 보도원 겸 조리원 1명과 촉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화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 준비 : 소년원과 형무소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과의 면접과 통신에 의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생활계획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행하고 있다.
- ◎ 숙박·식사의 제공 : 입원 후 일정기간, 숙박·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식사는 직원이 직접 만들어 따뜻한 요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입원 중에 일해서 얻은 임금의 대부분을 자립자금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생활지도 : 자립생산을 위해 취직과 노동, 저축의 격려를 촉진하고, 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지도한다.
- ◎ 직업지도 : 취직과 노동에 대해서는 본인과 대화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고, 직업안정소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알선한다.
- ◎ 복지·의료 : 의원·보건소·복지사무소 등의 위생 및 복지기관 등에서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협력조직과의 연대 : 지구보호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넓게는 갯생보호부인회, BBS회 등의 갯생보호협력조직과의 연대를 밀접히 하고 거주환경의 정비·레크리에이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입원자의 사회성을 풍부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동경실화도장(東京實華道場)

소화24년 사업인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초 홋카이도에서 사범보호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북견실화도장 동경지부(北見實華道場・東京支部)이다. 기타미시(北見市) 이외의 홋카이도 도내의 갱생보호사업을 전개했고, 그 일환으로써 동경에 제조업, 건축업을 기반으로 동경지부가 창설되었다. 동경지부는 소화24년 독립해 명칭을 동경실화도장으로 했다. 수용시설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화40년경에 사업을 집약시켜, 소화43년에는 재단법인인가를 받았다. 동경실화도장의 갱생보호처우는 피보호자의 갱생을 위해 단계, 즉 스텝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처우의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ステップ龍岡은 목조2층 건물로 면적은 184m²이며, 남자 성인과 청소년 혼합시설이다. 수용정원은 10명 정도이고, 일본식 11.4m²의 2인용방이 5개 있다. 시설설비는 식당 겸 담화실(TV, 바둑, 장기, 도서 등 비치), 정양실(사무소, 일시 숙박 등으로 제공됨), 자취설비(냉장고, 취사도구, 주전자, 전자레인지, 부엌 설비 등 상시 사용 가능), 입욕설비(샤워 설비를 갖춘 욕실, 매일 이용 가능), 세탁설비(전자동세탁기 설치, 상시사용가능), 화장실 등이 있다.

ステップ押上은 철골콘크리트 4층 건물로 면적은 1,128m²이고, 수용정원은 성인남자 28명과 청소년 3명이다. 숙소는 서양식(12.5m², 1인, 1실), 서양식(12.5m², 2인, 1실), 서양식(24.8m², 4인, 3실), 일본식(4인, 2실)이 있고, 1층(사무실 및 작업실), 2층(직원숙소 소회의실), 3층/4층(침실 및 거주공간)으로 되어있다. 설비는 집회실(에어콘, TV, 바둑, 장기, 도서), 자취시설(냉장고, 주전자, 전자레인지 등 자유사용), 입욕설비(3층 샤워샷트 1개, 4층 샤워샷트 1개+1인용 샤워기), 세탁설비(3층, 4층 세탁기(건조기 포함) 각 1대 및 화장실 등이다.

(3) 오사카시립 아부야마학원(大阪市立 阿武山學園)

이 시설은 우리나라의 소년수탁시설 혹은 아동교호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자립지원시설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환경이나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인해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보호자 하에서 통학시킴으로써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지도를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 시설은 소화35년(1960년) 11월에 설립되었고, 부지면적 99,375m²(약3만평)에 수용가능한 정원은 124명이다. 원내시설은 본관(철골콘크리트 2층) 1동(원장실, 사무실, 도서실, 의무실 등), 료사(목조) 3동(남자료2, 여자료1), 료사(철골콘크리트) 4동(남자료3, 여자료1), 강당(철골콘크리트) 1동, 보통교실(철골콘크리트) 1동(보통교실 8개), 특별교실(철골콘크리트) 1동(음악교실, 컴퓨터교실, 도예교실), 주방동 1동, 직원공료 4동, 작업실 1동, 풀장(25m×15m), 농작업용농지 등이다.

직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명과 전문교사 및 생활지도 교사 19명, 파견교원 2명, 간호사 및 영양사 각 1명, 사무직원 3명, 운전수 1명, 조리원 4명 등 총 33명이며, 이 외에 비상근 강사, 조리사 및 위탁의사가 7명있다.

학원의 특색을 살펴보면, 이 학원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이 입소하고 있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가출, 공갈, 약물흡입, 성적인 문제행동 등 비행이 중심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지역적인 환경의 문제, 학대, 버려진 체험, 이지메피해 등에 의한 심적 외상의 문제 등이 잠재되어 있다. 학원의 제 1의 특색은 3만평이 넘는 넓은 부지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자연이다. 그 자원이 가진 치료력을 충분히 살리면서, 한가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의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학력의 양성, 풍부한 정서와 자아의 육성, 인간신뢰의 회복과 자아긍정감의 획득 등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 특색은 전통적인 처우형태인 ‘소사부부제’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는 무엇보다도 가정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에서 키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동의 생활기반인 거주공간이 일반가정에 가까운 소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부부직원이 한 집을 이뤄 함께 거주하고 부성적 역할과 모성적 역할을 발휘하면서 1일 24시간 어린이와 생활을 함께 하는 시스템이다. 가족을 처음으로 해서 친근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부부직원과의 사이에는 인간적으로 온화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가정적인 생활체험을 쌓아 가는 것과 마음의 치료를 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색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내의 폭력 등을 시작으로 해서 비사회적인 경향이 있는 아동과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아동도 다수 받아서 이러한 아동의 치료,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법개정에서 ‘등교거부’의 아동은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지도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

네 번째 특색은 학습지도로써 학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학습하거나, 개개인의 성격, 특성에 착목해 지도를 행하고 있다. 현재 아동의 학적은 출신 소,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6) 갱생보호시설 소년 처우의 문제점

갱생보호시설에 소년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보호자가 소년의 신원보증을 거부하거나 보호환경이 나쁜 경우 혹은 보호자 주택의 근교에 공범과 피해자가 있어 신원보증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소년은 성인·청소년 혼합시설과 청소년전용시설로 의뢰되는데,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소년을 위한 처우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1) 성인·청소년혼합시설에서 소년의 처우

성인·청소년 혼합시설의 문제점은 연령차가 있는 피보호자들의 처우, 소년처우의 자세, 복지와의 연대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성인이 있는 경우는 소년이 소년원에서 받던 학습을 계속 받도록 한다고 해도, 성인 눈에 거슬리는 경우를 이유로 거부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성인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소년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다. 소년전용 갱생보호시설에 성인이 입소할 때는 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소년과 같은 방에 머무는 성인에 대해서도 같은 배려를 하고 있다. 연장자의 시점에서는 젊은 원생이 연배원생에게 심하게 지도를 받는 등 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소년이 혼자 있을 경우는 좋은 상태이다가, 같은 세대의 소년이 입소했던 시점에 다시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소년을 같은 시기에 받을 때에는 신중한 체제가 필요하다. 소년이 취직하고 지도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다음 처우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문제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갱생보호시설의 처우는 자립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하지만, 소년의 경우는 자립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관계기관의 연대는 환경조정을 받는 것만을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것보다, 교정시설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퇴원을 결정하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보호와 교정의 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와 소년교정 분야는 항상 유기적인 연대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시의 친구들과 타협을 짓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년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처우의 어려움이 있다. 소년의 경우 개별처우가 특히 중요하다. 갱생보호시설에

서 어떻게 소년을 간파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보다 세세한 관찰이 요구된다.

혼합시설에서 소년처우는 성인이 어느 정도 자립했던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인을 입소시켰던 방법으로 처우에 융통성이 있도록 하고, 그 소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의 존재에 의해서 소년의 생활에 긴장감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피보호자의 연령층이 넓다는 것에 의해 가정적인 분위기로 되기도 하고, 갱생보호시설에서는 유사가족체험을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주적으로 소년의 보살핌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 등 성인의 처우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도 있다.

그러나, 소년에 악영향의 감염 등 성인과 소년의 혼합시설의 경우라고 해도 성인의 눈이 있기 때문에 소년 쪽을 충분히 케어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다만 소년들을 처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들을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본인에게 지우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경우는 음주의 예의 경우에는 성인이 원하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성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 소년독자적인 처우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년 전용시설의 부족

현재, 소년전용시설은 동경의 자취원(紫翠苑), 경화원(敬和園), 시즈오카(静岡)의 소년의 집(少年の家), 아이치현(愛知)의 입정원(立正園), 오사카(大阪)의 천주료(泉州寮)의 5개소에 총 정원도 83명뿐이고, 이는 전국 청소년 총정원수 372명의 20%정도이다. 이는 소년인구의 장기적인 감소경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근년 소년원 가퇴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처우 및 지도의 어려움

구체적인 생활지도에서는 다양한 것이 문제가 된다. 갱생보호시설의 규칙을 설정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준수시키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매우 엄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만다. 그러므로 立正園의 경우는 이것이 비행에 사용되거나 다른 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도하지만, 그런 것 이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지도하지 않는다.

취업지도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취업은 어떤 의미에서 갱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와의 좋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 이후의 생활도 좋아지게 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갱생보호시설의 평균재회일수는 70일 정도이다. 그러나, 좋은 고용주와 만나 일이 정착되고, 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취업지도에 관한 프로그램을 책정하려고 하면, 내면 깊은 면접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지도가 어려움으로 남는다. 또한 소년이 참가의욕을 가지도록 하고 소년의 긴박감이 지속되는 것이 겨우 일주일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2주간, 3주간 지속하는 처우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각 지구에서 통근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 처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도 알차고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연장하여, 소년원의 특수단기처우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 재정 및 인력 등 운영상의 어려움

소년에 대한 처우면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인력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처우가 원활하게 행해지지 않는 큰 원인이 된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 책정이 어렵고, 따라서 인재를 모으

기가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의 전문성이 모호하고 전문화된 인재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관·보호사 등의 연관직종으로부터 전향했던 직원이 많고 시설독자적인 축적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5) 관계기관과의 연대 부족

보호관찰소, 소년원,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지 않아 처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대 경험에 있는 소년의 처우에 있어서는 정신의학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립원조시설로 의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시설을 교란시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관계기관의 연대는 환경조정을 받는 것만을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것보다도, 교정시설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퇴원을 결정하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보호와 교정이라는 양측면의 협력이 요구된다. 즉, 아동복지분야와 소년교정 분야의 유기적인 연대는 소년의 처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7) 향후 갱생보호시설의 발전적 전망

보호시설을 지탱하는 요소는 시설, 인력, 재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설운영의 큰 요소로써 상호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처우의 향상은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관련과 전체적인 대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일본 갱생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발전적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소년에 대한 처우

소년에 대한 처우에 원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응하는 효과적인 처우방법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밝힐 수는 없다. 결국은 처우현장에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현장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① 소년전용시설의 확대

소년의 처우에는 성인의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진다. 이것이 처우현장의 실제 상황이다. 현행 위탁제도 하에서는 노력과 희생에 의해 처우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해도 경영의 안정과 강화는 매우 어렵다. 소년처우시설이 존속 가능하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처우곤란자에 대한 전문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의 보호시설에서는 처우능력을 넘는 소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처우곤란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건립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

소년전용시설이 적은 상황에서는 수요에 맞춰 혼합시설의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부담이 큰 소년의 처우를 전 시설이 분담하는 의식이 필요하며 보호시설 전체 문제로써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프로그램의 다양화

처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각 개인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내용도 알차고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공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소년원의 특수단기처우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취직실습,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체험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와 비행의 배경은 단순한 빈곤의 문제에서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문제로까지 변화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처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현재 실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처우를 생각해서 처우효과와 측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③ 보호자의 지도감독 강화

소년 보호자에 대한 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성인과 달리, 본래 보호자가 있는 소년이 갱생보호시설에 귀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호자의 지도감독과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년을 평생 갱생보호시설에 넣어 주세요”라며 갱생보호시설에 완전히 맡기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보호자도 있으므로 이러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년 이상으로 중점적인 지도를 행할 필요가 있다. 입정원(立正園)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요리와 캠프는 보호자에 대한 처우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의 강화도 소년 처우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 갱생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의 다수는 가족과의 연결이 약한 이들이 많고, 조정에는 곤란을 갖는 이들이 많다. 다수의 시설에서는 소년에게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처우하고 있다. 그러나 立正園에서는 가퇴원 후에 소년을 자택으로 귀가시키기 위해서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갱생보호시설에 오도록 하거나, 소년이 가퇴원 시에는 시설직원이 마중 나가거나 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보호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당일은 반드시 마중하러 오게 하거나, 소년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도록 하는 등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시설 운영 및 경영에 대한 대안

① 위탁운영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탁비를 모든 갱생보호시설을 평균하는 것도 없이, 시설별로 배분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는 큰 시설에서도 작은 시설에서도 같게 들고, 위탁비는 수용상황에 의해 크게 다르다. 처우상 이상적인 수용자수에서 처우하려고 한다면, 실제의 경영은 매우 어렵게 된다. 특히 소년전용 갱생보호시설만을 본다면, 분명히 결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갱생보호시설에는 시설에 지급되는 시설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확하게는 갱생보호시설의 발족은 민간으로부터이지만, 언제까지나 민간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가적 정책으로의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갱생보호시설을 국립으로 하고, 교정과 처우의 전문가를 모아서 여유 있는 처우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국립으로 할 경우 재범(再犯)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의 시설에 있는 장점을 잃어버리고, 입소자의 배분을 위해서 센터처럼 존재하게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으므로 이는 좀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② 인력의 확대 및 전문화

갱생보호시설의 직원 근무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오후 6·7시쯤은 소년들과 관계된 시간도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당직자가 혼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갱생보호시설에서 상근직원 3-4명이 모든 업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경우, 한 시설에 소년이 10명 정도 있는 곳은 갱생보호시설과 같은 정도이지만, 경험상으로 직원이 최저 5명이 없다면 24시간의 교대근무가 돌아갈 수 없다.

갱생보호시설 직원의 경우, 사무와 처우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직원 모두가 일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처우에서는 비정규적으로 한사람이 대응하고 있다고 해도, 한사람이 다른 소년의 케어가 가능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실제 직원이 피곤하고 지칠 경우, 그것이 소년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소년의 처우를 위해서는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③ 개별처우 및 시설전문화

소년전문 갱생보호시설이 5개밖에 없는 것도 문제이다. 입소한 소년은 실제로 많지만, 처우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교정의 분류처우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설수를 증가시키고, 소년의 특징에 맞도록 소년타입별로 갱생보호시설을 전문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④ 데이터베이스화 및 처우효과 측정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한 소년의 파악을 위해서는 사례연구인 개별적인 검토와 함께 양적인 검토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년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갱생보호시설의 처우가 잘 되는가 어떤가는 방법론이 확립되는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파악도 중요하며, 갱생보호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까지 대상을 확대시켜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소년들을 처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가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소년원에서 작성된 개별적 처우계획이 어떻게 갱생보호시설의 처우에 연결되는가, 또한 장래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봐야할 것이다. 소년원의 처우와 갱생보호시설의 처우의 연관성 등이 데이터로 작성되어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설간의 횡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어려움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각 갱생보호시설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시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모든 시설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작성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패스워드를 두는 등 관계자 이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국갱생보호법인연맹만이 홈페이지를 열고, 회원만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채택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3)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사회자원의 확보

소년의 처우문제에 대한 해결을 꾀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가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처우의 일관성과 유효한 처우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규칙의 확보가 바람직하다.

한편, 시설처우는 사회시설의 활용에 기대는 면이 크다. 특히 협력고용주 하에서 취직의 안정은 소년의 생활과 행동상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결과가 되고, 그것만으로 큰 처우효과를 갖는다. 입정원(立正園)의 경우, 협력고용주의 존재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협력고용주의 개척은 소년전용시설의 큰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 소년원, 아동자립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년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갱생보호시설을 비교할 경우 부부소사제(夫婦小舎制)와 교대제(交代制)를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갱생보호시설에서는 소위 부부소사제의 형태(직원이 가족으로 시설에 거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감소하고, 현재는 교대제(직원의 통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다. 소년의 처우에는 면밀한 케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소사제의 운영이 처우상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대제라도 케도에 오른 아동자립시설이 다수 있으며, 교대제에서도 시설 내에 가족적인 처우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임을 고려할 때, 두 시설의 운영 형태에 대한 상호 비교평가는 소년 처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기적 연대로 이해할 수 있다.

소년원과 갱생보호시설의 연대를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조정이다. 소년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자 보호 하의 귀가조치’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시설의 입장에서는 ‘보호자 보호 하의 귀가조치’가 곤란한 사례에 대해서 다급히 갱생보호시설을 조정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 소년 자신이 갱생보호시설에의 귀가조치를 불만으로 느끼거나, 설령 갱생보호시설에 귀가조치했더라도 조정 불충분으로 그 이후 처우가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귀가조치의 문제’를 확인해야만 할 사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갱생보호시설에 귀가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연대는, 갱생보호시설에서는 소년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소년원에서는 소년에 관한 정보를 시설에 알려주어야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 소년원에서는 직업보도 중에 소년이 다양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퇴원 후의 생활에서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직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고 있지만, 그러한 소년원에서의 교육내용을 갱생보호시설에 알리는 등 연계기관과의 연대를 밀접하게 해야 한다

6.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지금까지 미국, 호주, 이스라엘의 지역사회교정과 중간처우시설 및 프로그램 사례를 고찰하고,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및 갱생보호시설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고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리 과정과 처우 상황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1) 지역사회교정의 확산

본 장에 제시된 외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지역사회교정의 확산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사회내 교정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결속의 정도가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며, 청소년들은 시설 수용을 통한 격리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속에 교화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교정의 교육적 의미에 근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Home Detention Programs, Detention Aftercare 등 구금을 대신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들이 발달하였으며, Foster Care와 Group Home, Independent Living Programs 등 지역사회내 거주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Youth Training Centre도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사회교정센터로 재판과정에서 공권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청소년의 사회재통합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다. 아버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결연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인 The Uncle Project도 대표적인 지역사회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써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모델링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쾰스랜드의 Halfway house program도 교도소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측면과 교정업무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스라엘의 Community Hostels와 Brosh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 범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재통합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도 청소년을 위한 갱생보호제도 및 시설 운영의 방향을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여 소년범죄자를 위한 복지적 사법의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여 범죄청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설 사례에 소개된 두 곳의 갱생보호시설도 운영의 주체는 법무성 관할의 갱생보호협회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사회사업가 및 독지가 등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최대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특히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교정복지 제도 및 시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교정은 비용 효율적 측면과 교정의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중간처우제도 및 중간처우시설 운영의 향후 방향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안가정 중심의 프로그램

미국과 호주, 일본의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대안가정 및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에의 적용에 매우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비행청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들은 대다수의 경우 기능적 혹은 구조적인 결손가정에서 성장하여 가족의 결속력과 지원력이 매우 희박하고, 이는 이들의 재할 및 사회재통합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대안가정 혹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Foster Care는 문제가정의 문제청소년을 보다 나은 환경의 대안가정에 배치하여 그 가정의 성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용 효율적 측면과 청소년의 교정교화 측면에서 매력적인 교

정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teaching-family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Youth Home Inc.는 그룹홈의 일종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된 결혼한 부부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부부는 청소년들의 부모, 대리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자립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Foster Care의 경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리부모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역할에 부합되는 금전적인 보상에 노력을 기울이며, 대리부모에게도 위탁받은 청소년들을 가정에 단지 수용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어진다. Youth Home Inc.의 경우 주목할 만한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전문가, 부모 및 그룹홈 거주자들이 주기적으로 Youth Home Inc.를 평가하고 부모 역할자도 일년을 단위로 전문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대안 가정 및 대리부모에 대한 교육과 평가는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사성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the Uncle Project는 아버지없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필요와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성인 남성의 만남을 연결한 프로그램으로, 범죄 및 약물중독 청소년을 위해 건전한 성인 남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활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남성배제적인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성인 남성을 지역사회활동에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촌”이라는 인물과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부부소사제(夫婦小舎制)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우리나라의 소년수탁시설 혹은 아동교호시설에 해당하는 일본의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일부는 부부소사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사회사업에 뜻을 둔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시설에 입소하여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 4-5명과 자신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생활한다. 대리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와 상담 등을 담당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부부소사제는 아직까지 대리 가정 및 대리 부모의 형태가 시설운영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 중간처우시설 운영방향 모색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 청소년 수요도조사 결과
3. 시사점

V. 중간처우시설 운영 방향 모색

소년 범죄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 조사 및 대상자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각각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주체, 시설설비 일반, 시설 종사자 처우 및 채용방법, 운영비 등 효율적인 중간처우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중간처우시설을 이용할 대상자의 수요도 조사를 소년원을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무의탁 시설에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소년 범죄자의 안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중간처우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시설 및 설비

중간처우시설을 설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간처우시설의 규모와 적정 수용인원,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및 시설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1) 중간처우시설의 규모

중간처우시설의 규모에 관하여 현장전문가들은 소규모 그룹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간처우시설의 규모에 관한 질문으로 ‘소규모시설 그룹홈(독립적 단독가정 형태)’, ‘소규모시설 소숙사(cottage): 시설 내 몇 개의 가정형태(생활·취사 분리 혹은 생활·취사 공동)’, ‘중간규모시설(100명 정도 집단기숙사(공동생활, 공동취사))’, ‘대규모시설(150명 이상, 집단기숙사(공동생활, 공동취사))’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각 규모별 장·단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V-1> 각 시설 규모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소규모 그룹홈	·일반 가정(가족) 같은 분위기 ·시설화의 악순환 방지 ·자유로운 사회 복귀 분위기 ·정서적 안정과 인격형성에 도움 ·자연령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유익	·재정의 문제 ·고비용 소요 예상 ·질서와 규율의 방치가 예상 ·전문 인력의 충원의 문제 ·지나친 지도자 중심적 운영 우려
절충형 (소규모 그룹홈 + 중간규모 시설)	·예산 절감 효과 ·공동·집단생활의 학습기회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개선 ·전문화된 교육 접촉기회 증가 ·고연령 청소년의 독립성 발달 기회	·적절한 개인별 지도 어려움 ·수동적 수용에 머물 우려 ·수용시설화, 작은 규모의 소년원화 ·시설 이탈·도주의 우려 ·비행 접촉 기회 확대

전체 응답자들 중 2/3이상의 전문가들이 ‘소규모시설 그룹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3은 ‘소규모시설 소숙사’나 ‘중간규모시설’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중간규모시설 내의 ‘그룹홈’을 두는 절충적인 형태를 제시하였다.

(2) 중간처우시설의 적정 수용인원

중간처우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위에서 제시되었던 ‘소규모시설 그룹홈’과 ‘절충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소규모시설 그룹홈’의 경우, 적게는 3~5명에서 최대한 15~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가능한 가정적인 형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절충형’의 경우 적정 수용인원은 최소 20~30명에서 최대 200명 정도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절충형의 경우도 각 숙소별로 수용인원은 15명 내외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호별 배치 인원은 두 가지 유형 모두 호실당 2명 내외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각 배치기준은 범죄유형별, 연령별(고연령, 저연령), 인성별(적성검사 등을 실시해 구분)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관리직원(담당자,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의 경우도 1인당 청소년 2~3명, 많게는 5~6명 정도로 일반적 가정형 태에서 부모역할과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주의할 점은 각 수용인원들 간의 적응 정도를 파악해서, 인원을 재배치하고 충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⁸⁾

(3) 중간처우시설의 설비

시설 설비는 크게 ‘고려사항’과 ‘설비내용’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고려사항은 첫째, 대개의 수용된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모처럼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즉, 시설의 담당자에게 형식적,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로 시설 내부의 배치의 경우도 담당하는 직원과 학생들의 분리와 결합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⁹⁾

둘째, 설비품목은 중간처우시설의 ‘특수설비’(통제장치 등)와 ‘일반설비’(시설장비 등)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수설비는 쇠창살, CCTV, 잠

8) 실적위주로 수용인원과 배치를 늘리면, 기존에 수용되어 적응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9) 교육자방과 청소년방이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로 독방이나 청소년들만의 침실은 동성애, 폭력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므로 ‘전체 침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장치, 외부벽을 이용한 방호시설, SOS시설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외관상으로 수용시설처럼 비쳐질 수 있는 쇠창살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미 한 두번은 수용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다시 감금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설비는 ‘소규모시설 그룹홈’의 경우는 개별 생활실(침실), 공동거실, 공동취사장, 개별 건조대, 상담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절충형’의 경우는 소규모시설 그룹홈의 시설과 함께 기술교육·학교교육시설과 문화시설(컴퓨터실, 노래방 등)을 결합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한편, 구체적인 구비물품으로는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소화장치, 개인사물함 등으로 나타났다.¹⁰⁾

한편, 시설설비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제시되었다. 첫째,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컴퓨터(인터넷 포함)에 대한 수요는 전문가들 모두가 강조했다. 공용 PC(인터넷 포함)을 두되,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서 인터넷·통신 중독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¹¹⁾ 둘째, 청소년들이 성장기인 점과 목표설정이 안 된 청소년들을 위해 땀흘려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기구의 필요성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문화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음악감상, 독서 등의 분위기 조성도 유익한 시설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요컨대 시설설비가 낙후되지 않고 최소한 ‘중산층 일반가정’ 정도의 설비를 갖춘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문화 및 여가생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으로써 시설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0) 설비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벽지, 인테리어 등을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1) 각 시설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말 외출을 허용하면, 대개는 PC방에서 밤샘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시설의 위치 선정

중간처우시설은 사후정착을 위한 ‘재사회화’와 ‘사회적응’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취업, 학원수강, 학교수강이 가능한 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교통시설이 편리하며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고려하면, ‘일반 주택지’에 설치해서 주민과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¹²⁾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 등 사회간접자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가능하다면 지역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문화센터, 복지회관, 여성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인근에 위치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위치선정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시설이 집단화, 집중화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³⁾ 지나치게 변화한 대도시의 중심가에 시설이 위치할 경우, 유혹이 많아 재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변과 격리된 곳은 단절감과 지루함을 느끼게 할 우려도 있었다.¹⁴⁾ 이러한 위치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도별로 도시형 1곳, 중소도시형 1곳, 농촌형 1곳을 설립해서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도시-중소도시-농촌으로 일정기간 교체해가며 거주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12) ‘넘비현상’만 극복된다면, 일반 가정이나 주변시설 내에 설치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으로 각인되었지만, 이후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자 평범한 시설로 받아들인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범죄청소년이 아닌 일반 수탁시설 학생들의 시설도 해당 지역 주민단체에서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러므로 시설에는 가급적 특정한 안내판이나 표지판의 설치에 없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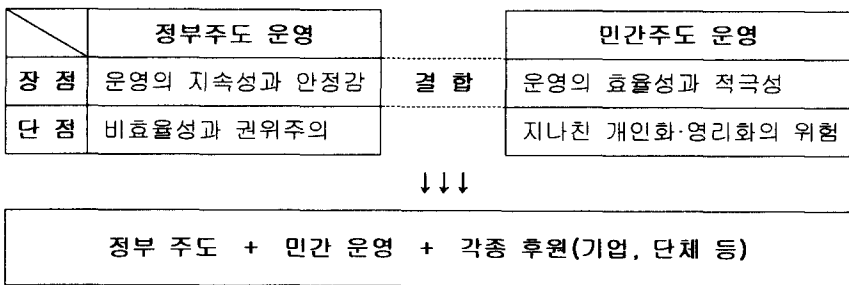
13) 집단화, 중심화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범죄학습의 기회로 악용될 우려도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14) 지나친 단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시설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2)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

(1) 시설의 운영주체와 재정

먼저 시설의 운영주체와 재정지원은 크게 ‘정부주도’와 ‘민간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정부주도 하에 운영은 민간(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복지단체 등)에 위탁하되, 지원금은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지원의 형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국고지원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호비, 시설비, 운영비 등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일부지원의 경우, 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 및 기부금, 시설 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비와 자체 수익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소규모 그룹홈의 중간처우시설이 정부나 기타 단체의 조직이나 기관과 연결된 하위기관이 아닐 경우, 여러 가지 후원을 유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매년 재정,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림V-1] 효율적 시설 운영주체와 재정지원

그러나 민간위탁운영의 경우, 개인적 영리추구나 지나친 개인화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어 각 운영주체별로 시설의 장·단

점과 성과를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시설 운영과 재정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전환시켜 가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재정의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내도록 함으로써,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¹⁵⁾

또한, 재정지원시 주의할 점은 먼저 재정지원항목이 구체화되고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문화수요(여행, 문화생활 등)에 관한 항목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융통성있게 자금이 운영될 수 없도록 지나친 재정 항목의 단순화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약컨대, 처우시설의 ‘재정상태’는 대상자 처우의 질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강조되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주체자의 의식도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운영할만한 기본적인 자격조건(자격증, 사회복지, 상담교사, 근무경력 등)이 갖춰진 책임있는 운영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입·퇴소 절차 및 적정 수용기간

입·퇴소 절차 모두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즉,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단기나 장기 모두 시설(소년원)에 수용되었던 학생들은 시설 퇴소시, 일시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시설 퇴원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재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 등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춘 기관이 행동, 생활, 진로 등 청소년들의 현실에 개입하는 수준을 점차

15) 외국의 경우 낮은 임대료로 얻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지원도 많고, 수용시설들의 경우도 일정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입소는 과거 무단이탈 2회 경험자는 시설 이용 제한 등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개별처우형식으로 퇴원생들의 사후정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퇴소 기준은 시설운영자, 퇴원생, 기타 관계자의 협의 하에 수용 대상자의 정체성 및 판단능력, 자활·자립능력을 고려해 퇴소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채 무작정 퇴소할 경우, 재비행의 우려는 매우 높다.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 개인의 친척 또는 취업처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수용기간에 대한 의견으로는 6개월~2년 정도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예를 들어, 소년원 퇴원생들의 연령은 13~20세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 1년 정도의 수용기간으로는 현실적으로 안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용기간은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용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만 20세라는 연령상한선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시설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흔히 말하는 ‘시설병’(무기력증, 자신감 상실,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해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각자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과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¹⁶⁾

16) 예를 들어 ‘한국更生보호공단’의 경우 최대 수용기간은 9개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기간은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자활·자립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통한 기술습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설 내 생활규칙

시설 내의 생활규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가장 공통적인 생활규칙들을 정리하면, ‘일반가정생활’ 정도의 생활규칙이라는 원칙 하에, ‘공동생활’이라는 특수한 측면들이 결합된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중간처우시설은 일반 ‘쉼터’와는 구별되는 ‘연속성’을 가진 시설이므로, 그에 걸맞는 생활규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는 술·담배는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⁷⁾ 그러나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금연·금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타 기상, 취침, 복귀시간 등은 일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규칙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출·외박의 경우는 장소와 시간을 보고하고 귀가시간도 규칙을 정해야만 한다. 일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의 생활규칙을 기본 골자로 수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담당자들과 청소년 ‘자치회’ 등에서 자율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규칙이나 규제에 대한 상벌제도를 만들어, 잘 지키는 경우는 보다는 많은 자유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중간처우시설 내부적으로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탈, 동료폭행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나친 벌칙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반발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많았다.

17) 이러한 완전금지의 주장에는 술은 통제불능을 초래하며, 담배는 건강 측면은 물론 방화와 같은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3) 인력

(1) 인력구성과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중간처우시설의 인력 문제는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청소년들의 사회재적응을 직접 지도하는 이들이므로 무엇보다도 주의가 요구된다. 직원(staff)이 곧 교정(corection)의 질(quality)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본부격인 서울, 또는 대전에 ‘전국중간처우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기관이나 부서를 두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기관을 통해 후원자, 자원봉사자, 실무담당자 등을 지역별로 안배하고 운영자와 전문인력을 중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급(자원봉사교육:수료증, 점수화) - 중급(세미나·실무자교육:학계, 종교계, 단체간 교류 등을 통한 정보교류) - 고급(실무자 연수:국내에서 재교육기회제공, 해외유사기관 방문 등)으로 전문화 수준을 높여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간처우시설 내부의 경우, 현장실무담당자, 관련교육 이수자 등으로 구분하거나, 상주인력과 출퇴근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먼저 현장실무담당자와 교육받는 인력의 경우, 현장실무담당자의 노하우와 체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상에 체험코스를 첨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무담당자들의 경우,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화를 축적해 갈 수 있는 세미나나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상주인력과 출퇴근인력은 상주인력은 중간처우시설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생활 교육에 직접적인

18) 청소년이나 상담, 심리관련학회(한국심리치료학회, 가족, 사회복지 등)와 연계해서 시간별 봉사 및 정기적인 자원봉사 등의 연계성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여를 하며 생활전반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¹⁹⁾ 중간보호시설의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일반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부부가 ‘부모역할’을 하는 형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의 중간처우시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부기숙사형”제도이다.

한편, 출퇴근인력의 경우는 행정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도 이들이 자긍심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학점제, 가산점제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별로 중간처우시설이 설립될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일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촉장이나 졸업장 등을 수여받도록 하여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임과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각계 각층(종교, 복지, 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단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오히려 일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분산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사후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비행청소년을 위한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① 관련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사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의 공유와 객관화된 자료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기관별로 유사업무를 통폐합

19) 이러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의 경우처럼 ‘비행청소년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부서가 분산되어서는 안 되며, 법무부 산하나 보건복지부에 하나의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좀더 복지적으로 완화된 중간처우시설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종종 있었다.

③ 기관별 특성과 청소년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청소년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청소년들이 배치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④ 성인과 청소년들의 사후관리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후관리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특별한 조직과 원칙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⑤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서 각 기관들의 경험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부분 소년원 입소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소년원’ 수용 시 관계를 맺었던 담당자와 사후관리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⑥ 각 기관별 통합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보호시설과 관련기관들의 대표자나 실무자로 이루어진 채널이나 ‘협의체’(가칭 ‘청소년사후관리지도위원회’ 등)를 구성해 각 문제를 조정·협의하며 정보교류를 추진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⑦ 사회복지시설인 중간처우시설에 수용될 경우,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즉 수용 자체가 보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기관에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전화지도’나 ‘간접지도’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다.²⁰⁾ ⑧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각 기관 별로 공유하고 공동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 특히 가퇴원의 경우, 보호관찰기간 동안 연령이나 퇴원생들이 처한 상황, 거주지, 직장 등이 재범율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다 많은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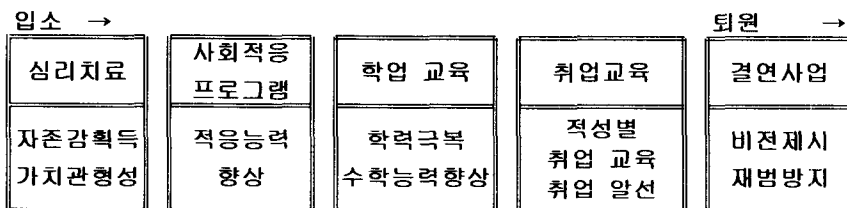
4) 프로그램

(1)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현재 중간처우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경우, ‘가정’과 같은 형태를 지향하며, 비교적 심리적 안정감이나 편안함, 유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재적응을 도울만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내용별로 학력취득과 직업(취업), 사회적응, 여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개개인들의 연령과 적성, 성별, 비행별(특히 약물남용), 적응 시기, 청소년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연계해서 정상적인 학교의 등하교를 우선시하고, 기본교육과정을 수업받고 귀가하는 훈련, 스스로 하는 생활계획수립훈련, 가족과의 재적응 훈련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는 ‘목표설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설 청소년들의 경우도 목표설정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의 수요도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많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또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 교육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림V-2>에서는 입소 때부터 퇴원까지 시기별로 프로그램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V-2] 시기별 프로그램의 변화

각 프로그램별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학력취득 프로그램의 경우 대개의 청소년들이 일반 정규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자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년원 퇴원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력이 매우 낮아 중학교 중퇴정도에 속하며, 그로 인한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교육봉사, 학원교육,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력인정(고입 등 검정고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²¹⁾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인내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직업(취업)교육의 경우,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술·직업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기술원, 직업전문학교 등과 연계되어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생소한 환경이나 취업시 청소년들의 과거의 비행경력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직업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낮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 부족은 청소년들이 열등감과 위화감이 들도록 해 계속적으로 비행문화에 노출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직업활동,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특히 ‘월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셋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정신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인성교육, 성교육 등이 병행되어서 건전한 자아와 자신감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프로그램들 중에서 ‘성교육’도 강조되고 있는데, 각 범죄의 경력별로 그 특성에 맞도록 사회적응프로그램을

21) 그룹홈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경우, 그룹홈의 단점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실시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소년원 등의 시설이 치료적 성격이나 예방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 많다면, 중간처우시설은 ‘성장’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다. 한편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이 ‘자립’과 ‘봉사’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규정을 두는 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적응 프로그램은 일정한 틀에만 한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양노원, 행려자들의 집 등을 방문·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갖음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인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일정한 오락이 가미된 인간관계 훈련일 경우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거나, 적당히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개의 청소년들이 이 시간을 오히려 방해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결연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연사업의 형태는 bigbrother, mentor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여가 프로그램의 경우,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아존중감이 먼저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2차적인 학업, 취업 등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등산, 여행, 레저스포츠, 사물놀이, 한학공부 등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생활체험의 날(북한주민의 식사,

노동 등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통해 통일교육체험), 농촌체험(농가와 결연을 맺어 체험), 기업체험(공장에 직접 투입되어 현장감각 배양), 병영체험(군부대 입소 후 논산훈련소 식으로 훈련) 등이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 의견

먼저 시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립과 운영방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② 예산지원의 경우, 실제 운영에 맞는 항목구성과 지원금을 배당해서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③ 중간처우시설의 경우라도 부적응학생들의 경우에 대한 처벌의 법적·강제적 ‘권한’이 시설의 담당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④ 입소 후 기간별로 점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에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한다. ⑤ 시설의 자율성과 정부 차원의 관리와 운영, 지원 대책(교육, 비용부문 등)이 적절히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 자체의 ‘독특한 교육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간섭(레크레이션, 종교교육 최소화 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⑥ 중간처우시설과 교육내용의 이탈자는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이다.

① 수탁시설 등의 문제점으로 범죄청소년과 불우청소년의 수용시설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즉각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인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 등도 필요하다. 즉 청소년들 스스로도 처우시설이 단순히 수용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장소로서 생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들의 사고와 현실, 인권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행해지는 제도나 법률들, 운영방식 등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④ 중간처우시설은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이므로 정체되기 쉬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⑤ 시설의 ‘지역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 청소년 수요도 조사 결과

청소년수요도 조사는 남녀를 반반씩으로 20명 가량을 심층면접하였다. 내담자는 4호처분을 받고 수탁시설에 수용된 청소년과 소년원 퇴원 후 갹생보호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일반적 질문(사회·인구학적 배경), 소년원 생활에 관한 질문, 현재의 문제상황 및 시설이용에 관한 의견, 시설생활 전반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향후 계획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방문기관과 사전 약속 하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기술원칙은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대개는 1~5 정도의 항목으로 기술했으나, 항목이 적은 경우는 그만큼 다른 이견(異見)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1)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질문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현재의 상황, 가족관계(구조적 상황, 기능적 상황),

교우관계(예: 예전 친구들, 지금 친구들), 학력, 현재하고 있는 일, 시설 수용기간 및 처분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인터뷰)하였다. <표V-2>과 <표V-3>는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공통점을 요약하고 있다.

(1) 가족관계

첫째, 가족의 ‘구조적 요인’은 거의 대부분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 이혼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②정서적 관심과 애정의 결여, ③사회화 역할모형의 부재, ④자녀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의 부족, ⑤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감시부재 등의 상황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뷰-1>의 경우는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²²⁾

엄마, 아빠, 저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한송). 가족이야기 하기 싫어요. 엄마, 아빠는 아마도 이혼하신 것 같아요. 2년 전 인가봐요. 큰 고모 집에 살다가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비슷한 애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일이 꼬여서 이런 데도 오게 되고... 아빠가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돼요. 엄마도 연락 안 되고, 여동생도 모르겠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인터뷰1-집행유예(절도, 폭력), 20세, 남>

둘째, 가족의 ‘기능적 상황’의 경우는 구조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뷰-2>처럼 자녀가 부모나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하셨나봐요. 엄마는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나서는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빠는 별로예요. 아빠는

22) 그러나 대부분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원 퇴원 이후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갈등’의 상황인 경우에 입소하게 된다. 따라서 더욱더 가족의 구조적 상황이 결손가정(Broken home)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 같다.

술을 많이 드세요. 술 마시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어릴 적부터 많이 맞았어요. 아빠는 세 번 재혼했고, 그래서 그런지 집에 가면 왠지 외로웠어요<인터뷰2-1·3호 처분, 7호처분(절도), 18세, 여>

물론 가족 및 자녀수, 부모나 형제자매의 범죄경력, 어머니의 취업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섞여 있어서 일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착(attachment)의 정도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면적인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

(2) 교우관계와 학력

교우관계의 경우와 학력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결손가정과 반사회적인 행동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먼저 학교 동료들로부터 거부(peer rejection)되고, 그 결과 학업에서는 실패(academic failure)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인터뷰-3>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문제아’로 스스로를 규정한 채, 교우관계 또한 비행친구들 중심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뭐 배운 거 있겠어요? 그냥 잤어요. 중학교 공부도 재미없구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녀석끼리 모이고, 학교 빼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 터져서 그만됐어요. 선생님이 퇴학당하는 것보다는 자퇴가 낫다고 그래서 자퇴했어요<인터뷰-3, 보호관찰법위반, 17세, 남>

저는 친구 사귀기도 힘들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저녁에 나와서 나쁜 짓 하게 되고... 학교 처음 갔을 때 형들이랑 누나들도 잘 해 주니까... 근데 그 학교 들어간 게 잘못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나가서 놀고 차탈이 하게 되고... 짤렸어요. 고1에서 짤렸어요. 학교 나가기 싫었어요. 성지고등학교, 꼴통학교 모르세요? 나쁜 곳이에요. 근데 학교 가기 싫어요<인터뷰-4, 1·3호 처분, 7호처분, 17세, 남>

따라서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중퇴(평균 중2)’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인터뷰-4>의 경우는 이렇게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또한 반복된 소년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비행친구들, 그들을 통한 범죄학습 등과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어렵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3) 비행경력 및 처분내용

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재범청소년들’이었다. 처음에는 대개는 경범죄로 시작해 보호관찰법 위반 등으로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범죄경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소년원에 두 번씩 수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뷰-5>에서처럼, 실제로 귀가조치시킬 집이 있고, 부모도 있지만 재범을 막기 위해서 갇셈보호시설에 자발적으로 수용된 경우도 있었다.

여기는 아버지가 애들이랑 연락 끊으라고 해서요. 어울려 다니는 애들이랑요. 애들 만나고 돌아오니깐, 아버지가 서울 올라가서 공부할 생각 없냐고 해서요. 그래서 저도 아빠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아빠가 너무 엄격하셔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친구들하고는 이젠 연락 안 해서요.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죠. 다... 근데 이제는 다 끊어서 없어요. 여기는 서울이고 친구들은 다 지방에 있으니까요<인터뷰-5, 1·3호처분, 19세, 남>

이처럼 청소년들의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개는 ‘사후관리’ 부족과 소년원 퇴소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배경과 생활환경, 교우관계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은 <인터뷰-6>에서 잘 드러난다.

2년 2개월 다 살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16살 때죠. 집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엄마 도와 드리고 일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해서요. 만나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돈 욕심이 생겨서 친구들이랑 털고... 그래서 다시 여기 오게 되었어요<인터뷰-6, 4호처분, 17세, 남>

(4) 현재상황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검정고시준비, 둘째 취업준비(학원수강) 및 취업상태, 셋째 목표 부재상태이다. 검정고시준비의 경우, 시설로부터 보조금(학원비)을 받아서 학원을 수강하거나 집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교육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취업준비의 경우에도 보조금(학원비)을 지급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인터뷰-7>처럼, 취업처에서 부적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호관찰기간인 경우는 취업처로 보호관찰관이 전화를 해서 쫓겨나는 사례도 많았다.

한 3개월은 일했어요. 식당에서 장치같은 거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랬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전화와서 그만뒀어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벌어들인 돈은 다 썼어요. 뒤로는 그냥 집에 있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운동했어요. 축구해요. 밑에 전화기 있으니까 서울 일자리 구하고 그래요. 운동하는 거 밖에 없어요. 답답해요(한숨)<인터뷰-7, 1·3호처분, 6호처분, 17세, 남>

목표부재상태인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0시간씩이나 되는 청소년들이었다. <인터뷰-8>에서처럼, 이른바 목표 부재 상태의 경우는 소년원 퇴소 이후 첫번째 시도(취업, 취업준비, 검정고시 등)이 실패한 경우에 많았다. 이는 첫번째 시도가 실패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3~4개월 정도 되고, 그 이후는 ‘퇴소 불안’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낮은 학력·주거불안 등의 이유로 매우 불안정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9개월은 너무 짧아요. 애들이 처음에 오면 잘 모르잖아요? 대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구요. 그러면 다들 처음에는 일해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검정고시 보려고 하면 다 기간을 놓쳐 버려요. 한번 해서 떨어지면 못 하는 거죠. 한 2년 정도 하면 혹시라도 한번 정도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 두고, 다시 일 알아보는 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원다닐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처음부터 검정고시 학원 다닐 걸 그랬어요<인터뷰-8, 1·3호처분, 6호처분, 17세, 남>

<표V-2>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성별:남)

연령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력	처분 내용 시설 수용	현재 상황
1 17	-부모 이혼 -부: 중장비 -모: 계모 가족결합도 高	-비행친구와 찾은 비행 -찾은 이사 교우관계 복잡	-중1퇴	-4호처분 (절도, 사문서) -4호처분 (절도)	-살레시오회관 -고입준비중 -대입준비 계획
2 15	-부모 이혼 -부: 연락 안됨 -모: 집을 나감 -양육능력 無	-비행친구와 비행경험 多 -가출 친구 多	-중1퇴 -초등학교 무단 결석	-처분 無 -비행우려 高	-살레시오회관 (그룹홈 거주) -중1(일반학교 통학)
3 15	-부모 이혼 -부: 무관심 -모: 계모, 체벌 -양육 의지 無	-가출친구 多 -비행경험 多	-중1퇴 -초등학교 무단 결석	-4호 처분 (절도)	-살레시오회관 (그룹홈 거주) -중1(일반학교 통학)
4 21	-부모 이혼 -부: 연락 안됨 -모: 연락 안됨 -가족결합도 弱	-가출친구 多 -비행경험 多 오토바이 등	-고3퇴 (공고) -학원비 때 문에 좌절	-2년6개월 집행유예 (절도, 폭력 등)	-은평출장소 -진로 없음 -퇴소 직전이 나 거주지 無
5 19	-부모 이혼 -부: 택시 -모: 가출 가족결합도 弱	-가출친구 多 -비행경험 多	-고1퇴 (공고) -중학교부터 적응 못함	-1,3호처분 (절도) -6호처분 (보호관찰법위 반, 폭력, 강도 등)	-은평출장소 -미용학원다님 (보조금받음)
6 17	-부: 중병, 알콜중독 -모: 중병, 파출부 경제적 어려움	-가출친구 多 -비행경험 多	-고1퇴 중합학교에 적응못함 비행학습됨	-1,3호처분 (성폭력) -6호처분 (보호관찰법위 반)	-은평출장소 -파트타임 취업준비중 -진로 미결정
7 21	-부모 이혼 -부: 어부, 재혼 -모: 가출, 계모 가족 헤어짐	-가출친구 多 현재 연락안함 -비행경험 多	-고2(공고) 생활고로 학업이 매 우 어려움	-1,3호처분 -7호처분 (보호관찰법위 반,절도), 가퇴원	-은평출장소 -대입수능준비 (보조금받음) -자격증취득多
8 17	-부모 이혼 -부: 교도소수감 -모: 가출 가족 헤어짐	-비행친구 多 오토바이,절도 등 비행 접촉 우 려함	-중2퇴 적응의지 無	-1,3호처분 (오토바이절도) -6호처분 (보호관찰위반)	-은평출장소 -진로결정無 -퇴소후 거주지 없음
9 19	-부: 엄격, 농사 -모: 농사 비행우려 입소	-비행친구 多 오토바이, 절도 비행접촉 高	-고1퇴	1,3호처분 (오토바이절도)	-은평출장소 -검정고시 준비중 -퇴소후걱정

<표V-3>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성별:여)

번호	연령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력	처분 내용 시설 수용	현재 상황
1	18	-출생이전, 부모이혼 -부: 음주벽(재혼) -모: 소식두절 -조부모양육	-원만한 편, 인정받음 -대부분 유혹 업소 친구	-중1 퇴학 찾은 전학 -중졸 검정 고시 합격	-1,3호처분 (절도) -7호처분(절도)	-예향이네집 -소년원의 취업처 중단 -내년 고교 입학예정
2	18	-부모 이혼 -부: 이혼상태 -모: 재혼 -남동생도 소년원 -경제적 어려움	-비행 남자 친구들 많음 -현재는 친구 몇 명만 교제	-중퇴	-중장기 7호 -現, 가퇴원	-딸부자집 -소년원 가퇴원 -보호관찰기간 -요리학원수강 -음식점 일함
3	18	-부모 이혼 -부: 장애인 -모: 무관심 -생활보호대상자	-비행친구들 많음 -현재 노력중 이나 가끔 안 나고 있음	-중퇴 가정형편상 검정고시학원 다닐 수 없음	-4호처분 1회 -6호처분 1회	-딸부자집 -체과제빵학원 수강중 -취업 준비중
4	17	-재혼부모가 양육 -부: 건어물도매상 -모: 계모	-찾은 가출 비행 친구들 많음 -교제 두려움	-중퇴	-단기 6호처분 (절도)	-딸부자집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진학예정)
5	17	-부모 이혼 -부: 재혼,개인택시 -모: 의류가게 -現, 오빠,모와 함께 생활함	-비행청소년 -불량교우와 접촉이 가장 두려움	-중퇴	-선도유예 6개월(폭력) -1,3호처분 폭력(2회) -6호처분	-딸부자집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진학 예정)
6	17	-부모 이혼 -부: 공장취업 -모: 가출 부,남동생 함께생활	-가정대정결핍 비행친구 많음 -대부분 이성 비행친구	-중퇴	-4호처분 -6호처분 -現, 가퇴원	-딸부자집 -체과제빵학원 수강중 -자격증취득후, 취업할 계획
7	16	-부모 이혼 -부: 청각장애인 -모: 계모	-명량한 성격 -경제 어려운 비행친구多, (원조교제 등)	-중2퇴 -영어 수상경력 -고입 합격	-6호처분 (특수절도)	-딸부자집 -미용학원 수강중
8	17	-부모 이혼 -부: 종국집 요리사 -모: 연락 안됨	-비행친구 多 -이성관계 多	-중2퇴 -실용영어5급 -고입 합격	-기소유예(폭력) -6호처분(폭력) -7호처분(폭력)	-예향이네집 -미용자격증 취득 -현재 취업
9	17	-부모 이혼 -부: 아내구타 심함 -모: 재혼 모,자매, 오빠 생활	-규범거부경향 -찾은 가출 -現, 비행친구 다수	-중2퇴 -고입 합격	-기소유예(폭력) -1,3호처분 (폭력) -6호처분(폭력) -7호처분(폭력)	-예향이네집 -피부미용 자격증취득, 수상경력
10	17	-부모 이혼 -부: 택시 (방임적 성격) -모: 가출, 체벌심함 재혼한 부모, 계모	-대인관계 의존적 -비행친구다수 -음주, 흡연, 성	-중2퇴 -고입 합격	-기소유예 (특수절도) -4호처분 (사문서부정) -7호(절도미수)	-딸부자집 -컴퓨터자격증 -대입준비 중

2) 소년원 생활 관련 질문

소년원 퇴원 전후의 생활변화, 소년원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소년원 생활의 가장 좋은점으로 들었고, 폭행이나 고참과 신참과의 서열문제 등 동료들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소년원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질문내용을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V-4> 소년원 생활의 장·단점

	소년원 생활의 장점	소년원 생활의 단점
응 답 내 용	1. 규칙적이고 안정된 단체생활 2. 다양한 접근가능한 교육 기회 (검정고시, 취업자격증 등) 3. 비행친구들과의 단절 (시설의 특징 덕분에 단절됨) 4. 선생님 등 정서적 지지자 얻음 (상담, 고민해결 등을 의지함) 5. 문화활동, 사회봉사 등의 경험 (공연관람, 악대반, 노인정, 축구 등)	1.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폭행, 서열(고참/신참) 등의 문제) 2. 단체생활, 단절된 생활 (규칙, 기상취침시간 등의 제약) 3. 인간성 무시 경험 (호칭, 대우방식, 태도 등의 문제) 4. 적성과 맞지 않은 교육과정 (원하는 과정과 일치되지 못할 때) 5. 퇴원 이후 소년원 경력의 발각 우려

<표V-4>에서 제시된 것처럼, 소년원생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사회와의 단절’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즉, 규칙적이고 안정된 단체생활은 곧 불안정한 가족, 비행친구 등과의 단절의 의미였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뷰-9>는 이러한 소년원 생활의 장·단점을 잘 드러내준다.

소년원에서는 걱정할 게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허락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격증도 많이 딸 수 있고요. 검정고시·수능도 볼 수 있고요. 자기 꿈을 개척해 가기에 좋은 곳이지요. 괜찮긴 한데.... 일단 무엇보다도 답답하다는 거가 문제죠. 같혀 있으니까요. 여기 시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저한테는 이곳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해요<인터뷰-9, 보호관찰범 위반, 21세, 남>

또한 ‘학력’과 ‘취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모든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인터뷰-10>처럼 소년원 생활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청소년의 경우, 직원(담당교사, 상담, 자원봉사 등)과의 정서적 관계(믿음, 관심, 기대 등)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소년원 생활시 가장 좋았던 점은 청와대 초청방문, 예절교육, 축구대회 등 주로 문화·여가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검정고시 공부해서 자격증을 얻은 게 가장 보람 있었어요. 공부할 때는 귀찮았고, 하기 싫어서 겨우겨우 했는데 합격하게 되니까 기뻐요. 강제로라도 할 수 있게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고마웠어요. '예술의 전당'에 가서 뮤지컬 관람했던 일이 가장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담임선생님이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어요. 그래서 겨우 자포자기에서 벗어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인터뷰-10, 6호처분, 16세, 여>

<인터뷰-11>처럼, 소년원 생활의 단점은 소년원 내부 하위문화(폭행, 언어, 서열 등)를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단절된 공간과 규칙적인 생활, 인간성 무시 경험, 적성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또한, 퇴원 이후 소년원의 경력이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지옥이었죠. 처음엔 신입이니까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그래도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미운 점이 들어서 한번 찾아갔었어요. 소년원 생활이란 게 그냥 잘 살다가 하루 아침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웃음) 하니까 힘들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기계처럼 생활하니까요. 좋았던 거는 단순하니까 좋았어요. 두번 체육대회에서 이기고 그런 거 좋았어요.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싫고 그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좋고 너무 나빠지지 않고, 또 단체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그러니까요<인터뷰-11, 1·3호처분, 6호처분, 19세, 남>

한편으로는 소년원의 경우, 단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소년원 수감 기간 동안 가족의 면회, 자원봉사자 등 ‘사회’와의 접촉도 이후에 정서적인 변화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현재의 문제상황 및 시설이용에 관한 의견

(1) 당면 문제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현재의 문제상황은 <표V-5>에 제시된 것처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표V-5> 현재의 문제상황 및 지원에 대한 요구

	현재 직면한 문제상황
응 답 내 용	1. 경제적 어려움(가족, 학원비 등 모두 부족함) (취업보조금, 학원보조금 등 지급, 아르바이트 소개 등이 필요함)
	2. 가족과의 재결합의 문제(경제적 문제>정서적 문제 순으로) (돌아갈 주거지가 없음, 비행경험 전후, 관계회복의 어려움)
	3. 재비행 우려와 비행친구와의 단절 자신감 부족 (공간적 단절, 시간적 단절, 강제성 있는 목표나 상담자 필요)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은 소년원 퇴소 시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가족의 경제적 지지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시설에 입주하기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취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시설들이 '학업준비'와 '취업준비'로 나누어서 각각 학원비와 차비, 용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다음 <인터뷰-12>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우 학원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힘든 거는 '돈'이에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니까요. 학원비 23만원은 나와요. 수험생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용돈도 한달에 8만원 정도 나오는데, 차비하고 밥값하면 없어요. 가끔 걸어들 때도 있어요. 자매결연하신 분들이 2명 정도 되는데요. 감사하지만 지속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늘 불안해요<인터뷰-12, 보호관찰법 위반, 21세, 남>

또한 <인터뷰-13>과 <인터뷰-14>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명당 지급되는 돈의 항목도 제한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더 큰 것 같다. 대부분의 시설 거주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다른 경제적 후원자나 지원단체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저는 지금 중1으로 일반학교 다녀요. 근데 일주일에 용돈이 3천원이예요. 1년에 천원씩 올려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고등학교 되면 6천원이잖아요? 매점에서 뭐 사 먹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 가진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반에서 핸드폰 없는 애들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 거만 있어도 애들한테 안 꿀릴 것 같은데...<인터뷰-13, 4호 처분, 15세, 남>

기능사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통비(8만원)라고 용돈은 받고 있는데 부족해요. 사고 싶은 것(악세사리, 옷)을 사지 못해서 안타까워요<인터뷰-14, 4-6호 처분, 17세, 여>

셋째, ‘재비행의 우려’인데, 재비행의 경우는 비행 친구와의 단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재범의 상황은 공간적, 시간적, 강제적 단절이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공간적인 단절의 경우는 다른 도시로 이주를 통한 해결방식이 가장 많았다. 어떤 청소년의 경우는 소년원의 입소경험은 없지만, 반복범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해 시설에 보내진 경우도 있었다. 시간적 단절은 같이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이 모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간(약 2~3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제적 단절은 정서적 지지자나 목표를 통한 단절이다. 청소년들이 대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상담 및 해결을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상담의 경우는 대개는 재비행과 연관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 등을 통해서라도 단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 시설이용에 관한 의견

다음으로 시설이용에 관한 의견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한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다음 <인터뷰-15>에서 처럼, 응답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년원을 퇴원한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빠에게 제가 생활비도 보내 드려야 되구요. 그래서 지금도 딸부자집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시설은 저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인터뷰-15, 중장기 7호처분 18세, 여>

이용의사가 있는 이유는 첫째; 집이 있어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과 갈등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셋째; 재비행의 우려가 있는 이전에 거주지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규제’가 보다 완화된 자유롭고 따뜻한 ‘일반 가정같은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4) 시설생활 환경 및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1) 시설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

먼저 시설생활전반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들처럼’, ‘가족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응답했다는 점이다. 소년원을 퇴원한 청소년들의 상황은 갑자기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자유롭지만, 이내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에 낙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과 원조를 바란다.

하지만 ‘소년원’과 같은 강제력, 단절감, 규칙성에는 이미 지쳐있는

상황이므로, 일반 가정의 청소년처럼 배울 기회와 독립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허락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시설 생활 전반에 관한 의견도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듯 하다. 이러한 심정은 <인터뷰-16>에 잘 드러나 있다.

소년원에서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워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정도이면 좋겠어요. 학원이나 취업처를 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위치가 좋아요. 규모는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였으면 좋겠어요. 5~10명 정도가 모여서 오손도손 가족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요<인터뷰-16, 1·3호처분, 6호처분, 17세, 여>

<표V-6> 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응답내용
위치	① 교통이 편리한 도시 ② 서울시 > 경기도 순으로 응답 ④ 지방도시별로 분산되어 수용 (해당지역 출신별로 시설 위치를 응답함)
규모	① 5~10명이 넘지 않은 규모 ② 가정같은 인원구성과 분위기 (어른 2명 + 청소년 5명 ~10명 정도)
식생활	① 직접조리+조리담당자 형태 (가정같은 분위기를 위해 직접조리가 가미된 형태) ② 식단구성 시 청소년의견이 반영되면 좋겠음
잠자리	① 2인 1실(1실에 3명 내외)
희망설비	① 컴퓨터(인터넷가능) ② 텔레비전(비디오 포함) ③ 운동기구(헬스기구, 축구화 등) ④ 오디오 ⑤ 상담실(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시설생활전반에 관한 의견은 위의 <표-6>에 정리된대로이다. 위치는 답답하지 않은 도시,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도시와 가까운 낯설지 않은 곳이 기준이 되었다. 규모는 가정과 같은 그룹홈의 형태로 외부

나 내부 모두 ‘시설’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식생활은 식단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랐으며, 때로는 직접 조리해 먹는 것도 원했다.

잠자리는 독방을 원하는 의견도 가끔 있었으나, 대개는 2~3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면서 형제자매처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 희망설비는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가장 필요로 했다.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 시설마다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꼭 설치되기를 바랐다. 또한 TV(비디오), 운동기구, 오디오 등을 설치를 바랐다. 즉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2) 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시설에서의 생활규칙이나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교사 등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수준은 <표V-7>에 나타나 있다. 먼저 생활규칙에 관한 요구사항을 보면, 생활에 관한 지나친 간섭을 반대하였다. 간섭보다는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나친 간섭과 제재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아서 오히려 반발 심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는 그 밖의 생활규칙을 잘 지키고 장소와 목적을 통보하면 허가해주길 원했다. 취침이나 기상시간의 경우도 취침을 좀더 늦추고 기상시간도 개별적인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주길 원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늦은 귀가시간,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이른 기상시간 식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생활규칙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정해지도록 처음부터 규칙작성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표V-7> 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응답내용
생활규칙	① 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반대 (술, 담배의 경우, 금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허용) ② 외출, 외박 허용 (장소, 목적 통지할 경우, 생활정수가 좋을 경우) ③ 취침시간, 기상시간 조정 요구 ④ 생활규칙을 작성시, 청소년도 참여해서 작성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자, 약속이라는 의미)
프로그램	① 학력획득 프로그램(학원비, 검정고시 등) ② 취업 프로그램(학원비, 취업처 알선 등) ③ 고민 상담자(목표설정, 실질적 해결책 제시 필요) ④ 각종 프로그램(심성, 종교) 대신 자유시간이 필요 (소년원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은 반대함) ⑤ 문화생활(캠프, 공연관람 등), 여가생활의 기회 필요 ⑥ 자매결연 프로그램(중산층 정도의 수준)
직원에게 요구사항	① 목표설정을 위한 대안 제시 ② 한 두번의 실수, 실패에 대한 관용적 태도 ③ 인간적 대우와 호칭의 문제 ④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함
수용기간	* 자립 시까지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수용 요구 ① 경제적 원인 (실질적인 재정적 지지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 현재 6~9개월은 학력, 자격증 취득에 모두 짧은 기간임) ② 가정적 원인 (가족과의 재결합시, 재정적·정서적 갈등 우려) ③ 비행접촉 우려 원인 (비행친구들과의 재접촉 우려,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는 최소 2~3년 정도의 단절이 필요)

둘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소년원’과의 차별화, 즉 규제
 는 줄이고 좀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준비나 취업준비학원의 경우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섞여서 받는 형태를 원했다. 시설 내에서 행하는 프
 로그램보다는 외부에 나가서 받는 학원강의나 할인쿠폰 같은 형태가
 더욱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어설픈 심성프로그램이나 강제력있는 종교프로그램 보다는,

여가활동, 공연관람, 스포츠, 문화생활 등 좀더 넓은 사회를 만날 수 있는 기분전환 프로그램을 가장 행복했던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수용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프로그램’이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일단 수용시설에서 퇴소하고 나면, 모든 도움·원조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성, 과시성 자매결연은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에 따뜻한 엄마 같은 아줌마와의 자매결연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 '자원봉사'나 '후원'하는 사람들도 와요. 자매결연까지 맺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기만 사주고 가 버려요. 행사 그 날만하고, 그 행사만 참여하고 가 버려요. 자기들끼리 참여했다는 '기분'만 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요? 애들 여기 나가고 나면 다 무관심해져 버리는데요. 솔직히 애들이 여기 있을 때보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지낼지가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도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인터뷰-17, 절도(집행유예), 20세, 남>

그리고 청소년들의 각자의 ‘필요’에 따른 자매결연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했다. 예를 들어, 일회성행사를 통한 음식물(고기, 쌀 등)보다는 책이 필요하거나, 운동기구를 원했다.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문제(부모의 생계, 부모의 건강 등) 등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처우’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셋째, 직원에게 요구사항은 대안있는 상담, 관용적 태도, 인간적 호칭, 대화하는 시간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 생활은 일반 가정하고 똑같아요.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엄하게 야단치는 아버지도, 감싸주는 어머니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모든 게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나이 또래 애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주면 좋겠어요. 규칙이나 규제보다는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인터뷰-18, 1·3호처분, 6호처분, 여, 18세>

응답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아빠처럼’, ‘엄마처럼’, ‘가족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관리자-대상자와의 관계가 아닌, 보다 친밀한 정서적인 관계를 원했다. 또한, 부정적인 징계성 짙은 상담태도보다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담태도를 원하기도 했다.

넷째, 수용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의사에 맡겨 수용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인 원인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컸다. 대개는 소년원에서 퇴소할 시기가 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는 각종 시설에 수용되게 된다.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6~9개월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단칸방이라도 마련할 돈을 벌려면 적어도 5~6개월은 일 해야 되요. 적어도 나갈 곳이 생길 때까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인터뷰-19, 7호 처분, 18세, 여>

될 수 있다면 본인이 있고 싶어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가든 취업처로 가든 간에 나갈 곳이 있을 때까지는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가도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지만,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 중에서 여기를 나가면 제대로 잠 한숨 잘 곳도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나쁜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인터뷰-20, 6호 처분, 18세, 여>

소년원 내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수용시설’에 대한 정보가 교류되고 있지만,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기 때문에 더욱 불안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인터뷰-21>의 내용을 보면, 소년원 퇴소 직전에 ‘수용시설’을 선택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

소년원에서 나갈 때쯤 되면 갈 데가 없는 애들은 서로 이야기해요. 종교집회 분들도 자주 오니까요. 애들 사이에 어떤 기관은 어떨다느니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급하니까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종교시설에도 있어봤는데, 종교시설보다는 일반시설이 더 제게는 맞는 것 같아요<인터뷰-21, 집행유예, 21세, 남>

그러므로 수용기간과 아울러 소년원 퇴소 이후에 자신에게 맞는 수용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충분히 알리고 기관 간의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또한, 한 두번의 실패나 실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년원 입소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실패의 경우에 손쉬운 방법(재비행, 범죄 등)과 돈에 대한 유혹이 다른 무엇보다도 큰 것 같았다.

5) 향후 계획

앞으로의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부분이 중퇴 정도의 학력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학력은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했다. 둘째,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취업능력과 취업처 알선이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대학도 가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방황을 하게 되요. 자신도 없어지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의지와 힘을 주면 좋겠어요. 취업도 해야 해요. 작은 회사에서 경리사무원으로 야간대학에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누군가 너무 강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인터뷰-22, 폭력, 1·3호, 6호처분, 17세, 여>

이렇게 2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의 시간까지 적어도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두 가지의 현실적인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랐다. 요컨대 범죄친구들과 단절되고, 가족과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계획이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재직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와 중간처우시설을 직접 이용하게 될 대상자들은 향

후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와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일반가정의 분위기

현장전문가와 대상자 모두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방향을 언급함에 있어 일반가정과 같은 분위기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시설의 규모나 적정 수용인원 및 시설설비 측면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는데, 중간처우시설의 규모에 관하여 소규모 그룹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적정 수용인원에 있어서도 3~5명 정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며, 가능한 가정적인 형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서도 대개의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모처럼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설설비가 낙후되지 않고 최소한 ‘중산층 일반가정’ 정도의 설비를 갖춘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문화 및 여가생활을 가능한, 청소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시설이 설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청소년들도 시설생활 전반에 관한 그들의 요구사항에서, ‘남들처럼’, ‘가족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소년원과 같은 강제성, 단절감, 규칙성에 지쳐있는 상황으로 일반 가정의 청소년처럼 배울 기회와 독립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허락되기를 희망했다. 그들 역시 중간처우시설의 규모로 가정과 같은 그룹홈의 형태를 요구했으며, 외부나 내부 모두 ‘시설’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다. 잠자리도 2~3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면서 형제자매처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를 원했고, 희망설비도 중산층의 일반가정에 있는 TV, 비디오, 오디오,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등을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가정적인 느낌과 분위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2) 자유의지에 기초한 시설생활 규칙

전문가들은 시설 내의 생활규칙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상, 취침, 복귀시간 등 일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규칙을 감안하여 가능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출·외박의 경우는 장소와 시간을 보고하고 귀가시간도 규칙을 정한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담당자들과 청소년 ‘자치회’ 등에서 자율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들의 생활규칙에 관한 요구사항을 보면, 생활에 관한 지나친 간섭을 반대하였다. 간섭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도움이 되며, 지나친 간섭과 제재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아서 오히려 반발심리가 생긴다는 의견이었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도 그 밖의 생활규칙을 잘 지키고 장소와 목적을 통보하면 허가해주길 원했으며, 취침이나 기상시간의 경우도 개별적인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주길 원했다. 이처럼 세부적인 생활규칙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정해지도록 처음부터 규칙작성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되, ‘공동생활’이라는 특수한 측면이 결합되어야 한다. 중간처우시설은 일반 ‘쉼터’와는 구별되는 연속성을 가진 시설이므로, 그에 걸맞는 생활규칙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술·담배는 기본적으로 금지한다거나, 이탈이나 동료폭행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주어져야 하겠다.

입·퇴소 절차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

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재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현실에 개입하는 수준을 점차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입소는 과거 무단이탈 2회 경험자는 시설 이용 제한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퇴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개별처우형식으로 퇴원생들의 사후정착 정도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효율적 인력구성 및 인력의 전문화

상담 및 현장실무담당자, 행정인력 및 조리사 등 생활지도 전담 인력과 보조인력 혹은 상주인력과 출퇴근인력 등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주인력은 청소년들의 인격·생활 교육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며 생활전반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출퇴근인력의 경우는 행정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주인력의 경우, 일반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부부가 ‘부모역할’을 하는 형태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의 중간처우시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부소사제”이다.

청소년들의 직원에 대한 희망사항도 자신들의 생활 전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었으며,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태도가 아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며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도자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상주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하며, 이들의 업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4) 체계화된 프로그램

현재 중간처우시설은 ‘가정’과 같은 형태를 지향하며, 비교적 심리적 안정감이나 편안함, 유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회재적응을 도울만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내용별로 학력취득과 취업, 사회적응, 여가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 개개인들의 연령과 적성, 성별, 비행별(특히 약물남용), 청소년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이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연계해서 정상적인 학교의 등하교를 우선시하고, 기본교육과정을 수업받고 귀가하는 훈련, 스스로 하는 생활계획수립훈련, 가족과의 재적응 훈련 등이 적절하다. 청소년기는 ‘목표설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설 청소년들의 경우 목표설정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의 수요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프로그램이 오히려 또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요구조사에서도 무엇보다 ‘소년원’과의 차별화, 즉 규제는 줄이고 좀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준비나 취업준비학원의 경우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섞여서 받는 형태를 원했으며, 시설 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외부에 나가서 받는 학원강의나 할인쿠폰 같은 형태를 원했다. 또한, 어설픈 심성프로그램이나 강제력있는 종교 프로그램 보다는, 여가활동, 공연관람, 스포츠, 문화생활 등 좀더 넓은 사회를 만날 수 있는 기분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수용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 개발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소년범죄자 및 중간처우제도와 시설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와 정책대상자 수요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정책을 수행해 나갈 집행자와 실질적인 운영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정책수혜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커다란 개혁을 시도한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단 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고, 그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퇴원 후 재범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마다 6천명이 넘는 소년들이 6호나 7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하고 있고, 그 중 4천명이 넘는 소년이 가퇴원 혹은 만기 출원하고 있지만, 복귀할 가정이 마땅히 없는 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돕기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현재 3곳에 불과하며, 수용가능한 인원은 30명 정도이다. 소년원의 교정복지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소년범죄율 및 재범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사후지도 및 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결과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실정을 감안 할 때, 청소년 전용 중간처우시설의 확대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양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질적인 서비스 측면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중간처우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처우기능을 높이기 위

해서는 국가가 제도측면과 예산측면의 충실을 꾀하는 것과 함께 갱생 보호시설에 새로운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해야 하고, 보다 전문적인 처우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혹은 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 촉진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 시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무부 보호국의 소년과와 보호관찰과 및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들의 일원화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해야 하며,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처우기능 충실화를 꾀하는 시점으로부터 향후에 행할 과제와 그 대응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가칭 “갱생보호시설의 처우기능 내실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년도 단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범 제도측면, 설비측면, 예산측면 및 운영측면의 효율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각 시설에서는 개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중점목표를 설정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 “갱생보호법”에 따라 숙식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여비지급 등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갱생보호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갱생보호시설의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시설의 경우 다른 민간시설의 모델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신장애자 및 약물중독자 등 처우곤란자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가 가능하므로, 처우곤란자에게도 가퇴원을 앞당기고, 비교적시설적인 처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숙식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간처우시설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어 범죄소년의 사회재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국영갱생보호시설의 설립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측면에서는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처우기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의 확보, 시설 설비의 현대화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체계 하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갱생보호시설의 처우기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시설직원의 전문화된 능력 신장에 노력해야 하지만, 다양한 직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에게 갱생보호시설의 처우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의사, 변호사, 상담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질적으로 향상된 갱생보호시설의 처우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관 부처 및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범죄소년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법무부내에서도 범죄소년 관련 기관인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범죄소년의 처우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범죄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재통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거시적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 제언 :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 개발

1)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 방안

(1)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그룹홈

① 중간처우시설의 규모 및 적정 수용인원

중간처우시설의 규모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소규모 그룹홈이 가장 효율적이다. 적정 수용인원은 5-7명 정도로 일반 가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별 배치인원도 2명 정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중간처우시설의 규모는 소규모 그룹홈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룹홈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상태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다. 그룹홈의 일반가정과 같은 분위기는 특히 저연령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유익하고, 시설생활의 장기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순환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도 시설환경을 이야기할 때, ‘남들처럼’ 혹은 ‘가족같은’ 분위기를 청소년들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그룹홈이 고비용이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규모시설 내에 소규모 그룹홈 몇 개를 두는 절충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소숙사 형태로 그룹홈에 비해 예산 절감과 공동·집단 생활의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간처우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소규모시설 그룹홈의 경우, 5-7명 정도의 일반가정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전문가가 3-5명이 이상적이며, 최대한 15~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룹홈 몇 개를 합쳐 놓은 ‘절충형’의 경우는 5명 정도의 그룹홈 5-6개가 있는 25-30명 정도가 적절하며, 이들은 생활 및 취사는 각기 독립적으로, 집단활동이나 교육은 공동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방별 배치 인원은 두 가지 유형 모두 호실당 2명 내외가 이상적이며, 범죄유형별, 연령별(고연령, 저연령), 인성별(적성검사 등을 실시해 구분)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리직원의 경우도 1인당 청소년 2~3명, 많게는 3~4명 정도로 일반적 가정형태에서 부모역할과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다.

② 중간처우시설의 설비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 적절한 통제와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요구도 반영되어야 한다. 개별침실과 인터넷이 장치된 공용PC 및 운동기구,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 정도의 공간확보와 생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 ‘부모처럼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도 필요한 청소년들이므로 시설의 담당자에게 형식적, 법적 통제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실제로 시설 내부의 배치의 경우도 담당하는 직원과 학생들의 분리와 결합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

설비품목은 쇠창살, CCTV, 잠금장치, 외부벽을 이용한 방호시설, SOS시설 등의 통제장치는 외관상으로 수용시설처럼 비쳐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설비는 개별 침실, 공동거실, 공동취사장, 개별 건조대, 상담실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구비물품으로는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소화장치, 개인사물함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을 설비 할 때,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컴퓨터(인터넷 포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이 성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땀흘려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서에 걸맞는 음악감상, 독서 등의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설설비가 낙후되지 않고 최소한 ‘중산층 일반가정’ 정도의 설비를 갖춘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청소년들 스스로 자부심과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시설의 위치 선정

시설의 위치는 청소년들의 취업, 학원수강, 학교수강이 원활한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을 선정하되, 변화한 대도시의 중심가는 재비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중간처우시설은 청소년들의 ‘재사회화’와 ‘사회적응’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취업, 학원수강, 학교수강이 가능하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하며, 일반주택지에 설치해서 주민과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 등 사회간접자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효율적인데, 가능하다면 지역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문화센터, 복지회관, 여성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인근에 위치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간처우시설이 지나치게 변화한 대도시에 중심가에 위치하는 것은 재범의 유혹이 많으므로 피해야 하며, 반대로 주변과 격리된 곳은 단절감과 지루함을 느끼게 하여 결국 시설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대안으로는, 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시설을 설립해서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도시-중소도시-농촌으로 일정기간 교체해가며 거주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정부주도의 민간 위탁 운영

① 시설의 운영주체와 재정지원 형태

중간처우시설은 정부가 종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 복지단체 등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지원은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의 형식이 적합하다.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시설에서 예산집행이 청소년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시설은 정부가 주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되, 지원금은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 적합하다. 국고지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호비, 시설비, 운영비 등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일부지원의 경우, 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 및 기부금, 시설 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비와 자체수익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재정,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시설 운영과 재정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일부 갱생보호시설에서처럼, 청소년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내도록 함으로써,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시 주의할 점은 먼저 재정지원항목이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 청소년들의 문화적 요구 수준도 고려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예산집행 항목이 단순화되어 융통성 있게 자금이 운영될 수 없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② 입·퇴소 절차 및 적정 수용기간

중간처우시설의 입·퇴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되, 입소는 이전 무단이탈자에 대한 제한 요건을 두고 퇴소는 개인의 사후정착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적정 수용기간은 6개월~2년 정도로 하여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퇴소 절차는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입소는 과거 무단이탈 2회 경험자는 시설 이용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퇴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개별처우형식으로 퇴원생들의 사후정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퇴소 기준은 시설운영자, 퇴원생, 기타 관계자의 협의 하에 수용 대상자의 정체성 및 판단능력, 자활·자립능력을 고려해 퇴소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친척 또는 취업처가 확정될 때 그에 맞춰 퇴소시키는 것이 재비행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

퇴소와 관련하여, 시설에 머무는 적정 수용기간은 6개월~2년 정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년원 퇴원생들의 연령은 13~20세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수용기간으로는 원만한 사회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용기간은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용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만 20세라는 연령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유동적인 시설 내 생활규칙 및 체계화된 프로그램

① 시설 생활규칙

시설 내 생활규칙은 일반가정생활 정도의 생활규칙이라는 원칙 하에 공동생활의 특수한 측면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취침, 기상, 복귀시간 등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과 이탈, 동료폭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유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시설 내의 생활규칙은 ‘일반가정생활’ 정도의 생활규칙과 ‘공동생활’이라는 특수한 측면이 결합된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중간처우시설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시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진 시설이므로, 그에 걸맞는 생활규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는 술·담배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전면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금연·금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타 기상, 취침, 복귀시간 등은 일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규칙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담당자들과 자율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외출이나 외박, 취침, 기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었으며, 지나친 간섭과 제재 부담을 피력했다. 한편, 이탈, 동료폭행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주어져 강력히 통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②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시설에서는 범죄 청소년 개인의 연령과 적성, 성별, 비행별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력취득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심성훈련 프로그램 및 봉사·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이 형식적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청소년들의 수용·보호에만 그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에서는 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울만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별로 학력취득과 직업(취업), 사회적응, 여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개인들의 연령과 적성, 성별, 비행별 등 개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학력취득 프로그램의 경우, 대개의 청소년들이 일반 정규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자퇴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함으로써 학원교육,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인내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시 된다. 예를 들어, 학원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와 통학을 위한 교통비 및 간식비 등 학원 수강에 필요한 경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강비만이 책정이 되어 교통비와 기타 잡비는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직업교육이나 심리적성,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도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거나 적당히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 진행이 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효율적 인력구성 및 인력의 전문화

① 인력구성의 효율화

시설의 직원은 청소년들의 사회재적응을 직접 지도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시설내부에 현장실무 담당자와 보조인력 혹은 상주인력과 출퇴근 인력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인력구성의 체계를 갖도록 한다.

중간처우시설의 인력 문제는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청소년들의 사회재적응을 직접 지도하며 교정(correction)의 질(quality)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전국중간처우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기관이나 부서가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이 기관을 통해 후원자, 자원봉사자, 실무담당자 등을 지역별로 안배하고 운영자와 전문인력을 중개하는 것이다.

중간처우시설 내부의 경우, 현장실무담당자, 관련교육 이수한 보조인력 혹은 상주인력과 출퇴근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현장실무담당자들의 경우,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화를 축적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② 인력의 전문화

시설에 상주하는 인력은 청소년의 생활전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로 두고, 출퇴근 인력은 행정인력과 자원봉사 인력으로 배치하여 전문화된 인력구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과 함께 시설에 상주하며, 청소년들의 인격·생활 교육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생활전반교육을 담당 상근 인력은 전문 사회복지사로 배치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중간보호시설의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일반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

직하다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부부가 ‘부모역할’을 하는 일
본의 중간처우시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부기숙사형” 형태도 고
려해 볼 만하다.

한편, 출퇴근인력의 경우는 행정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하
되,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도 이들이 자긍심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학
점제, 가산점제 등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별로 중간처우시설
이 설립될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일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지자체장으
로부터 위촉장이나 졸업장 등을 수여받도록 하여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5) 시설의 개축 및 확대화

① 4호처분 수탁시설의 중간처우시설 전환

현재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4호처분 수탁시
설 중 소년보호시설을 소년원 가퇴원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
처우시설로 전환하여 4호처분 수탁시설이 불우청소년시설화하는 것을
막고 4호처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앞서 소년수탁시설의 운영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4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위한 시설내 처우는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전액 재정지원으로 철
저한 관리감독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 설비 면에서 비
교적 양호한 편이나, 소년보호시설의 경우 법무부의 일부 재정지원
으로 운영되어 인력이나 시설환경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취약하여 6호나 7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소년과 비교할 때, 학력취득과 자격증 취득에서 불
리한 입장이다. 6호나 7호처분을 받은 소년보다 경미한 죄를 범해 4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오히려 교정처우의 면에서는 낙후된 서비스를 받

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4호 처분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며, 4호처분 수탁시설을 중간처우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4호처분 수탁시설 중 소년보호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을 좀더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들을 위한 중간처우시설로 전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중간처우시설의 확대

현재 3개 시설에 불과한 소년원 가퇴원자 및 퇴원자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매년 4천명이 넘는 소년원생이 가퇴원 혹은 퇴원하는데 비해 이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중간처우시설은 3곳으로 30여명 정도의 수용능력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한 시설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청소년 전용 중간처우시설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매년 소년원을 입원하는 범죄소년은 6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퇴원 및 가퇴원자도 2000년에 4천 6백명을 넘어서는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 비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갱생보호시설이 3곳 밖에 없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자청소년 전용 갱생보호시설은 3곳 중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11개 소년원 중 1개 소년원 만이 여자청소년을 위한 소년원이고 나머지 10개 소년원은 남자청소년을 위한 소년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범죄소년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처우시설 혹은 갱생보호시설은 현실적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조속한 확대가 어려울 경우 기존의 시설(예를 들어 4호처분 수탁시설 등)을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소년범죄자를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재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보호관찰위원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 곳에서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년범죄자를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년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와 “갱생보호공단” 및 “보호관찰지도위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소년원의 사후관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원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갱생보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간처우시설에서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소년범죄자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에 의한 사후관리는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관찰원의 지나친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히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명예나 기타 허울좋은 감독으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고, 실제 보호학생을 위한 선도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후지도 및 관리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년범죄자를 전담하여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가 필요하다.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새로운 제도 혹은 기구를 계속 신설해 나갈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나 기구에 통합하여 일관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소년범죄자를 위한 질적 서비스 제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2) 효율적인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현재 소년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관련 부처 및 보호관찰소,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중간처우시설 등 관련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기관별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법무부 산하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하나의 ‘부서’를 신설하여, 범죄소년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관련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사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의 공유와 객관화된 자료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서 각 기관들의 경험과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소년원 입소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소년원’ 수용 시 관계를 맺었던 담당자와 사후관리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관별 통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보호시설과 관련 기관들의 대표자나 실무자로 이루어진 채널이나 ‘협의체’(가칭 ‘청소년 사후관리지도위원회’ 등)를 구성해 각 문제를 조정·협의하며 정보교류를 추진해 가는 것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혜규 외(2001). 사회복지인력의 수급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재욱(1990). 소년원 직원 훈련 이수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교정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승오(1994).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혁무(2000).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강원대지역개발연구.
- 권현숙(1996).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귀숙(1985). 무의무탁한 비행청소년의 직업보도와 직장적응에 관한 연구. 숭전대 석사학위 논문.
- 김경혜(2000).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상준(1996).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1991). 비행청소년의 사회내 처우제도에 관한 과제 분석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응석(1995).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준호 · 이순래(1994).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0).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2).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열(1993).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가출청소년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노성호(2000).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처우제도 : 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승월(2000). 교정에의 민간참여 현황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호 외(1993).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병식·전경숙·윤옥경(1999).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태영(1994).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박태영(1995).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백산출판사.
- 박태홍(1999). 비행청소년의 보호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1996).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2001). 보호관찰 실무연구 논문집.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 법무연수원(2000). 범죄백서.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시설현황.
- 염규성(2000).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서비스 방안 : 소년보호제도

- 개선을 중심으로.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백철(1995).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개발원.
- 이수성(1990).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청소년범죄 연구 제8집.
- 이용교(2000).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오늘의 청소년. 150호. 24-28.
- 이윤호(2002). 사회복지관에서 교정복지의 활성화 방안. 동광 제 98권, 한국복지재단, pp. 37-61.
- 이재상(1995).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제17회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안경옥(1995).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정수 외(1990).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이태연(1990). 보호관찰의 실시방법에 대한 고찰. 부산외대논총(8).
- 이혜원(1990). 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연구논문집 제18집. 216-238.
- 이훈규(1996).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훈규·김성언(1996).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종진(2001).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처우실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진(1999).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망 및 사회적 지지 비교.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규원(1996).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경숙(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경숙(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대양(1998). 사회내 처우의 과제와 전망. 교정261.

- 조기성(2001). 소년원의 학교화 정책이 원생의 교정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1997).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 : 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중앙승가대 불교와 사회복지2.
- 지승희(2001).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 연구 1. 한국청소년상담원.
- 차용석(1998).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7집.
- 최 순(1998).公安사법연구4: 한국의 교도행정에 있어서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公安사법연구소.
- 최인섭 외(1993).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일수(1999). 우리나라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일본문헌>

- 『平成13年度 社会福祉・医療事業団子立て支援基金助成事業 : 更生保護施設入所少年等にて対する処遇連帯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中間報告書)』(2001), 更生保護法人全国更生保護法人連盟.
- 更生保護法人全国更生保護法人連盟(2001), 「参考資料: 統計にみる更生保護施設における少年処遇」, 『平成13年度 社会福祉・医療事業団子立て支援基金助成事業 : 更生保護施設入所少年等にて対する処遇連帯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中間報告書)』, pp60-72.
- 小林淳雄(2002). 『犯罪と非行』, 「特集 更生保護施設 : 更生保護施設の概要と今後の展望, 日立みらい財団, pp85-
- 守山 正(2001). 『更生保護施設のあり方. in: 更生保護施設入所少年等にて対する処遇連帯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中間報告書)』, 更生保護法人全国更生保護法人連盟.

- 近畿弁護士会連合少年問題対策委員会 編(1999). 非行少年の処遇. 明石書店.
- 山田勘一(2002). 犯罪と非行(特集 更生保護施設): 処遇の差異と内容(長期刑仮出獄者中間処遇現在, そしてゆくえ, 日立みらい財団).
- 日本更生保護法人 東京保護観察協会(2002). 敬和園要覧.
- 日本更生保護法人 東京実華道場(2002). leaflet.
- 日本児童自立支援施設 大阪市立 阿武山学園(2002). 概要.
- 太田達也(2002). 犯罪と非行(特集 更生保護施設): 更生保護施設における処遇機能強化の課題と展望. 日立みらい財団.
- 鶴田俊男(2002). 犯罪と非行(特集 更生保護施設): 更生保護施設と地域社会との交流(子育て支援活動について), 日立みらい財団.

<영미문헌>

- Allen, Harry E. and Latessa(1978). *Halfway House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uckland, G. & Stevens, A.(2001). *Review of effective practice with young offenders in mainland Europe*, European Institute of Social Services.
- Clive Begg(1990) *The Halfway House - A Program for Currently Serving Prisoners*. in : *Keeping People Out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
- Duggan, Vaughan(1990). *Youth Training Centres in Victoria*. in : *Keeping People Out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
- Dölling(1992). *Sanktionen ohne Freiheitsentzug*, ZstW 104.
- Fragen, J(1990). *Treatment and reintegration of violent juvenile offenders* : Experimental Results, Jus Q. 7, 233-263.
- Kidney, R(1991). *Aftercare in the Nineties, Keeping People Out*

-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no.11),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ight, M.(1999). *The Uncle Project : A Community Based Support Program For Young Boys*, The Conference Crime in Rural Australia convened jointly by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Rural Development Center, University of New England, held in Armidale, 1 March 1999.
- McCarthy, Belinda Rodgers, Bernard J. McCarthy Jr., and Matthew C. Leone(2001). *Community-Based Corrections*. Fourth Edition. Wadsworth.
- Murphy, S. & Lawrie. S.(1991), *Community-Based Programs for Young People, Keeping People Out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no.11),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NACRO(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 (<http://www.nacro.org.uk/about/index.htm>).
- Ohlin, L. E, Miller, A. E, and Coates, R.B(1977). *Juvenile Correctional Reform in Massachusett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23-25.
- Smykla, J. O.(1981). *Community-based Correction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pp14~17.
- U. S. Bureau of Prisons(1973). *The Residential Center -Corrections in the Community*.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aughan Duggan(1991). *Youth Training Centres in Victoria, Keeping People Out Of Prison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7-29 March 1990(no.11),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2001). *Corporate Plan 2002-03 To 2004-5 and Business Plan 2002-3.*

Youth Justice board(2001).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New Youth Justice system.*

Youth Justice board(2002). *Youth Justice Board Annual Review: Building on Success*(Press Release).

Youth Justice board. <http://www.youth-justice-board.gov.uk/>

<독일문헌>

Dölling(1992). Sanktionen ohne Freiheitsentzug, ZstW 104.

부 록

부 록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범죄청소년의 사후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관련 각종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본원에서는 소년원생이 소년원을 퇴소한 후에,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개별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소년원생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재적응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년원생을 비롯한 비행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중간처우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수렴하여 교정복지정책의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갖고 계신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주시면,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연구책임자 : 전경숙 (TEL: 02-2188-8836, FAX: 02-2188-8829)

□ 귀하에 관한 일반적 질문

- 소속 : 소년원 () 사회복지시설 ()
- 재직 기간 :
- 담당 업무(직책) :
- 성별 :

중간처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①시설·설비, ②운영주체 및 재정, ③인력, ④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을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중간처우시설의 규모**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예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시설 그룹홈 : 독립적 단독가정 형태
- 소규모 시설 소숙사(small cottage) : 시설 내 몇 개의 가정형태 (생활·취사 분리 혹은 생활·취사 공동)
- 중간규모 시설 : 100명 정도 - 집단기숙사 (공동생활, 공동취사)
- 대규모 시설 : 150명 이상 - 집단기숙사 (공동생활, 공동취사)

2. 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중간처우 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3.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거실, 침실, 상담실, 목욕실 등 필요한 시설과 갖추어야 할 최소한 시설 장비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의견 및 통제 장치(쇠창살 및 잠금장치 혹은 SOS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의견>

4. 시설의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 주변시설과 격리된 곳에 혹은 인근시설과 근접한 일반 주택으로)

5. **시설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며,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정부주도 혹은 민간위탁)
<민간위탁일 경우 정부 지원금 규모(전액지원 혹은 일정액 지원) 및 효율적 예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십시오.>
6. **입·퇴소 절차 및 적정 수용기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입·퇴소 자유, 입소 : 자유, 퇴소 : 의무 등>
7. 시설 내에서 **생활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며,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할까요? (생활규칙의 강도, 외출, 술·담배 등)

8.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하여 중간처우시설에서는 대상자의 자립·재활능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까요?**

<연령별·대상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학력취득, 자격증취득, 결연사업 등을 고려하여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9. 시설의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의 어려움은 자주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중간처우시설에서의 **인력구성**에 대한 의견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예:후원자,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등) 및 **인력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피력하여 주십시오.

10. 현재 퇴소한 소년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호관찰, 갱생보호공단,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원화된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하고 각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11. 기타 중간처우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선생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5년 성별 여 업 무 생활복지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시설 그룹홈(시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 -적정수용인원 7-8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거실: 공용(식당+공부방), 침실: 3인(욕실) 상담실: 응접실과 겸용, 컴퓨터: 공용으로 인터넷 규제 냉장고, 세탁기, 잠금장치: 시설관련 기물, 공동공간은 반대 -시설의 위치선정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형(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운영: 민간, 종교단체 위탁, 지원금: 전액지원, 예산품목에는 융통성이 있도록 함, 결산보고는 정확하게 카드결제로 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퇴소는 정부기관과 연계, 6개월~1년 정도 개인의 행동 과 진로방향에 맞게 청소년 생활환경을 정비·개입함. 시설 의 운영과 개인의 안전과 자립을 고려해야 됨. -생활규칙 취침, 기상, TV시청, 인터넷사용, 외출 등 일정의 생활규칙 에 강압성을 떨 필요가 있음. 술·담배는 시설 내 금지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상주인력: 청소년 인격교육에 직접적인 관여하는 인력으로 생활전반의 교육 담당 + 출퇴근인력: 행정, 자원봉사자, 단 순노동부분에 이용(예)주방업무)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들의 연계성있는 교육을 통해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함. 기관의 목적과 수용되는 청소년들의 자립목적이 잘 맞도록 조정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청소년: 고입, 대입 준비, 심리, 학습능력향상, 독서, 인성 프 로그램, 장년: 인성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소공동체 가족의 형태로 가족체험 중심으로 운영이 중요함, 직원 중에 3명 이상은 24시간 근무를 통해 청소년들과 생활 을 같이 해야 함, 죄의 경중에 따라 개별적인 처우가 필요 함. 실제 운영에 맞도록 예산품목이 작성되어야 함.

<사례 3>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제직기간 12년 성 별 남 업 무 교과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중간규모시설, 소속사당 15명 내외로 5-7개의 소속사 -적정수용인원 70-80명 내외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침실, 인터넷설치PC(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 필수), 출입문 과 복도에만 CCTV설치가 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도별로 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으로 구성, 격리형보다는 주변 마을과 친화되도록 함.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시설이 필요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형이 가장 효율적임. 민간위탁일 경우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원은 의무, 퇴소는 일정수준에 도달한 자에 한해 3명 이 상의 처우심사를 거쳐 퇴원. 보호관찰처럼 연장조치 등으로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퇴원. -생활규칙 일과시간에는 엄격한 규칙준수(9-6시), 이후에는 최대한의 자유보장, 생활문란자는 보호관찰연장조치 등을 취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후원자발굴, 자원봉사자위촉 및 해촉 등 지역별로 안배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중간처우시설의 본부와 같은 총체적인 관리기관이 필요하 고, 전국적인 담당기관을 설치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사회봉사, 컴퓨터자격증 교육, 심성학습교육(예)한학, 사물놀 이 등), 체험학습(농촌체험, 북한주민체험, 병영체험 등)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재교육 실시, 부적응청소년에 대 한 보호관찰연기 등의 강력한 대응, 일정기간 이수 후 적 성·인성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직원의 잠 재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례 4>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6년 성별 남 업 무 교과담당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내에 가정같은 각각의 소속사 형태 -적정수용인원 최대 15명이 넘지 않도록 분배되어야 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기숙사형태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거실, 침실, 공부방, 상담실, 토론방 등이 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자유로운 입·출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이 편리한 도심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를 탈피, 민간위탁이 바람직함. 철저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예산의 차등지원이 바람직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재범의 요인이 되는 연령변수를 고려해 입원기간을 정하지 말고 상황에 맞도록 배려함. 다만 연령상한선 만 21세,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하도록 함. -생활규칙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입원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지정해 지키도록 유도함. 규칙위반이 심할 경우 퇴소조치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각종학회(심리, 가족, 사회복지 등)와 연계해 시간별 봉사 및 정기적인 자원봉사 등의 연계성을 구성해 재교육 실시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부처별로 나뉜 청소년관련업무를 통합해 청소년자원개발부 등으로 부서를 신설해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생활 속의 프로그램이 교육되고 실시되어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운영권자의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이 매우 중요함. 운영권자들의 의식의 변화와 교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사례 5>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10년 성 별 남 업 무 교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 중간규모 시설 운영이 바람직함 -적정수용인원 80명 내외, 호실규모 40개호실, 수용인원: 호실당 2명 내외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최소한의 시설장비, 안전장치는 방호시설 내 SOS제외하고는 필요하지 않음. -시설의 위치선정 양면적인 시설이 필요(도시중심 + 농촌같은 시설)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의 공직자로 구성, 민간주도시설의 단점은 재정적 주도권이 개인집중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6개월에서 1년 사이 -생활규칙 술·담배 절대 금지, 시설 내 이동, TV시청 등은 규칙을 두어 허용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인력부족: 대학교, 대학원 등 관련 과정의 학생들의 봉사를 학점취득과 연계해 인력부족을 해소함. 인력의 전문화: 전문 교육기관 훈련기회 부여,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포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사후관리는 소년원이 담당하도록 함. 보호관찰기능도 소년원에 통합해 인력확충 및 교육의 일원화를 꾀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교육기간(사회적응훈련+자격증 취득), 학력취득은 일반학교, 즉 전적학교와 연계, 검정고시 응시기회 부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실적위주 시설평가 경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고, 각 시설에서 독특한 교육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함. 외부요인(시설방문, 각종자원봉사활동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정부지원을 최대화하도록 함.

<사례 6>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5년 6개월 성별 여 업 무 상담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 -적정수용인원 10명 이내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초대한 편의시설 설치, 안전장비는 불필요함. SOS설비는 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청소년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곳, 문화·복지시설이 잘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사회봉사단체의 운영 + 정부의 보조금 지원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퇴소 자유, 입소시 수용기간 정함 -생활규칙 생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규제는 필요함. 외출은 허용하되 귀가시간은 규제.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책임자: 공무원 등이 주인력담당 + 지역단체, 종교단체 등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결합, 인력 및 경비지원 및 조달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통합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학력·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중간처우시설이므로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단계별로 자유의 단계를 구분하도록 함. 예를 들어, 외박, 외출 등 자유로운 생활규칙을 단계별로 구분함.

<사례 7>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9년 9개월 성별 남 업 무 학사사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 : 독립적인 단독가정형태 -적정수용인원 제2의 가정같은 인원, 10-20명 정도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최소한의 시설 + 컴퓨터, 오디오, 소화장비, 잠금장치 -시설의 위치선정 일반주택지에 설치해 지역주민과 동화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가능한 곳으로 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 + 정부의 인건비·시설유지비 지원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자유, 퇴소는 강제, 의무로 규정함 -생활규칙 시설의 출입, 부정물품(술, 담배 등) 등을 단속하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시 일정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지역의 인적자원(학교퇴직교사, 소년원퇴직교사, 학원강사, 가정주부(자격증 소지자) 등의 활용이 바람직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보호관찰소와 소년원학교,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합병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인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생활규범준수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정부의 간섭 최소화(비용부문감독, 교육부문감독), 종교의 간섭 최소화(레크리에이션, 포교활동을 최소화함).

<사례 8>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3년 10개월 성별 남 업무 서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공동취사, 공동생활 -적정수용인원 10-20인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공동생활시설을 갖추고, 개개인이 필요한 사적 물품은 개인이 마련토록 함. 안전장치(최창살 등)는 불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주변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주택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 + 민간운영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 자유, 퇴소 의무 -생활규칙 자유로운 공동생활 분위기(외출 자유, 외박 허가), 술·담배 등의 권고사항이되 타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전문인력을 직업공무원으로 채용+자원봉사자 유치 및 일용직·계약직으로 활용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별 연계를 일원화하도록 기관별 정보교류가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연령·대상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교과교육을 통한 학력취득,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적응, 생활습관교육프로그램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프로그램의 개별적 처우가 가장 중요함

<사례 9>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8년 4개월 성별 여 업 무 연구실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그룹홈(15-16세) + 소규모시설 소숙사(17-18세) -적정수용인원 10명 이내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2인1실의 개별생활실, 공동거실, 공동세탁장 및 건조대, 취사실, 상담실, 구급, 안전장치는 피함 -시설의 위치선정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내 시설이므로 주택가가 바람직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관리: 정부(50-70%의 운영비지급) + 운영: 민간, 예산의 보조금은 기업 및 각종 단체의 기부금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해 자연스러운 시설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자유로 해 시설과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되, 성별·연령별·재비행성 정도별 분류가 필요함. 이후는 입원과 퇴원 모두 개별처우형식으로 시설운영자, 퇴원생, 기타 관계자의 협의에 의해 퇴소를 결정하도록 함. -생활규칙 일반중고생의 기숙사의 생활규칙과 유사하게 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등도 입원생들의 자치회 등을 통한 자체적인 결정을 유도해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중간처우시설 전문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 관련 기금 조성해 상주인력과 자원봉사인력 모두 재교육을 실시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관련 기관별 연계를 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력·자격증 취득 등은 소년원과 국가관련 직업훈련원과 연계,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종교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과 결연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bigbrother, mentor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중간처우시설이 부정적인 이미지에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가진 미래설계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함. 정부지원금 등도 차등지원해 시설의 자체적인 발전과 경쟁을 유도해야 함.

<사례 10>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13년 성별 남 업 무 교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의 소속사형태, 소년원의 가정과 시설+정명재 시설의 절충형이 바람직함. -적정수용인원 20-30명 정도, 가능하면 10-20명 이하로 운영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SOS시설로 비디오폰 등의 설치로 학생들의 최소안전을 보장, 2인1실·4인1실 형태 -시설의 위치선정 소년원시설과 인접한 곳, 서울소년원의 정명재 시설(소년원의 주요 외벽 바깥으로 설치되어 있음) 등 참고할 수 있음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운영주체는 정부주도+운영책임자는 소년원 직원,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은 자원봉사자 및 민간인으로 자유롭게 지도하게 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소년원→가퇴원→중간처우시설→사회복귀로 이동하는 코스, 입·퇴원은 소년원 입·퇴원절차에 준함. -생활규칙 술은 자제할 수 있는 정도, 담배는 금연, 생활규칙은 질서를 해치지 않을 정도, 외출은 취침시간 이전에 복귀.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소년원담당인력: 중심진행자, 입안자, 행정처리자 등은 소수 + 개별 프로그램: 전공대학생, 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소년원생에 대한 보호관찰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실제로는 이중처분임). 갱생보호공단, 사회복지시설 등은 중간처우시설로 흡수통합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저연령·학업연계팀: 전적학교의 정상적인 등·하교, 기본교육과정 후 귀가하는 훈련, 자립적 생활계획수립프로그램, 가족과의 재적응훈련, 취업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시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소년원생의 가퇴원자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간처우시설의 도입이 필요함.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 내에서 적응프로그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 11>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10년 성 별 여 업 무 서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기숙사 -적정수용인원 20-30명(단독가정 형태보다는 소규모 기숙사 형태가 취업·학업 교육과 프로그램 실시가 용이하기 때문임) -시설 설비 시 고려사항 일반가정에 비치된 최소한의 시설·장비는 필요, 기능별로 시설분리가 필요함. TV시설실, 휴게실, 공동목욕실 등. 통제·안전장치설치는 반대. 자율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 -시설의 위치선정 넘비현상만 극복된다면, 일반 주택가에 설치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운영주체: 민간위탁 + 정부: 일정액의 지원금 형태, 예산확보는 기업가나 독지가의 지원금 유치도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원칙은 자유로 하되, 입소시는 일정의 기준을 제시해 선별해 수용, 퇴소는 가정, 직장,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타당한 퇴소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생활규칙 외출, 외박은 규칙을 제시, 술·담배는 완전금지는 역효과가 나므로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주, 금연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인력문제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 상근직원은 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상담, 심리치료, 교육부분은 학점제, 가점제를 도입해 학교나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통합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소년원 퇴원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현실, 이후 사후관리를 맡은 시설별로 통합된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심리치료는 공통으로 해야 함. 각 시설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해 시설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운영을 민간위탁하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12>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4년 성별 남 업 무 교무과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의 단독가정형태 -적정수용인원 10-15명 정도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적인 주거시설, 통제기근은 형식적,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해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법적 대응을 함. -시설의 위치선정 사회와 가깝게 하는 것이 사회화에 도움이 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형과 민간위탁을 50:50의 비율로 함. 서로 경쟁과 협조를 통해 각 운영방식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기본적으로 자율로 하되, 각 시설로 수용 이후 사회적응력을 평가해 수용능력별 보수지급과 예산지원금을 결정. -생활규칙 자율권을 부여하되 규정을 어길 경우 걸맞는 제재를 행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인력이 전문화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업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창의적 의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조직과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고 범집행성과 법률개정을 단일화해 서로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으로 방향 속에서 자격증 공부+학업능력향상공부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각 청소년 관련 대책과 방안들이 좀더 청소년의 눈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사례 13>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3년 성 별 남 업 무 자원봉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그룹홈 -적정수용인원 5-8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통제장치보다는 일반가정처럼 자녀들을 돌보는 분위기의 정 서가 되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의 위치선정 외진 곳을 피하되,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가 직원채용과 생활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운영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법적인 수용기간이 정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용기간을 연 장하도록 허용 -생활규칙 술·담배를 바람직하지 않음, 외박은 주말 등을 통해 생활 성적에 따라 허용하되 동반자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 외출은 자유롭게 하되 취침시간 이전에 귀가.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젊은이들을 위한 시설로 널 리 홍보될 필요가 있음. 이후에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친절 과 헌신적인 면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임.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처분별, 상황별로 담당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할 청소년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음. 이들 을 연계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자립향상과 개인성숙에 비중을 두고 학업에 대한 태도와 능 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중간처우시설과 관련된 인력들의 전문성과 인재육성을 위해 서는 그들의 모임과 조직이 필요함. 이 모임과 조직을 통해 각 시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풀어나 가도록 해야 함.

<사례 14>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사회복지시설 성별 여 재직기간 14년 업무 원장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그룹홈의 성격을 띤 5-6개의 단독가정형태가 모인 소시설. -적정수용인원 7명 정도 + 담당직원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직업교육을 위한 기술센터 -시설의 위치선정 자연친화적,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곳, 그러나 사회적 응을 위한 직업기술센터나 학교 등의 시설과 인접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법인, 전액정부지원이 바람직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법적 제도를 통해 의무화하고, 퇴소는 입원기간을 통해 변화된 결과를 시설장의 권한으로 평가해 고려함. -생활규칙 시설의 유동성을 고려하되, 외출은 금지하되 술은 축제나 파티 등 이벤트를 통해 절제력을 갖도록 유도하고 담배는 금연토록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킴.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력과 자원봉사교육을 마친 봉사 단이 좀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계설정을 해 나가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중간처우시설이 하나의 산하단체 아래 일원화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함.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연계성있는 프로그 램이 각 시설운영자들에게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향 상 이후→검정고시/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비행청소년에 대한 하나의 법적인 산하기관이 필요함.

<사례 15>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1년 성별 여 업무 생활지도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시설 그룹홈, 독립적인 단독가정 형태 -적정수용인원 10명 내외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병리현상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잠금장치나 SOS가 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복지시설과 인접해서 각종 시설이용이 편리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비인격적인 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민간위탁 일 경우 개인비리를 막기 위한 방침이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퇴소의 제한이 없어야 함. 청소년 각자 개별적인 상황 에 따라 수용기간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 -생활규칙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활규칙은 필요함. 충동적인 것과 자 유를 착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교육이 필요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사회복지과목을 늘려 각 영역별로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입시의 문도 넓혀서 뜻을 가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별 연대도 중요하지만 각 시설 내부적으로 아이들에 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무차별적인 원조와 후원보다는 맘을 흘러 얻을 수 있는 대 가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자격증취득과 함께 인성프로그 램이 아이들의 새로운 감각에 맞게 연구되어야 함(예)각 중 교단체들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듯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실적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사람한사람에 대한 효율 적인 운영보다는 인간중심·인간존중체제로 가야 함. 또한 실무자들의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함.

<사례 16>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17년 성별 여 업 무 사후정착지도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독립적인 단독가정형태인 소규모 그룹홈 시설 -적정수용인원 4~5명 정도의 가정같은 분위기, 시설의 분위기가 나면 청소년들은 이탈하는 경향이 강함. 소년원 퇴원 이후에는 더욱더 시설생활을 원치 않음.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 중산층가정 정도의 시설,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여가시간을 위한 헬스/운동기구, 안전장치 등은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시설의 위치선정 중소도시의 변두리 정도, 인근시설과 근접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적당함. 학원이나 취업처의 출퇴근 가능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일정의 정부지원금 +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이 있는 전문성있는 민간단체, 부족한 예산은 후원단체 등을 통한 자체 마련이 경쟁력을 갖고 각 시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임.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퇴소는 기본적으로 자유. 9개월~1년 정도. 최대수용연장기간은 만 20세로 함. -생활규칙 일반가정처럼 하되, 적절한 통제와 규칙을 필요함. 벌칙은 반발하지 않도록 납득할만한 것으로 함. 술·담배 등도 단계적으로 금주·금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직원은 전문사회복지사자격을 갖춘 부부가 부모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자원봉사자들의 연대와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사후지도에 관한 통합기구구성, 각 부처간 협력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협력기구가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중등 정도의 학력구복을 위한 학력취득프로그램(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오락을 가미한 사회적응훈련/인간관계훈련, 자격증취득/직업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운영진들의 사회복지를 위한 이해와 사명감,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사회홍보와 후원/지원의 확보, 각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력, 중간처우시설 담당자들과 소년원 재원생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지도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처우내용 위주의 평가를 통한 예산반영 및 발전방안 모색

<사례 17>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갯생보호시설 제직기간 14년 성 별 여 업 무 보호사업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시설 그룹홈, 독립적인 단독가정형태 -적정수용인원 일반 가정을 모델로 해 관리직원1-2명+5-6명의 청소년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안정된 생활공간을 위한 가정같은 분위기,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에 맞는 시스템(공부방, 오락·휴게실 등), 안전장치는 피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음.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지역의 복지시설과 학업·취업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평범한 주택가 속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격리될수록 필요경비(차비, 자원봉사 등)가 많이 소요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운영주체는 복지단체/민간위탁 + 인건비/보호운영비/시설유지비 등은 정부지원금을 충당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사업의 실시성공에 따라 평가해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것이 좋음.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자유를 원칙으로, 퇴소는 재범의 우려를 고려해 청소년의 주변상황을 고려해 보호관찰소나 보호자의 동의 등이 필요하도록 함. 만 20세까지는 안정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생활규칙 가정같은 분위기로 규칙은 관대하게 하되, 일정한 규칙은 필요함. 금주·금연교육 등을 통해 자제력을 길러 줌.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관련부서들의 주관 하에 유사시설들의 연합을 통해 전문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인력 전문화를 꾀함+각 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자원봉사체제운영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교환과 조정의 협의체가 가장 절실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 직업훈련 → 취업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비행청소년의 상황을 이해할만한 취업처확보가 필요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시설, 전문인력,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각 청소년들의 자립심을 갖도록 인성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에 처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 18>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갯생보호시설 재직기간 4개월 성별 여 업 무 운영, 직업훈련 등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시설 그룹홈(독립적인 단독가정 형태) -적정수용인원 3-4명이 가장 적절하나 예산상 7-8명, 인원이 많을수록 사후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중류층가정 정도의 시설설비, 통제·안전장치는 역효과 -시설의 위치선정 재사회화교육이 필요한 사회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위치, 한적한 중소도시/서울인근지역, 청소년 유해시설이 적은 장소가 적절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되, 시설운영비는 국가지원금과 민간기업과 독지가의 후원 등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현재 9개월-1년 정도지만, 청소년이 안정을 찾기에는 부족한 기간임. 개별적인 상황에 맞도록 입·퇴소는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도록 함. -생활규칙 일반가정같은 분위기이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일정한 통제와 규제는 필요함. 각 생활규칙과 규제는 청소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남녀직원의 전문화교육과 사회봉사자들의 적절한 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간의 상호협조를 위한 정보교환과 연계가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직접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보다는 직업훈련과 자립을 위한 취업/직업프로그램이 가장 절실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투자, 기초수사부터 최종처우시설까지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조가 가장 필요함.

<사례 19>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갱생보호시설 재직기간 14년 성 별 여 업 무 운영실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일반가정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그룹홈,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또래문화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적정수용인원 5-6명, 10명이 넘지 않도록 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 중산층가정 정도의 시설과 문화·여가생활욕구를 충족할만한 시설, 통제장치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역효과 -시설의 위치선정 지역사회사원의 활용, 사회복지활동(취업, 학원수강, 학교등교 등)과 함께 일반시민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위치,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하의 민간단체위탁, 처우시설의 재정상태는 처우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 기본적 정부지원액과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원형태의 재정지원이 적절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보호자요청, 1·3호처분도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입소가 가능, 퇴소는 정체성/판단능력/자립능력을 고려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사후관리대책마련과 함께 퇴소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규칙 단체생활에 필요한 규칙, 개인적인 사생활보장도 필요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직원1명 : 대상자 3명의 비율로 함.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활용과 정부담당기관에서 재교육을 담당해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한 사후관리가 확립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기초인성교육, 기초학력교육,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주의할 점은 연령별 처우와 대상의 특성별로 고려되어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운영진의 전문성과 재교육, 투자개선, 정보교환을 위한 조정기구, 세제혜택과 제도적인 보상대책이 시급함.

<사례20>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 사항	소속 갱생보호시설 재직기간 1년 성별 여 업 무 운영전반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시설 그룹홈, 일반가정 같은 따뜻한 분위기 -적정수용인원 6-8명, 인원이 증가할수록 문제점이 발생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시설, 수용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는 안전장치 등은 불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직업훈련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시설운영은 민간위탁,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 인건비, 보호비, 시설비, 운영비 등은 정부가 지급, 부수적인 경비는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자유로 하되 재범우려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선별해서 강제입소도 가능, 퇴소는 6-9개월 입소기간 이후 자립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수용함. -생활규칙 가정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생활규칙, 담배, 음주는 통제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운영진은 범죄청소년지도의 전문성을 위해 관련기관의 주관하에서 전문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 조정기구와 정보전달을 위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심성순화교육,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훈련, 정신교육 이외에 사회 적응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현대화된 시설,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운영진, 각 시설의 대상자가 자립에 대한 자기 신뢰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

<사례 21>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10년 성 별 남 업 무 취업·여가담당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독립적인 단독가정형태의 소규모시설, 정서 안정이 중요 -적정수용인원 유급봉사자를 포함해 6-8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중산층가정정도의 시설, 침실, 주방 겸 거실 등으로 정서안정을 위한 구조가 고려되어야 함. 운동과 여가활동은 주변 문화센터나 복지시설을 이용. -시설의 위치선정 격리지역은 생활 변화에 도움이 되지 못함. 일반주택가의 평범한 환경이 가장 적절함. 단, 유흥가와는 거리를 둠.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자율성과 상황대처에 적절함. 정부지원금은 일정의 심사와 평가기준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단계별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본자격은 유자격자, 일정수의 봉사자 확보, 범죄청소년 지도 경험 및 인지도 등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자유로 하되, 1년 정도로 하고 만 20세 이하를 최대로 함. -생활규칙 자유로운 분위기로 일반청소년의 생활을 기준으로 규칙을 정함. 음주, 흡연 금지, 외출/외박은 규칙에 따라 정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육성교육(초급: 자원봉사교육-수료증, 대학생의 경우 점수화, 중급: 세미나참석(실무자교육 및 학계, 종교계, 단체간 교류, 정보교육), 고급: 실무자연수(국내 교육기회제공, 해외 유사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의 정보교환을 위한 DB작업, 세미나, 공개토론 등을 통한 객관화된 자료들의 공유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과 직장을 얻도록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방문, 상담), 학력/자격증 취득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사후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의 설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

<사례 22>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5년 성별 남 업 무 실습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 단독가정형태, -적정수용인원 적성과 성격이 비슷한 청소년들 4-6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사회적응을 위해 일반가정생활과 가장 유사하게 설비 -시설의 위치선정 중소도시의 변두리 위치, 교통이 원활한 주택가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을 지닌 전문성있는 민간에게 위탁, 정부는 예산지원을 하고 차후 후원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소년원 퇴원생의 연령(13-20세)을 고려해 최대의 수용기간을 만20세로 정하고 개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생활규칙 일반가정의 생활규칙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규칙, 검소하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모델로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따뜻한 가정과 부모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 대상의 성격에 맞도록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범죄 청소년 관련 분야를 인터넷을 통해 DB화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후관리 전담부서가 있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력을 위한 프로그램(검정고시, 방송통신학교 등), 사회적응훈련과 직업 및 인성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체와 연계해 현장체험을 경험 및 취업을 유도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퇴원생 지도를 표면적으로 평가하면 안 됨. 객관적인 평가와 처우내용을 통해 예산반영이 이뤄져야 함.

<사례 23>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10년 성 별 남 업 무 생활지도업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그룹홈, 연령별로 청소년기 후반은 소숙사도 적당 -적정수용인원 그룹홈일 경우 5-6명, 숙사를 둔다면 3-4명 정도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청소년의 자발성을 최우선시 해야 함. 일반가정처럼 설비하되, 통제장치는 반대. 개방된 분위기가 중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주택지, 주변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유지가 필요.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 운영주체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함. 운영시 필요한 공과금, 생활비, 문화비 등은 정부지원이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유로운 입·퇴소, 중간의 일시퇴소와 최종퇴소를 구별해 나이제한을 둬. -생활규칙 시설운영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함. 청소년들과 함께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함. 섬터와는 달리 외출과 외박은 정해진 규칙 속에서 행해져야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사회복지재단이나 종교재단에 위탁할 경우 관리를 재단에서 행하도록 하되, 운영주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도록 정부에서 자극하고 관리. 그룹홈은 2명이 12시간 교대로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간처우시설모델개발이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중등교육은 일반학교와 연계, 진학지도와 병행함. 직업훈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되, 방학 중 캠프활동·사회봉사활동도 병행해 개별프로그램, 개별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청소년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력있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사례 24>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보호치료시설 재적기간 2년 성별 여 업 무 상담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시설. 작은 규모의 소년원화가 되지 않도록 소규모의 가정같은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적정수용인원 10명 이내가 적당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청소년의 욕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가정같은 시설 정도면 적당함. -시설의 위치선정 일반주택과 근접한 지역이 바람직함. 출퇴근가능한 지역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전문성이 있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되,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함. 예산운영의 투명성 정도를 정부가 간섭함. -입 · 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는 2년 정도. '시설병'으로 인해 무력해지지 않도록 하고, 20세 미만까지 연장가능. -생활규칙 구성원이 스스로 정하도록 지도. 귀가시간과 외박금지. 금연 · 금주교육을 통해 절제하도록 지도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전문적인 관리자(정부의 체계적인 교육 필요)+인력부족(후원자, 봉사자)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의 연계체계를 위해서는 시설의 문제와 대책을 위한 연합적인 모임이 필요. 정부지원과 후원이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력보충(대안학교 등),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사회 적응 훈련프로그램, 결연사업과 봉사사업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주고, 받는 경험을 하도록 지도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사회의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함. 인력의 전문화와 확보가 다음으로 절실한 문제임. 민간지원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사례 25>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제직기간 3년 성 별 여 업 무 보육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소숙사. 가정적인 면 + 단체적인 면 -적정수용인원 40-50명(담당사회복지사 1 : 청소년 5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개인사물을 위한 보관함에 잠금장치 필요 -시설의 위치선정 중소도시의 일반주택가. 주위의 일반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위치.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기본자격: 사회복지·상담의 자격과 근무경력 5년 이상. 일정액의 정부지원금과 그에 따른 별도의 감사가 적절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어느 정도 강제, 퇴소는 대상청소년, 보호자, 담당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생활규칙 서로가 지키도록 합의한 생활규칙 정도. 제재는 스스로 잘못을 명확히 알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관련학과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화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 운영자와 전문인력 사이에 전문중간관리자가 절실히 필요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정부보조금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교교육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적당함. 의무교육을 토대로 일정기간 이후 학력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적성에 따른 자격증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대상자의 처우와 함께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필요함.

<사례 26>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 사항	소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15년 성별 남 업 무 원장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 규모화·시설화는 문제화의 우려 큼 -적정수용인원 3-5명, 새 인원과 원래 인원의 적응과 조화가 가장 중요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설비가 필요. 시설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시설설비가 갖춰지면 좋을 것 같음. -시설의 위치선정 단독주택. 아이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서민층지역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 종교법인·개인에게 위탁. 정부전액지원.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자유의사, 퇴소는 6-2년 사이에 만기·퇴소를 결정. 운영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부여는 필요함. -생활규칙 운영자에게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부여해 규제해야 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각 시설별로 2명의 생활지도자가 필요. 사업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교육과 의식교육이 필요.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별 위원회구성-정기적인 회합-상호정보교류의 장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기술교육훈련, 취직시 월급관리, 치료(정신, 심리치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사후관리는 인사가 만사인 영역임. 헌신적인 지도자육성과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함.

<사례 27>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제직기간 7년 성 별 여 업 무 사무국장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 규모화되면 문제점이 발생함. -적정수용인원 5-10명 정도가 적당. 가정애를 심어줄 수 있는 분위기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사후관리는 가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통제장치는 필요없음. 사회적응과 서비스가 우선이 되어야 함.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시설과 근접한 일반주택. 격리시키면 절대 안 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의 민간위탁. 시설평가를 통한 시설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맞는 재정지원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적절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는 보호자·본인의 동의, 퇴소는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의사, 친족관계와 취업처를 고려.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적절함. -생활규칙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기본적인 생활규칙만 정함. 생활규칙준수정도에 따라 외출·외박 허용. 술·담배는 금지.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인력부족해결을 위해 최대한 인력배치. 정채된 시설분위기 타파를 위해 재교육이 필요함.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연계된 제도화된 사업이 필요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중앙기관을 두어 정기모임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업무와 정보 공유 필요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력취득(자퇴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사회적응훈련(사회재적응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사회접촉 등의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첫째 인력증원이 필요함. 둘째 각 시설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한 정채된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개발의 기회 제공 필요.

<사례 28>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2년 성 별 남 업 무 시설장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시설 소속사(독립적 그룹홈은 개인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함) -적정수용인원 가정당 4-5명 내외로 된 30-40명의 규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전체침실이 바람직함. 지도자가 관찰하기 쉬운 동선의 배치 -시설의 위치선정 일반주택단지. 사회의 소속감과 안정감이 필요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 + 정부재정지원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퇴소는 자유로 하되, 적정수용기간은 6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생활규칙 건물내 술·담배 금지. 기상·취침·복귀시간의 자유 필요.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현실적으로 대상청소년들과 숙식을 함께 할 지도자가 필요. 자원봉사자는 오히려 일괄적인 집중적인 교육을 분산시킴.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특정한 단체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부서간 연계는 이해관계로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킴. 특정한 단체나 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임.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직원전문학교, 학원)에 투자해주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사후관리가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세들을 감싸안을 수 있는 지도양성과 정부적 권한이 결합되어야 함.

<사례 29>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10년 성 별 남 업 무 교사
시설 · 설비	-중간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형태(가정의 상처를 새로운 가정인 그룹홈을 통해 해결해가도록 해야 함) -적정수용인원 5-7명. 인원간의 적당한 연령차는 가정적인 분위기 연출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적인 가정형태. 아이들방과 교육자방은 분리 필요. -시설의 위치선정 일반가정처럼 교육환경이 좋은 곳. 외부적으로 시설임을 알리는 어떤 표시나 안내판 설치는 안됨. 주민단체로부터 거부움직임도 있었음.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지원+민간위탁. 단기간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약자보호와 청소년보호라는 원칙 하에 입·퇴소는 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엄격히 함. 20세 미만 만기로 함. -생활규칙 교육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함. 규칙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수단임. 아이들과 상호협의를 규칙이 효과적.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봉사하는 교육관을 가진 전문인력이 중요함.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같은 운영이 필요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사후관리의 일원화된 체제, 운영자의 보호관찰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것도 통제력을 지닐 수 있음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력취득+자격증취득 등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연령을 고려해 일반학교 교육도 좋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소년원 퇴원생 1명은 일반학생 50명보다 교육하기 힘들다. 퇴소생의 분리·선별과 함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개선을 먼저 행해야 할 것임.

<사례 30>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15년 성별 여 업 무 교무서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독립적인 단독가정형태의 소규모 그룹홈 -적정수용인원 나이, 비행, 가정환경을 고려한 분류, 4-5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가정형태, 쇠창살 등은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느낌. 대신 규제조항을 강화해 질서를 유지시킴.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시설과 근접한 일반주택이 가정지향적 분위기.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사명감있는 단체의 민간위탁+정부의 일정액 지원금+시설수 용인원의 자비도 일부 부담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자유, 퇴소는 의무. 6개월-1년 재입원·조정가능. -생활규칙 어느 정도의 생활규칙(식사시간, 외출, 음주 등)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사회의 자원봉사자(종교/어머니회 등) 이용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소년원과 연계된 사후관리체계를 필요. 소년원 담임이 출장 등을 통해 관리, 직업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1달 1회 보호 관찰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음. 문제가 없는 퇴원생의 경 우는 보호관찰기간 등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연령별·대상별 프로그램 12-15세-교과과정·검정고시·자격증취득/또래학습위주/어 머니회 관련 결연, 15-20세-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대 인관계위주/종교관련 및 일반자원봉사자 결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퇴원생들은 '시설'을 매우 싫어함.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 되, 일정한 규칙에 의한 제재가 필요함. 외출·담배·음주 등도 자기평가를 통해 개선하도록 지도함. 가정형태이더라 도 스스로 취사·세탁 등도 행하도록 해야 함.

<사례 31>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33년 성 별 여 업 무 분류주무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의 가정적인 분위기 -적정수용인원 10명 이내, 가능하면 5명 이내로 가정과 같은 기능과 역할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풍요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함. 일반가정과 같은 시설+헬스·건강기구,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장치는 불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지나치게 변화한 중심가/격리된 농촌은 반대. 학원·취업처 연계가 가능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그룹홈시설이 전국에 많이 필요함. 정부주도시설(효율성)과 민간위탁시설(사명감)을 두고 서로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일정액지원과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는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필요.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자유롭게, 1년 정도 수용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 재수용 -생활규칙 일반가정처럼 외출·외박은 허락을 통해 가능. 일반가정과 비슷하게 함. 자유로운 가운데 적절한 행동의 통제.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자원봉사자는 많지만 힘을 결집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화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음. 동기부여와 효과증진을 위해 포상제도나 감사표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총괄기구가 어렵다면 조정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학력향상(검정고시 여건마련과 대안학교). 자원봉사자들의 심성훈련. 직업훈련과 적절한 후견인을 선정해 결연시켜 주는 일. 헬스나 운동, 기타 취미생활도 도움이 많이 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운영주체의 이해와 사명감,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사회홍보, 퇴원생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처우내용과 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통한 예산반영과 개선노력이 필요함.

<사례 32>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2년 성별 여 업 무 훈련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그룹홈 -적정수용인원 5명 이내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가정과 유사하게. -시설의 위치선정 지역사회 내,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가능하고,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위치가 바람직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 재정: 정부지원 50%+후원20%+자체수익사업30%, 자체수익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의무, 퇴소는 자유 원칙, 6개월(의무기간)+α(자립·재활능력에 따라 차등, 학교 및 취업과 연계함) -생활규칙 공동생활규칙(외적규칙)+개인생활규칙(내적규칙:자발성원칙)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전문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춘 부부 또는 부모역할, 매주2-3회 정도는 교육 받은 자원봉사를 선별해 업무수행.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사후지도 담당 전문직원이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소년원의 결연관계가 퇴원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함. 학력취득과 인성교육 병행하고, 연령별·대상별로 차별화된 인성교육 및 인간관계 적응훈련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실제 적절한 처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잠무에 시달림. 봉사하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의 복지도 개선되어야 함. 스스로 활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사례 33>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33년 성 별 남 업 무 분류보호과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소속사(관리·감독기능과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적정수용인원 상담·대인관계를 고려할 때 15명 내외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아파트시설 정도의 생활공간과 일반 가정과 같은 시설.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시설과 근접한 일반주택,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적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효율적인 운영가능, 일정액 지원, 성금이나 후원단체의 지원도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일정기간 의무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활규칙 술·담배 절대금지(일탈행동의 시발점이 됨). 외출: 허가제, 정시귀가제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목적,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후원진·자원봉사자로 인력의 충당이 되도록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기관의 일원화는 어려움. 단,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는 입소 자체가 보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면제하는 것도 한 방법.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이 우선되어야 함.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운영자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사랑, 희생정신이 필요함. 내실있는 운영자 육성이 필요.

<사례 34>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32년 성별 여 업 무 생활지도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소속사. -적정수용인원 100-160명.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아파트정도의 시설. 잠금장치, SOS시설 필요.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시설과 인접한 일반주택(지나친 격리는 반대)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주도, 국가시설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절충형(일정기간 의무, 차후 생활에 따라 자체 심사결과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 -생활규칙 외출허가제, 술·담배는 금지.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전문인력 배치, 재교육, 홍보를 통한 후원·자원봉사자 도움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소년원에서 관계를 맺었던 이가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각 기관별 연계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자격취득, 심리치료/취미생활/결연, 사회적응훈련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효과적인 시설·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적인 운영자가 필요함.

<사례 35>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11년 성 별 여 업 무 생활지도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소숙사 -적정수용인원 30명 이내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가정적인 분위기, 출입통제, SOS시설, 집중관리필요, 사무적인 공간도 필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시설과 근접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정부지원금은 연간 운영비의 40% 정도의 규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자유, 퇴소는 일정기준을 마련. 생활기간 내 태도 및 근면성평가 혹은 취업처에서의 근무자 평가, 유무에 따라 성실성이 확인되면 퇴소 조치함. -생활규칙 외출자제 및 통제, 술·담배는 교육과 병행해 점차 통제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특정 자원봉사단체에 의뢰해 알선된 후원자 1인이 연대적인 후원자를 추천하는 방법(다단계방식)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학생들의 기본신상(생활태도) 등을 정보교환해 연대관리,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각 시설을 지역화하여 집중관리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저연령일 경우 자아정체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중등자격 취득정도는 자료학습프로그램, 자아성찰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모델을 통해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생활프로그램을 개발, 성행별, 월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해 적용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상황을 평가항목에 따라 체크하도록 하며 학생 상호간의 생활태도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관리자의 성실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사례 36>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소속 소년원 재직기간 9년 성별 남 업 무 입·퇴원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가정적인 분위기로 1:1관리가능하도록) -적정수용인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이 적당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사회복지가 목적이므로, 소년원과 다른 분위기로 잘 갖추어진 시설과 개방적인 분위기가 중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인근시설과 조정해 수용시설의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함.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주로 종교단체에 치우칠 우려), 정부주도라면 법무부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맡는 것이 자유스런 분위기를 위해서 좋음.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자유로 함. -생활규칙 생활은 자유롭게 하되, 술·담배는 금지.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자격증소지자 채용. 교육 받은 프로그램 활용이 중요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한 기관에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사회적응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센터,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운영주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법무부에서 운영할 경우 구금시설과 유사해질 우려가 있음.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37>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3년 성 별 여 업 무 상담교사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소숙사(안정감과 긴밀한 유대감이 중요함) -적정수용인원 25-35명. 전체인원을 다시 5명 정도로 그룹화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상담실, 도서실, 학습실, 여가생활실 등 구비 -시설의 위치선정 서울외곽의 덜 변화한 지역, 지역의 복지·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위치.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자금·운영비는 정부지원충당+민간단체 위탁. 운영상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함.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일정기간 의무생활 등 기본 수용기간의 설정이 시설의 운영 및 해당 학생들에 대한 기본생활태도 함양 및 사회재적응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됨. -생활규칙 개인의 사적인 생활 보장이 필요함. 공동시간준수사항 필요.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학계나 지역사회에 충분한 인력활용이 중요함. 다양한 청소년기관과의 인적자원연계를 통한 인력의 pool형성, 내담자와 학생들을 엮는 mentoring제도도 필요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처음부터 사회관리까지 일원화된 교육적 시스템을 통한 자료화와 각 기관별 자료공유가 가장 필요함. 각 기관별 연계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치료적·예방적인 소년원 프로그램과 달리, '성장프로그램'으로 전환. '가족치료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단순한 '임시숙소' 정도의 기능이 아닌,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형식적, 내용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사례 38>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소년원 재직기간 3년 성 별 남 업 무 분류처우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시설 그룹홈(결손가정인 아이들의 대안 가족) -적정수용인원 5명 이하(내실있는 교육+또래집단 형성되지 않도록), 연령별 로 구분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기본적으로 가정의 형태. 구속과 강압적인 교육으로 성행은 불가능함. 친구나 부모형제같은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중소도시의 변두리.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위탁중심. 재정(정부보조금+민간단체의 지원금+자체 재 정 등), 홍보와 자체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유도 등.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자유원칙. 만 20세 이하만 입원가능. 새로운 입회의 경우는 기존의 입원생들과의 조화를 고려해 입원시켜야 함. -생활규칙 가정처럼 자유로운 생활보장. 빨래·청소는 스스로 하도록 함. 자치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에 투자해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비행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과 중간처우시 설의 생활보호로 구분해서 일원화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훈련 + 학력취득교육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견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어려운 아이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가 가장 필요함. 연계하는 학원이나 기관 등의 세 제혜택 등을 통해 연대를 늘려야 함. 교육프로그램은 가능 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39>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소 속 사회복지시설 (그룹홈) 재직기간 4년
	성 별 여 업 무 운영전반
시설 · 설비	-중간처우시설 규모 소규모 그룹홈(시설화는 곧 실패를 의미함) -적정수용인원 5-10명이 가장 적절함(유대관계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해 본 결과, 2교대는 실패함) -시설 설비시 고려사항 일반 서민가정 정도의 시설. 스스로 시설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고, 생활비나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함. -시설의 위치선정 재입학, 학원수강 등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
운영주체 · 운영방안	-시설의 운영주체 민간단체위탁. 운영비(민간단체자체운영비 + 정부보조금) -입·퇴소 절차 및 적정수용기간 입소는 소년원 방문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 의사 타진을 통해 선별. 퇴소는 가족관계회복과 자립 정도에 따라 대상자와 상담해 결정함. 6개월-1년은 안정감을 갖기에는 짧은 기간.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함. -생활규칙 자유로운 분위기. 외출·외박 허가. 술·담배 금지. 각자 지급된 용돈에 대한 적금 및 통장관리 등
인력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대안 전문성을 위해서는 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조화가 되어야 함. -일원화된 사후관리체계 및 기관간 연계체계 각 산재되어 있는 그룹홈의 관리와 지원이 일원화되고, 각 시설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조건부신고제'가 적절.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함. 부모와 자식의 대화나 일상처럼 하려고 노력해야 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 의건 보호관찰이 갖는 긴장감과 그룹홈이 갖는 안정감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각 시설별로 문제점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세미나 및 모임이 정례화되어야 됨.

<부록 3> 청소년 면접지

중간처우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청소년 수요도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관련 각종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본원에서는 소년원생이 소년원을 퇴소한 후에,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개별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우시설”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중간처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중간처우시설을 이용할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를 수행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수요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심층면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선생님의 소중한 작업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연구책임자 : 전경숙 (TEL: 02-2188-8836, FAX: 02-2188-8829)

□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질문

- 성별 :
- 현재의 상황 :
 - 소년원 가퇴원 후 보호관찰 중 ()
 - 소년원 퇴원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거 중 ()
- 배경 설명 (가족 및 친구관계, 성격, 현재 하고 있는 일 등)
 - 가족관계
 - + 구조적 : 가족구조, 가족수, 경제적 형편, 결손가정 여부 등
 - + 기능적 : 애착정도, 부모의 감독전도, 폭력 여부 등
 - 친구 관계
 - 현재하고 있는 일
 - 비행경력 (소년원 수용기간 및 횟수 등)

☐ 소년원 생활 관련 질문

1. 소년원 퇴원 후 자신의 생활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수용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 긍정적 변화 :

- 부정적 변화 :

2. 현재의 생활에는 만족하는가?

3. 소년원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4. 소년원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무엇인가?

□ 현재의 문제상황 및 시설이용에 관한 의견

5.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
(취업, 비행동료관계, 이성문제, 술·약물 유혹, 가족관계, 생활비 문제, 진학, 거주지가 없다 등)
6.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
7.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한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는가?

□ 시설생활 전반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8. 중간처우시설의 생활환경은 어떠하기를 원하는가?

- 위치 및 규모
- 식생활 및 잠자리
- 꼭 갖추어지길 희망하는 설비
(예: 독방, 침대, 컴퓨터, 비디오 등..)

9. 중간처우시설의 생활규칙(예: 술·담배, 외출, 외박)은 어떠하기를 바라는가?

10.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나?
(검정고시 준비, 취업준비, 심성훈련, 각종 교육 프로그램,
그냥 자유롭게 휴식 등...)

11. 선생님들은 본인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며, 어떻게 대해 주셨음 좋겠는가?

12. 시설에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머물기를 희망하는가?

13. 앞으로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 혹은 계획은 무엇인가?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부록 4> 청소년 수요도조사결과 개인별 정리표

<사례 1>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	여 (18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개인 사항	가족관계	부: 폭력, 음주벽(재혼), 모: 소식두절, 조부모에 의해 양육됨.			
	친구관계	중1퇴학, 잦은 전학, 유흥업소 친구들이 대부분			
	-비행경력	1·3호처분(절도), 7호처분(절도, 소년원)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소년원 앞선 취업처 중단, 내년 고교 입학 예정			
소년원 생활	-현 생활만족도	보통,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 등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규제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조금은 답답한 마음도 들.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전도사님을 통해 두려움 극복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가족과의 갈등(자신을 창피해하는 것 같음), 적응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해 안정되고 싶음.			
	-필요로 하는 지원	가족들과 갈등으로 인한 문제, 취업처의 문제, 공부만이 아닌 취미생활도 하고 싶음. 뜨개질이나 종이접기라도 하고 싶음.			
현재의 문제상황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는 도움이 필요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중소도시 작은 일반주택, 어른2명+청소년3-4명 정도가 적당.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담배나 술은 적당히 허용.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했으면 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취업처, 검정고시/자격증시험대비, 돈이 들지 않는 여가활동			
시설생활 제반 생활환경 요구도	-교사에 대한 요구	가족처럼 대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체류기간	안정되고 자립할 때까지 3-4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음.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고등학교 졸업. 고졸학력이면 취업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임.			
	미래계획				

<사례 2>

내용		주요 사항			
구분					
개인 사항	성별	여(18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이혼상태, 모: 재혼, 남동생도 소년원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남자친구들이 많음. 현재는 친구 몇명과만 교제함				
	-비행경력				
	7호처분(소년원)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요리학원 수강하면서 음식점에서 일함				
	-현 생활만족도				
	비교적 만족. 요리기술도 배우고 취업처도 알선 받음.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이전의 교우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장기간 소년원 생활로 인해 소년원친구들에게 연락이 올라봐 두렵다는 생각이 듦.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움. 동생이 퇴원하면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필요로 하는 지원				
	동생이 소년원을 퇴원하면 함께 살 방을 마련해야 함. 이런 상황 때문에 자주 좌절하게 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퇴원해도 돌아갈 곳이 없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자신에게도 필요한 시설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교통이 편리한 곳. 가정집 정도의 크기, 일반사람들처럼 살고 싶음. 언제나 문제아로부터 취급당하고 싶지 않음. 먹는 것이 부실하면 불만이 더 커질 것임. 2인 1실 정도가 적당함.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싫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학교도 다니고 싶고 가정형편 상 돈도 벌어야 됨. 각종 회복 프로그램보다는 자유시간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음.				
	-교사에 대한 요구				
	실수할 때 따뜻하게 감싸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체류기간				
미래계획	9개월은 너무 짧음. 혼자 힘으로 '단칸방'이라고 마련한 돈을 벌 정도의 기간, 즉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있고 싶음.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가족들과 함께 남들처럼 단란하게 살고 싶음.				

<사례 3>

구분 \ 내용	주 요 사 항			
개인 사항	성별	여(18세)	현상황	개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장애인(소아마비), 모: 무관심, 생활보호대상자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비행친구들이 많음. 현재 노력 중이나 가끔 만나고 있음			
	-비행경력			
	4호처분, 6호처분(소년원)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제과제빵학원 수강중, 취업 준비중			
	-현 생활만족도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대체로 만족. 간섭하고 상담해주는 선생님께 감사.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 · 부정적 측면			
	반성의 기회, 숨막힐 것 같은 생활규칙과 엄격한 제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가정형편 때문에 하루빨리 취업을 해야 함.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필요로 하는 지원			
	실수할까봐 걱정됨. 친근감 있게 상담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자격증취득교육과 취업알선이 필요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집으로 돌아가기가 마땅치 않은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일반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가정처럼 소규모. 2인 1실, 인터넷컴퓨터, 운동기구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생활규칙은 필요함. 엄격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사항 정도가 좋음. 외박이나 외출은 허락 받고 자유롭게 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취업과 학업, 소년원처럼 많지 않고 적당한 정도가 좋음.			
미래계획	-교사에 대한 요구			
	관심을 가지고 다시 소년원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체류기간			
	마음을 잡고 기술을 배워 자격증 취득 때까지 만이라도...			
미래계획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자격증 취득 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고 싶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가 필요함.			

<사례 4>

내용		주요 사항			
구분					
개인 사항	성별	여(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재혼부모에 의해 양육됨. 부: 도매상, 모: 계모				
	친구관계	잡은 가출로 비행친구들 많음. 이런 교제가 두려움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6호 처분(소년원)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고입검정고시 준비중(진학예정)				
	-현 생활만족도				
	만족. 비행친구들과 단절, 불편 없는 지원에 만족함.				
현재의 문제상황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반성할 기회의 시간, 틀에 짜여진 규칙 때문에 매우 힘들.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가족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상급학교 진학.				
	-필요로 하는 지원				
	상급학교 진학시 시설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음.				
시설이용 의사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친구들에게 필요.				
시설생활 제반 생활환경 요구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일상생활에 불편 없는 위치. 5명내외, 2인1실.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만한 환경. 운동기구, 비디오 등 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소년원과는 달리 자유로운 생활. 규칙은 자유와 질서를 함께 하고, 생활질서를 문란한 행동은 통제해도 좋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함(취업과 학업 등)				
	-교사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지도와 안정과 친근감 있는 마음적 지지				
	-희망 채류기간				
	가능하면 안정될 때까지. 6-12개월 정도.				
미래계획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 이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계획. 집이 아닌 시설에서 학교를 통학하고 싶음. 집에서는 안정이 불가능함.				

<사례 5>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여(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재혼, 택시운전, 모: 의류가게,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불량교우와의 접촉이 가장 두려움			
	-비행경력			
	선도유예6개월(폭력), 1·3호처분(폭력, 2회), 6호처분(소년원)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고입검정고시 준비중(진학예정)			
	-현 생활만족도			
	비교적 만족. 아직도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운 생활임.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공부할 시간이 많고 반성할 시간 제공, 가족들과의 관계개선			
	은 잘 안 된 것 같음. 소년원에서 또다른 친구 사귀.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검정고시합격하고, 취업과 상급학교 진학. 술담배의 유혹.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필요로 하는 지원			
	노력하고 있으나 개선은 잘 되지 않음. 무력감이 들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지가 필요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고 가족들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미래계획	시설느낌이 나지 않도록 함. 5-10명 정도, 성장기의 영양을			
	고려해주는 식사, 2인1실, 컴퓨터나 다른 가전기구를 배치.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생활규칙은 필요하지만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규제보다는 인			
	간적인 친밀감으로 설득해주면 좋겠음. 외출이나 외박도 분명			
	한 이유라면 허용하는 것이 좋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미래계획	학력/취업 프로그램 + 마음가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요구			
	일반가정처럼 사랑하는 엄마아빠처럼 대해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채류기간			
	사람답게 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함.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고입검정고시, 상급학교진학이나 피부미용을 배우고 싶음.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사례 6>

내용		주요사항	
구분			
개인 사항	성별	여(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공장취업, 모: 가출, 부/남동생과 생활		
소년원 생활	친구관계		
	애정결핍, 비행친구 많음. 이성비행친구 많음		
	-비행경력		
	4호처분, 6호처분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제과제빵학원 수강 중,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할 계획		
	-현 생활만족도		
	보통. 생활규칙이 까다롭고 동료가 많이 불편함.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되돌아볼 기회, 비행친구들과의 단절. 심사원이나 소년원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된 점과 적성과 다른 반에 배정된 일.		
현재의 문제상황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엄마와 친해지고 싶음. 기능사자격증이 어려움. 용돈부족.		
	-필요로 하는 지원		
	학원시간이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허용해 주면 좋을 듯.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시설이용 의사	가족과 살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5-10명. 겉으로 알 수 없는 일반주택. 2인1실, 가전/운동기구.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생활규칙이 정해졌으면 함. 외출이나 외박은 허용하고, 술담배는 개선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했으면 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자립할 수 있는 취업준비, 올바른 생활태도, 자유시간 등		
	-교사에 대한 요구		
	실제 부모님처럼 야단과 칭찬을 모두 해주었으면 함.		
	-희망 체류기간		
생활환경 요구도	비행친구를 다시 만날까봐, 또 가족관계 등도 모두 걱정됨. 자립할 때까지 체류하고 싶음.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제과제빵기술을 배워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고 이후에는 취업처 마련에 도움을 받고 싶음.		
미래계획			

<사례 7>

내용		주요 사항	
구분			
개인 사항	성별	여(16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청각장애인, 모: 계모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행친구 많음(원조교제 등)		
	-비행경력		
	6호처분(특수절도)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미용학원 수강 중		
	-현 생활만족도		
	미용학원 수강하게 되어 만족. 부모님보다도 도움이 많이 됨.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자격증취득과 영어대회 수상경력, 고입합격, 퇴원후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움과 질서나 규칙과 공부하는 일.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미용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필요로 하는 지원		
	의지가 강해져야 되나 흔들릴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선 생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작막한 집보다는 편안하고 지도해줄 분이 있는 시설이 낫다.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대도시, 교통이 편리한 곳. 10-12명 내외. 4인 1실, 인터넷가능 컴퓨터와 가전제품.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생활규칙은 질서를 위한 것 정도. 술담배는 반대, 외출이나 외박은 이유가 있을 때는 자유롭게 허용해 줬으면 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 직업훈련이 필요함. 자원봉사자들과 게임과 감수성 훈련 등 심성훈련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교사에 대한 요구		
	가족처럼 거리낌없이 친밀하게 대해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체류기간		
	1년		
미래계획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미용자격증과 메이크업, 고졸정도의 학력.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강제로라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사례 8>

구분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여(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음식점, 모: 연락두절
	친구관계 비행경력을 가진 이성친구들 많음.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기소유예(폭력), 6호처분(폭력), 7호처분(폭력)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미용자격증 취득, 현재 취업 중
	-현 생활만족도
	만족, 가족과의 관계도 서로 관심이 많아짐.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실용영어 5급 합격, 고입검정고시 합격, 미용자격증 합격. 결연사업을 통해 만난 결연 어머니와 신앙생활이 도움이 됨. 2 번째 생활은 더욱 답답했고 규칙들이 힘들었음.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가정의 문제, 취업후 미용실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움.
	-필요로 하는 지원
	미용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마음의 지지를 받고 싶음.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집에 있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필요함.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답답하지 않은 도시, 10명 이내, 식사는 직접 조리, 기본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술과 담배는 허용, 외출이나 외박은 허락을 받고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 컴퓨터를 주로 하고, 취업준비/감수성훈련 등도 있으면 좋겠음. 다만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로 하면 좋겠음.
	-교사에 대한 요구
	상담도 자주 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기다려주는 마음.
미래계획	-희망 체류기간
	1년 정도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미용실취업, 대입합격,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갖고 싶음.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함.

<사례 9>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여(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아내구타 심함, 모: 재혼
	친구관계
	잡은 가출로 비행친구들 많음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기소유예(폭력), 1·3호처분, 6호처분, 7호처분(폭력)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피부미용자격증 취득, 수상경력
	-현 생활만족도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고입검정고시 합격, 조심스러워지고 생각이 깊어짐. 신앙생활과 노인정봉사활동도 재미있었음.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까봐 두려움과 갑자기 자유로워 오히려 어색함.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미용실일이 힘들지만 칭찬받을 때 기쁨. 생각보다 새아빠와도 적응이 됨. 그러나 가족갈등으로 다시 가출할까봐 두려움.
	-필요로 하는 지원
	공격적인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꾸짖음과 격려하는 사람.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집은 마음이 불편한데 집보다 편안하다면 이용할 것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중소도시의 일반주택, 직접 음식조리. 2-3명 1실, 10명 이내, 가전제품과 운동시설 등.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술담배는 일정정도 허용, 외출은 가능, 외박은 반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로 학력향상이 우선임. 자립을 위한 취업훈련 등.
	-교사에 대한 요구
	딸처럼 믿어주고, 가족처럼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함.
미래계획	-희망 채류기간
	6개월-1년 정도의 생활.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능력있는 유명한 헤어디자이너. 미용기술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함.

<사례 10>

구분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여(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택시, 모:가출, 체벌 심함. 재혼한 부모와 생활
	친구관계
	비행친구가 많음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기소유예(특수절도), 4호 처분, 7호처분(절도)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대입준비 중임
	-현 생활만족도
	소년원보다는 규칙이나 시간이 자유로움이 좋음.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목표의식과 말투변화, 고입검정고시 합격, 많은 컴퓨터자격증 획득, 간혀 있다보니 자꾸 돌아다니고 싶음. 보호자면회가 적어서 서운하고 속상했음.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새엄마와 갈등. 컴퓨터자격증들이 실제 취업 시 도움이 안됨.
	-필요로 하는 지원
	새엄마와 대화하는데 필요한 대화방법. 안정된 마음으로 취업과 공부를 해나가도록 강제로라도 잡아주는 사람.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 안정될 것 같음.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의 10명 이내, 2-3인 1실, 비디오, 컴퓨터, 개인사물함.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술담배 일부 허용. 외출허용(귀가시간 필요), 외박은 금지. 생활규칙을 어겼을 때는 단계적인 처벌을 통해 개선시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취업알선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학력취득, 심성훈련이나 종교 프로그램은 없었으면 함. 어색한 치료프로그램은 오히려 불편.
	-교사에 대한 요구
	대화가 잘 통했으면 함. 여가생활 등도 있었으면 함.
	-희망 체류기간
미래계획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함.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대학에서 홍보분야를 공부하고 취업하고 싶음. 강요 대신 말로 구체적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이 필요함.

<사례 11>

내용		주요 사항			
구분					
개인 사항	성별	남(17세)		현상황	수탁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중장비, 모: 계모, 가족결합도는 높음				
	친구관계				
	맞은 이사로 교우관계 복잡함.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4호 처분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고입준비 중임.				
	-현 생활만족도				
	보통. 처음에는 답답했으나 점차 좋아짐. 학과공부도 나아짐.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이전 수탁시설은 시골에 위치. 답답한 마음에 공부도 제대로 안 됨.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범을 하게 됨.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일. 검정고시합격. 여러 번 실패해서 불안한 마음이 듦. 비행친구들과 완벽한 단절이 어려움.				
	-필요로 하는 지원				
	영어공부와 취업알선, 무조건 지적보다는 이곳의 시설에서처럼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나아지도록 돕는 선생님들.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좋은 시설과 교육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으나,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한다면 가고 싶지 않음.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중소도시, 교통이 편리한 곳. 적당한 인원의 가정 같은 분위기.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너무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규칙과 생활방식.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컴퓨터와 취업 공부, 학력향상공부. 컴퓨터 수리 공부.				
	-교사에 대한 요구				
	납득할만한 꾸짖음 정도, 지금처럼만이면 좋을 것 같음.				
미래계획	-희망 체류기간				
	1년 이상. 갑갑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안정될 때까지...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정해진 대로 짜여진대호가 아닌, 교육받고 싶은 것을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마치는 일.				

<사례 12>

구분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남(15세) 현상황 수탁시설 내 그룹홈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연락두절, 모: 가출, 조부와 생활하다 보내짐
	친구관계 작은 가출로 비행친구들과 생활함.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처분 없음,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그룹홈으로 이주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그룹홈에서 거주하면서 일반중학교 통학 중임
	-현 생활만족도
	처음엔 도주하려고 시도도 했음. 수탁시설이 아닌, 그룹홈이라서 가정집 같은 느낌임.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소년원 수용 경험은 없음. 수탁시설은 연령대가 다른 형들과 함께 생활해서 무서운 느낌이었으나, 그룹홈은 편안함.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용돈이 너무 적음. 남들처럼 핸드폰이 갖고 싶음.
	-필요로 하는 지원
	공부는 일반 중학교를 통학/수탁시설 내에서 배움. 시간표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쉬는 시간이 필요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음. 그룹홈이 훨씬 낫기 때문에, 비슷한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음.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침실공동,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가전제품이 있는 가정집.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규칙은 필요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일반 친구들처럼 여름방학에 놀러갈 곳이 있었으면 함.
	-교사에 대한 요구
	잘 대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만족함. 그룹홈의 이모와 이모 아들과의 갈등이 좀 있지만 이해함.
미래 계획	-희망 체류기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고 싶음.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여기서 학교를 잘 마치고 집처럼 살았으면 좋겠음.

<사례 13>

내용		주요사항				
구분						
개인 사항	성별	남(15세)	현상황	수탁시설 내 그룹홈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무관심, 모: 계모, 체벌이 심함. 양육의지 없음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가출과 비행친구들 많음					
	-비행경력					
	4호처분(절도)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수탁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이주해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음.					
	-현 생활만족도					
	집보다 나은 곳임. 아빠는 무관심하고 새엄마는 자주 때리는 편임. 가출해도 별 관심도 없어서 이곳으로 보내짐.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여기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음.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용돈이 너무 적음.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예전부터 화가 나면 꼭 참다가 폭발하는 성격임.						
-필요로 하는 지원						
학습지도 및 대화할 선생님이 있는 것이 좋음.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남들처럼 아빠엄마랑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 그래도 좋음. 집보다 그룹홈이 훨씬 사랑받고 안정된 느낌.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함. 먹는 것과 입는 것, 자는 것 등등은 전혀 불편하지 않음.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자유시간이 필요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휴가를 가고 싶음.					
	-교사에 대한 요구					
	타이르고 혼낼 때도 설명해 주셔서 좋음. 지금처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희망 채류기간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있고 싶음. 현재 반에서 10등 정도 함.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안정된 생활 덕분임.					
미래계획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학교친구들에게 그룹홈이 아니라, 친이모랑 산다고 말함. 진짜 가족처럼 여기서 생활해서 학교를 마치고 싶음.					

<사례 14>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남(21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모 연락 두절, 가족붕괴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부모이혼과 가출로 비행친구들과 생활
	-비행경력
	2년 6개월 집행유예(절도, 폭력 등)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집행유예
	-현 생활만족도
	불만족. 직원선생님이 교체 이후에는 좋아졌지만, 이전에는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와 죄인 취급하는 말투였음.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집행유예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퇴소 직전이나 거주지도 없고 취업처도 없음. 20세이기 때문에 학원수강도 혜택받지 못함. 결국 남은 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임.
	-필요로 하는 지원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안정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음. 또 취업처도 알선해주면 좋을 것 같음.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돌아갈 가족도, 집도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한 곳. 3-4명 정도 생활. 2인 1실. 공동컴퓨터와 인터넷, 가전제품.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 소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규칙은 불필요함. 이유가 있으면 외출/외박도 허락.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취업반/공부반으로 나뉘서 집중적으로 관리. 여가생활.
	-교사에 대한 요구
미래계획	자원봉사나 후원은 일회성, 동원성 행사임. 기분만 내는 행사보다는 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함.
	-희망 채류기간
	안정된 직장을 갖고 거주할 곳이 생기면 퇴소.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고교졸업과 컴퓨터 자격증, 평범한 가정. 후원이 필요함.

<사례 15>

구분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남(19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택시, 모: 가출, 가족결합도 매우 낮음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가출경험으로 비슷한 비행 친구들과 함께 생활함
	-비행경력
	1·3호 처분(절도), 6호처분(보호관찰법위반, 폭력, 강도 등)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미용학원 다니면서 생활
	-현 생활만족도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배우고 싶은 헤어디자인을 배울 수 있어서 만족함.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단순한 생활과 반성한 기회, 단체생활과 군대식생활.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헤어를 좀더 잘 할 수 있었으면 함. 대체로 만족함.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필요로 하는 지원
	헤어디자인학원 수강 이외에 실습에 드는 비용이 꽤 많음.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돌아갈 집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교통이 편리한 곳. 차비 아끼려고 걸어다님. 최신의 컴퓨터와 전기제품, 3인 1실.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생활규칙은 필요함. 나이가 되면 담배나 술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하면 좋겠음. 외출과 외박은 이유 있으면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 말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할인쿠폰' 같은 것이 좋음. 일반사회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 좋지 소년원처럼 짜여진 프로그램은 싫음.
미래계획	-교사에 대한 요구
	엄마처럼 아빠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체류기간
	안정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원해 주었으면 함.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훌륭한 헤어디자이너. 검정고시도 준비할 예정임.

<사례 16>

내용		주요사항	
구분			
개인사항	성별	남(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 알콜중독, 중병, 모: 중병, 파출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큼	
	친구관계	가출과 비행반복으로 비슷한 친구들이 많음	
소년원생활	-비행경력	1·3호처분(성폭력), 6호처분(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중임.	
	-현 생활만족도	자신은 만족하지만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 때문에 힘들.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축구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점, 신입/고참 등 소년원 내부의 서열관계가 제일 힘들. 가족생각에 열심히 살았음.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부모님의 병원비와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들어가고 싶음.	
	-필요로 하는 지원	부모님의 병원비와 취업처.	
시설이용의사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생활이 어렵고 가족과 갈등이 있는 친구들은 필요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도시, 3인1실, 전자제품과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시설생활제반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규칙은 필요. 어겼을 때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함. 귀가시간을 좀더 연장시켜 주었으면 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축구부와 학습/취업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요구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체류기간	같은 곳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싶음.	
미래계획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축구선수,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음. 부모님의 건강.	

<사례 17>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남(21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어부, 재혼, 모: 가출, 현재 계모, 가족붕괴
	친구관계 가출반복으로 비행친구들이 많음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1·3호처분, 7호처분(보호관찰법위반, 절도), 가퇴원함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대입수능준비 중임, 보조금 받고 입시학원 수강 중임.
	-현 생활만족도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만족함.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 한번은 다시 재비행했으나, 이후에는 마음을 잡게 되었고 갱생보호시설이 도움이 많이 됨.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수능준비할 때 학원비 이후 교제비 등의 문제.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필요로 하는 지원
	자매결연한 아주머니가 3명이나 있음. 고맙고 든든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가족이 붕괴되고 이전 친구들과 연락을 끊으려는 애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첫 소년원 퇴소 후 답답한 시골의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함. 이후 재범하게 됨. 교통이 편리한 시설에 일반 가정집같은 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규칙을 정해놓되, 칭찬과 체재를 함께 해 주면 좋겠음. 이유가 있는 외출/외박은 허용. 소년원과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미래 계획	공부가 중요함. 학력이 없으면 취직도 힘들. 자매결연을 통해 상담도 하고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됨.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중산층 정도가 적당함.
	-교사에 대한 요구
	아버지처럼 대해 주었으면 좋겠음.
	-희망 체류기간
미래 계획	독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지원, 적어도 1년은 체류.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 계획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가는 일. 실용음악가가 되고 싶음. 대학등록금과 장학금의 기회, 좋은 가정을 갖고 싶음.

<사례 18>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남(17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교도소 수감 중, 모: 가출, 가족붕괴			
	친구관계			
	폭주족 등 비행친구들 많음			
소년원 생활	-비행경력			
	1·3호처분(절도), 6호처분(보호관찰법위반)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답답했다는 생각 외에는 그다지 없음.			
	-현 생활만족도			
	퇴소 후 거주지 없음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비행과 단절되는 일, 소년원 내의 원생들과 서열관계로 힘들.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일자리가 없음. 검정고시는 시기를 놓침.			
	-필요로 하는 지원			
	검정고시 준비와 일자리를 구해주었으면 함.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소년원에 출소해도 갈 곳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최창살이 있거나 시골의 시설은 100%도주함. 소년원 내부에서도 안 좋은 시설/좋은 시설에 대한 소문이 있음. 일반 주택가의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음.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소년원이 아니니까 자유로운 규칙이 필요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취업/학력교육, 후원회도 고기나 음식보다는 여름휴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더 좋음.			
	-교사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만 신경 써주고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은 외면하는 것 같음. 이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좀더 신경 써 주면 좋겠음.			
	-희망 채류기간			
미래계획	9개월은 적응하고 공부하기에는 짧은 시간임. 2년 정도로 한 번 정도 실패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었으면 함.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검정고시 봐서 대학가고 싶지만 여기를 떠나면 아무런 후원도, 도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듦. 막막한 느낌임.		

<사례 19>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 사항	성별	남(19세)	현상황	갱생보호시설
	가족관계			
	부: 엄격한 성격, 농사, 모: 농사, 재비행 우려로 입소됨.			
	친구관계			
소년원 생활	폭주족 등 비행친구들과 접촉 중임.			
	-비행경력			
	1·3호 처분(절도)			
	-소년원 퇴원 후 생활의 변화			
	검정고시 준비중임.			
	-현 생활만족도			
현재의 문제상황 · 시설이용 의사	답답하지만 이전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나마 안정됨.			
	-소년원 생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소년원 수용 경험 없음.			
	-현재의 고민, 문제상황			
	검정고시준비가 너무 어려움. 과목별로 부족한 면이 많음.			
시설생활 제반 · 생활환경 요구도	-필요로 하는 지원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 다음 기회도 주었으면 함. 공부를 안 하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			
	-시설이용에 대한 견해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함.			
	-중간처우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살았던 도시에도 이런 처우시설이 있으면 좋겠음. 지방도시에서 서울까지 와서 사는 건 너무 힘들. 15명 내외가 적당.			
	-생활규칙에 대한 요구			
	외박이나 TV시청, 담배(어느 정도) 등을 허용했으면 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미래계획	취업알선과 교육이 필요함. 학교의 수학여행처럼 여가생활.			
	-교사에 대한 요구			
	적당히 자유롭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음.			
	-희망 채류기간			
미래계획	자유롭게 하되 6개월 단위로 검정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장래 희망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지방의 학원선생님이 되고 싶음. 태권도 배우고 싶음. 학력을 보충하도록 검정고시학원 지원이 있었으면 함.			